

人人生而自由,在尊严和权利上一律...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30-0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Все люди рождаются
свободными и...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Tous les êtres humains
naissent libres et...

يولد جميع الناس أحراراً
국가인권위원회

Todos los seres humanos
nacen libres e...



EM025979



국제의회연맹
Inter-Parliamentarians Unio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발 간 사

올해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상처를 딛고 인간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열망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산물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인권사회의 인권자료와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발간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은 국제의회연맹(IPU)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동으로 전 세계의 국회의원들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행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에는 국제인권법의 일반적 원칙과 국가의 의무, 국제인권기구들의 기능 소개뿐 아니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내외 인권향상을 위해 관련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유 권한인 입법,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예산 편성, 행정부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인권전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파트너이자 든든한 지지자입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인권기반을 넓히고, 국회의원들이 인권친화적인 정책과 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아담의 아들들은 한 몸의 사지와 같다.
같은 근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지 중 하나가 고통에 처하면
나머지도 편안할 수 없다.
인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여!
그대는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없도다.

사디(Sadi)의 '장미정원(Gulistan, 1258년)' 중에서

저자 소개

이 핸드북의 저자인 만프레드 노박(Manfred Nowak)은 비엔나대학의 루드비히 볼츠만 인권연구소(Ludwig 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 소장이며,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UN Special Repporteur on Torture)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제로엔 클로크(Jeroen Klok)와 국제의회연맹(IPU)의 기고문도 함께 실려 있다.

머 리 말

인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다.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인류 자체 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인간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일들이 자행되면서 미래에는 그러한 만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이 다시 중심 주제로 대두되고 국제 차원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되었다. 유엔 헌장 제1조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촉진함”을 유엔 목표 중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이 선언은 유엔 헌장의 “인권”이란 용어의 유권해석으로 간주된다. 세계인권선언은 1966년에 체결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함)’ 및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라 함)’과 함께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을 구성한다. 1948년 이후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또는 구속력이 없는 수 백 건의 문서로 성문화되어 인간 삶의 모든 측면과 광범위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의 성문화는 대체로 완결되었다.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지금까지 채택된 기준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국민들이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관인 의회에 대해 관심을 증대해 왔다. 실제로 인권이 모두를 위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이를 위해 의회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권한 즉, 법률 제정, 예산안 승인, 행정부 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유엔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관심을 쏟고 있는 국제의회연맹(IPU)은 인권수호자로서의 의회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국제의회연맹이 벌인 활동은, 국제인권법 체계, 자국이 인권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갖게 되는 의무 그리고 이러한 인권조약의 의무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제의회연맹이 모든 사람이 모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지닌 유엔기구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함께 인권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 지역적 인권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담은 핸드북을 제작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핸드북의 내용을 작성하는 작업은 저명한 인권 전문가이며 현재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프레드 노박(Manfred Nowak)이 맡았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박은 국제의회연맹 의원인권위원회(IPU 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의회연맹 담당관들로부터 받은 정보와 조언을 그 토대로 하였다.

국제사회가 그 동안 많은 인권 규범, 기준 및 원칙 등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유엔 창립자들이 열망했던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의회연맹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핸드북이 전 세계의 국회의원들에게 자국이 지니고 있는 인권 의무에 맞추어 자신의 입법, 감독 및 대표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되고, 국내외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자신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국제의회연맹 사무총장
앤더스 B. 존슨(Anders B. Johnsson)

◆ 이 책의 주요 내용 ◆

제1편은 인권법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과 국제인권법에 의해 국가에 부여되는 의무를 개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권 분야에 있어 국제적, 지역적인 기본 법적구조를 제시하고,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설명한다.

제2편의 제11장은 전적으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 활동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의회와 의원들이 이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제목의 상자들은 그러한 활동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보여준다.

제12장과 제13장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 권리의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두개의 장은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기본권만을 다루며, 재산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 Content ❖❖❖

제 1 편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정의 / 1 ◆기본적 인권 원칙 / 5 ◆인권과 국가 주권 / 11 ◆민주주의, 인권, 의회 / 11
제2장	인권으로부터 어떠한 국가 의무가 발생하는가? 13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 13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 / 14 ◆'이행 의무'란 무엇인가? / 15 ◆잠진적 실현의 원칙 / 16 ◆'국내 구제 제공 의무'란 무엇인가? / 17 ◆초국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 / 17 ◆배상에 대한 권리 / 1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8
제3장	국제인권규범 21 ◆국제인권법의 출현 / 21 ◆국제인권장전 / 21 ◆주요 인권조약 / 23 ◆기타 유엔 인권규범 / 25
제4장	정부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27 ◆제한 조항 / 27 ◆비상시 의무 면제 / 30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 / 30 ◆테러방지 조치와 인권 / 31
제5장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 35 ◆구성과 기능 / 35 ◆보고 절차 / 36 ◆개별통보 절차 / 38 ◆국가통보 절차 / 40 ◆고문방지협약(CAT)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에 의한 조사 절차 / 42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방문 제도 / 44

제6장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 시스템 45 ◆비공개 ‘1503’ 절차 / 45 ◆특별절차 / 47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49
제7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51
제8장	유엔업무에 인권 통합 55 ◆유엔 총회와 그 상설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 56 ◆인권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56 ◆인권과 “유엔 패밀리”(Family) / 57
제9장	지역 인권조약 및 모니터링 61 ◆아프리카 / 61 ◆미주 / 63 ◆아랍지역 / 64 ◆아시아·태평양 지역 / 65 ◆유럽 / 65
제10장	불처벌(Impunity) 저지 노력: 국제형사재판소(ICC) 6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 68 ◆국제형사재판소(ICC) / 68 ◆불처벌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원칙 / 73
제 2 편	
제11장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 77 ◆기본 원칙 / 77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조치 / 81
제12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103 ◆생명권 / 103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 115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22 ◆법행정: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 126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31 ◆이동의 자유 / 138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42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14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55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 158

제13장	<p>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1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 경향과 개발 / 165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172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 175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178 ◆교육을 받을 권리 / 196
결론 203
약어목록 205
부 록	<p>부록 1 :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209</p> <p>부록 2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226</p> <p>부록 3 :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 / 235</p> <p>부록 4 : 세계민주주의선언 / 244</p> <p>부록 5 : 국제인권장전 / 25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255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 270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ICCPR) / 317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ICCPR) / 326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333

◆ 정의

인권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인간 존엄성에 의해 갖게 되는 권리다.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은 개인과 권력 구조 특히,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한다.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며, 이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지난 250년간의 역사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18세기 말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으로 시작하여 인권 사상은 권력행사의 주체 특히, 정부의 권한강화 또는 정부에 대한 통제를 위한 수많은 혁명적인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권은 국가의 헌법 및 국제법에 규정된 개인적, 집단적 권리의 총합이다.

정부와 의무이행 당사자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청구권 및 권리구제의 사유가 된다(제2장 참조). 실제로, 권리를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인권을 윤리적 또는 종교적 가치에 의한 규율과 구별하는 잣대가 된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주권 국가들이 인정하고 국가 헌법 및 국제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엔은 그 때까지 주로 국가 내에서 발전되어 오던 인권을 규명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인권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적,

지역별 조약 및 규범들로 성문화되었고, 오늘날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가치 체계이다.

➤ Box 1

인권의 예: 인권과 관련된 자유, 권리 및 금지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

- 생명권
-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 노예, 노역 및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피구금자의 인간적 처우에 대한 권리
- 이동의 자유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소급 형법 금지
-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사생활에 대한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의사 표현의 자유
- 전쟁의 선동 및 국가, 인종 또는 종교적 증오에 대한 선동의 금지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혼인 및 가정을 형성할 권리
- 공무 수행에 참여할 권리 및 투표, 피선 및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
-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

- 노동권
- 정당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 가정의 보호
- 충분한 의식주를 포함한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교육을 받을 권리

집단적 권리 분야

- 다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
 - 자결(self-determination)
 - 개발
 - 재산과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이용
 - 평화
 - 건강한 환경
- 기타 집단적 권리
 - 민족, 인종, 종교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
 - 원주민의 권리

인권은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인권의 행사를 통해 모든 인간은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존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그리고 자결, 평등, 개발, 평화 및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집단적 권리로 구성된다. “제1세대 권리”로도 알려져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사적인 일(private affairs)에 대한 국가의 비개입이란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제2세대 권리”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 때로는 아직까지도 - 제기되고는 있지만,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사회가 전체 인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건과 법적 토대를 수립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대”는 냉전시대에 사용되던 언어를 떠올리는 표현으로 오늘날에는 모든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 불가분성(indivisibility) 및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전권(The right to development)

발전권은 발전 과정의 중심에 인간을 놓고 있으며, 인간이 발전의 주요 참여자이며 수혜자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1986년 유엔 발전권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 “... 모든 인간과 모든 국민들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러한 발전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또한, 발전에 대한 권리는 국민의 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결권은 두 국제인권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행사를 포함한다.”

발전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 증진 및 보호에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000년 9월의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빈곤 퇴치를 발전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정의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특히 다음의 목표들을 완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2015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 1일 생활비가 1달러 미만이며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
- 모든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을 일반화한다.
- 아동 사망률을 2/3 감소시킨다.
- 산모사망률을 4/3 감소시킨다.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을 퇴치한다.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새천년발전목표’의 전체 목록은 [Box 76] 참조).

◆기본적 인권 원칙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을 어떠한 문화에도 이질적이지 않으며, 모든 국가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즉, 인권을 보편적이다.

코피 아난 UN사무총장.

1997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 테헤란 대학 연설문에서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종교, 언어, 국적, 연령, 성적 지향, 장애 또는 기타 어떠한 특징과도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인권은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 Box 3

인권은 서구적 개념인가?

때로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이 서구적 개념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신식민주의 태도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도전을 받아 왔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968년에 발표한 연구¹⁾ 결과는 인권의 바탕에 깔린 강렬한 열망은 모든 문명과 시대를 초월하여 발견되는 개념들 - 정의, 신체적 보전과 존엄성, 억압과 박해로부터의 자유, 집단적 노력에 대한 개인의 참여 등에 관한 개념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전통을 지닌 다수의 국가들이 주요 국제인권 규범을 채택하고 비준하였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1) 1968년 유네스코의 장 허쉬(Jeanne Hersch)와 로버트 라폰트(Robert Laffont)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문집인 *Le Droit d'être un homme*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명백하게 정의된 법적 상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인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가령,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권은 분할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인권은 분할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각 인권은 다른 인권을 수반하며 다른 인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권리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생명권은 식량에 대한 권리와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가 존중됨을 전제로 한다. 공직 피선거권은 기초교육 접근성을 함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호는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상호보완적이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신체적 보전에 동일하게 중요하다.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은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국제사회는 1993년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이와 같은 인권의 전체론적 개념(holistic concept)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 있다.

“모든 인권을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반 위에서, 동일하게 중점을 두어 인권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적,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의미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 제5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타 센(Amartya Sen)은 모든 인권은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임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가령, 기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는 부유한 국가와 빈곤 국가 모두의 경우에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국가에서는 미디어가 기근의 위험에 관심을 유도하고 정당과 국민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의회, 행정부 및 기타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을 간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인식하게 한다.²⁾

비차별 원칙

최악의 인권침해 중 일부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은 인권의 핵심적 요소다. 평등권에 의해 국가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사회, 소수집단 소속, 재산, 출생,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의 준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특정 집단으로 하여금 모든 또는 일부 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별적 기준은 그러한 특성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s and Deprivation*, Clarendon Press, 1982

> Box 5

차별의 금지

- 비차별은 인권의 한 중심축에 해당한다.
- 법에 의한 차등은 사실의 차이에 근거하여야 한다.
- 차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차별의 근거로 사용되어 온 -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 특징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사회, 소수집단 소속, 재산, 출생,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및 사회적 또는 기타 신분 등이 포함된다.

사실적 차이는 법적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모든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실적 또는 법적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 입증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즉, 정부는 적용되는 차이가 실제로 합리적이며 객관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 Box 6

고용과 관련하여 정당화되는 차별

인종 평등과 고용 평등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³⁾에서는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는 차등적 대우를 허용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실제로 출신 인종 또는 민족,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과 같은 이유에 의한 차이가 요구되는 직종에 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차별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는, 진정성이나 현실성(realism)을 위해 특정 출신 또는 연령의 사람이 필요한 배우 및 모델(Model), 대중과 접촉하며 (동일 조직내 사무직 또는 조리(catering) 등의 다른 직종과는 달리) 특정한 신앙이나 신념을 지닌 사람들로 배치되어야 하는 교회나 유사 단체의 일부 직책이 포함된다.

일부 집단은 특별한 권리를 지닌다.

평등, 보편성, 비차별 원칙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한 특별 보호가 필요한 특정 집단이 특별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여성, 외국인, 무국적자, 난민, 유민,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피구금자 등과 같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집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여러 인권 규범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집단에 주어지는 인권은 해당 집단의 취약성 또는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의 역사와 같이 특별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편성의 원칙에 합치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집단의 특별한 권리는 타 집단에 대한 차별에 상응하는 특혜에 다름 아닐 것이다.

> Box 7

장애인의 특별한 권리: 예시

영국의 경우, 1995년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의해 사용자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 조직 및 사내 설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는 필요한 유형의 조치들의 세부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 건물과 장비를 변경하고, 장애인을 적절한 작업 장소로 이동 배치하며, 장애인의 업무 일부를 타 노동자에게 할당하고, 대체근무시간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임시 특별 조치

과거 차별의 장기적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임시 특별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⁴⁾ 제4조에 관한 유엔

3) 출신 인종 또는 민족에 무관한 동등한 대우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2000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0/43/EC과 고용과 직업에서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일반적 기본 틀 수립에 관한 2000년 11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2000/78/EC.

4) CEDAW와 의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총회 권고 제25호⁵⁾는 그러한 조치들을 “자원의 분배 및/또는 재분배, 우선적 처우, 대상할당 채용, 고용 및 승진, 시한을 정한 수치 목표, 할당제 등 구제 또는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광범위한 입법, 집행, 행정 및 기타 규제적 규범, 정책 및 관행”과 같은 조치로 정의한다.

> Box 8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예시

노르웨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남녀평등 옴부즈맨(Gender Equality Ombudsman)이 남녀평등의 맥락에서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남성들에게도 권리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모성휴가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의 하나로, 4주간의 출산휴가는 이제 아버지에게도 할당되었다. 해당 남성이 “아버지 할당휴가(father's quota)”라고 알려져 있는 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가족은 모성휴가의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아버지 할당휴가”는 1993년에 도입되었고, 이후 2년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의 비중은 45%에서 70%로 늘어났다. 더 나아가, 옴부즈맨은 육아 관련 직종에서 남성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이 노동시장 부문의 엄격한 성분리(gender segregation) 현상을 해소하며, 아이들에게 남녀 역할에 대한 덜 고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한된 육아 관련 직종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적극적 조치를 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령, 특정 직종,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 또는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여성들을 우대하기 위한 임시 할당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차별을 받아 왔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CEDAW 제4조에 의해, 이러한 임시 조치들은 권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에게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표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ts Optional Protocol: a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IPU, Geneva 2003*을 참조.

- 5)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들은 다양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일반 권고”와 “일반 논평”에서 상술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제5장 참조.

가 달성되면 이러한 조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조치들은 여성을 위한 부당한 특혜이며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된다.

일반 권고 제25호에 따르면, 그러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과거 차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임시 특별조치의 적용이 과거 여성에 대한 차별의 효과를 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CEDAW에 의해 당사국에 주어지는 여성의 지위를 사실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남성과 평등한 지위로 개선하여야 할 의무는 과거 차별에 대한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 인권과 국가 주권

인권이 여전히 한 국가의 내정 문제로 간주되던 과거에는 다른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집단 살해와 같은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가 없었다. 국가 주권에 근거를 둔 이러한 접근법은 20세기에 이르러 특히, 나치 독일의 행위와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잔학성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인권 증진 및 보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며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법적 의무(*universal legal obligations*)’와 ‘국가 주권(*State sovereignty*)’의 불일치 문제는 보편성 개념에 의거하여 당국이 취하는 행동은 인권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라 사례별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및 보호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들 특히, 국제협력 목적에 따라 유엔의 우선 목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들의 기본들에서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및 실행계획 제4항

◆ 민주주의, 인권, 의회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호관계는 폭넓게 연구되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치권력의 수립과 행사를 위한 단순한 일련의 절차상 규칙으로만 여겨 지지 않고, 인권과 함께 개인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1995년 국제회의연맹은 국제 기준을 높이고 전 세계적 민주화 추세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민주주의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Democracy) 초안 작업을 시작하였다. 1997년에 채택된 이 선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공무 수행 참여권은 세계인권선언 21조와 ‘자유권규약(ICCPR)’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다른 권리와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도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주권 기구인 의회는 민주주의에 있어 주요한 제도의 하나이다.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의 정책과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의회는 또한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확립한다. 이 모든 이유에서 볼 때, 의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국제 평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고 증진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평안을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 통치 형태의 하나인 민주주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또한 자기보정(補正) 능력을 지닌 유일한 정치 제도이기도 하다.”

국제회의연맹 세계민주주의선언 제3항

1997년 9월, 카이로

원칙적으로 인권침해는 어느 누구 또는 집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세계화를 배경으로 비국가 행위자(초국적 기업, 조직 범죄집단, 국제 테러집단, 게릴라, 준군사 조직, 그리고 심지어 정부간 기구)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국제법에서는 *국가만이 인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 되면 세 가지의 광범위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즉, 존중(respect)의 의무, 보호(protect)의 의무, 이행(fulfil)의 의무다. 이 세 가지 의무의 균형점은 해당 권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적용된다. 또한,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 차원에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중 의무(obligation to respect)”란, 국가가 개입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무에 의해 권리의 향유를 저해할 수 있는 정부의 일정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교육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보장하려는 부모들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

“보호 의무(obligation to protect)”에 의해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교육권을 예로 들자면, 아동의 교육권은 부모와 가족, 교사와 학교, 종교, 분파, 일족, 기업을 포함한 제3자가 개입하고 사상을 주입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가 이 의무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폭은 넓다. 가령, 개인적 인격 및 안전에 대한 권리에 의해 국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 폭력이라는 널리 확산된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가정 폭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 관련된 형법, 민법, 가족법 또는 행정법, 경찰 및 사법부 교육훈련 또는 일반 인식제고 형태로 -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Box 9

국가의 존중, 보호, 이행 의무: 예시

생명권

- 존중: 경찰은 절도와 같은 경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 용의자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 보호: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가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살인 미수)은 국내법에 의해 적절한 처벌을 수반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경찰은 범법자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범죄를 적절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이행: 당국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 가능한 아동 사망률과 기타 유형의 사망률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 존중: 경찰은 피구금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호: 당국은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행: 당국은 경찰관에게 용인가능한 심문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투표권

- 존중: 당국은 투표 절차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보호: 당국은 권력층(정치인, 일족이나 가족의 대표 또는 사용자)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 비밀투표를 조직하여야 한다.
- 이행: 당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조직하고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강권

- 존중: 당국은 (특히 강제 불임시술 또는 의학 실험을 통해) 건강권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보호: 여성성기 절제(FGM)는 금지되고 근절되어야 한다.
- 이행: 적정한 수의 병원 및 기타 공공 보건의료 시설을 통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접근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식량권

- 존중: 당국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막는 어떠한 조치(가령, 농지로부터의 일방적 퇴거 조치)도 삼가야 한다.
- 보호: 당국은 권력층 또는 권력 단체가 식량권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법을 채택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 수질을 오염시키는 기업, 또는 농민을 내쫓는 지주)
- 이행: 당국은 적절한 음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자신들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취약집단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 농업 개혁과 같은 - 정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이행 의무’란 무엇인가?

“이행 의무”에 의해 국가는 인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령, 교육권과 관련하여 국가는 (충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적정수의 교사를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무상 의무 초등교육, 무상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문맹 퇴치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점진적 실현의 원칙

점진적 실현의 원칙은 적극적 국가 의무인 이행 및 보호 의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권리는 국가에게 자국의 경제적 능력, 사회문화적 전통에 의거하고 국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특정 기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 보건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진적 실현이란 정부가 점진적으로 유아 사망률을 줄이거나, 주민 1,000명당 의사의 수를 늘이거나, 특정 전염병 및 유행병을 막기 위한 예방 접종을 한 인구의 비율을 높이거나, 기본 보건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목표치와 기준(benchmark)을 설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분명히, 빈곤 국가의 보건 기준은 정부가 건강권 이행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부유한 국가의 기준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전무하거나, 퇴보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특정 집단(여성, 종교적 또는 민족적 소수집단 등)을 보건 서비스 접근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건강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Box 10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예시

자유권규약(ICCPR) 제2조 (3)항에 따라, 당사국은 “(a) 자신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b) 그러한 구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관할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에 의해, 또는 국가 법제에 의해 명시된 기타 관할 당국에 의해 결정된 권리”를 갖도록 하며,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3조는 “동 협약에 열거되어 있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자는 누구라도 국가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코스타리카 산호세 협약 (Pact of San Jose, Costa Rica)으로도 알려져 있음)’ 제25조 (1)항은 이러한 구제를 별도의 인권으로 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해당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이나 동 협약에서 인정한 자신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간단하고 즉각적인 절차에 의한 구제, 또는 기타 효과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국내 구제 제공 의무’란 무엇인가?

권리의 개념 자체는 실제적인 주장 외에도 권리가 위반되었을 경우 국가의 - 사법, 행정, 입법 또는 기타 - 당국에 구제를 청구할 가능성도 수반한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고 관련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관할 국가기관에 **효과적인 구제책**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초국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

일단 국내 차원에서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거친 후에 국제인권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분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에 의해 확립된 보다 발전된 절차에 의하면 개인은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상설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미주인권 협약’에는 개인이 국제인권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엔 조약은 현재 그렇지 않다(상세한 내용은 제5장 및 제9장 참조).

◆ 배상에 대한 권리

효과적 구제에 대한 권리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또

는 국가 요원을 포함하여, 해당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다. [Box 11]은 다양한 배상의 형태를 보여준다.

> Box 11

인권침해 후 피해자의 보상받을 권리

- **원상회복(restitution):** 피구금자의 석방, 재산의 반환
- **명예회복(satisfaction):** 공개 사과, 진실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조사
- **복구(rehabilitation):**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적,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조치(가령, 고문으로부터의 회복을 돕기 위한 센터 설립)
- **보상(compensation):**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 **재발방지보장(Guarantee of non-recurrence):** 법률적, 행정적 변경조치, 징계 조치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앞에서 인용한 구제조치에 대한 권리의 규정들([Box 10] 참조)은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적용되는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대부분의 조약들 사회권규약(CESCR)과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 에는 그와 같은 조항이 없다. 그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정부와 심지어는 일부 인권 학자들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권리 범주의 구분은 냉전시대의 이념적 논쟁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당시 순전히 “소극적(negative)”인 권리 즉, 국가 개입을 지양하는 권리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가령, 모두를 위한 고용, 건강 및 완전한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둔 “프로그램적 권리(programme rights)” 즉, 적극적인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정치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적 권리”는 법원에 의해 집행

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유럽인권법원이나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과 같은 초국가적 법원들은 국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가령, 국가는 합당한 시간 내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고문, 강제실종 또는 자의적 사형 혐의가 제기된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상 및 기타 형태의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형사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법원은 한 국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자국의 적극적 의무 가령,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6조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장(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거하여 사법제도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원은 또한 국가가 사회권규약(CESCR) 제13조와 14조에 명시된 교육권의 최저 보장에 의거하여 자국의 학교 제도를 수립하거나 동 규약(CESCR) 제12조에 명시된 실현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 의거하여 공공 보건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도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국제법원은 거의 없다. 예외라고 하면, 1988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의 인권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9조 (6)항에 의해 교육권과 노조설립권과 관련된 개별 청원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미주인권법원’,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Dayton Peace Agreement)의 [부속서 6]에 의거하여,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제기된 차별 주장 또는 명백한 차별과 관련된 여러 건에 대해 판시를 한 ‘보스니아-헤르츠고비나 인권재판소(Human Rights Chamber for Bosnia and Herzegovina)’를 들 수 있다. 1993년에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사회권위원회’(유엔 조약감시기구의 하나로 준사법적

전문기구, 제5장 참조)에 개별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부속의정서 초안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정부가 이 중요한 발전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Box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국내 법원의 권한: 예시

일부 국가에서 국내 법원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의 하나로 남아프리카의 법리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식량권, 보건의료 및 주택 접근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 법원에 의해 강행될 수 있다. 그루트봄 사건(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v. 아이린 그루트봄 외, CCT 11/00)에서 헌법재판소는 선례를 남겼다. 케이프 고등법원이 남아프리카 정부에게 집이 없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임시주거지(텐트, 이동 화장실, 정기적 급수)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자 정부가 헌법 재판소에 항소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이전에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다가 수해를 당한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그 곳에서 강제 퇴거당하고 판잣집도 불태워졌다. 처음의 거주지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완전히 살 곳을 잃은 그들은 운동장에 모여 앉아 헌법에 명시된 주거에 대한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주거권을 근거로 한 청원은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정부가 “가용 자원”내에서 주거권의 점진적 실현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 헌법에 보장된 아동의 주거권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재판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논거를 제시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즉, 정부는 국내 및 국제 법원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하고, 따라서 관련 사법적 판례법이 거의 축적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러한 권리들이 재판가능하지 않거나 적어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재판가능성이 낮다는 증거로 간주될 것이다.

◆국제인권법의 출현

국제인권법이 등장한 때는 19세기로 당시 국제법에는 국가가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가하는” 악행을 자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형성된 시기였다. 이후에 적십자 운동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의 영향으로 각각 제네바 협약⁶⁾과 산업노동자를 심각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된 군소 조약들은 민족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따라서 이 조약들을 때로는 현대의 국제인권문서의 전조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최초의 국제인권 조약인 ‘노예제 협약(Slavery Convention)’은 1926년에 채택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국제인권장전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를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고 촉진하는 것”⁷⁾

6) 제네바협약과 인도주의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IPU, Geneva 1999 참조

7)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I, Article 1, para.3

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기본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인권”이란 용어에 대해 유엔 헌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유권해석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는 문서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로서 작성되지도 않았고 이후에 그러한 문서로 채택되지도 않았지만, 50년도 더 지난 오늘날 *보편적 인권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2년 만에 채택되었지만 ‘자유권규약(CCPR)’과 ‘사회권규약(CESCR)’의 문안에 합의하는 데는 거의 20년이 걸렸다. 6년간의 초안 작업이 끝나고 1954년에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최종안이 결정되었지만, 유엔 총회에서 두 규약을 채택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렸다. 추가로 10년이 흘러서야 규약 발효 요건의 35건의 비준서가 기탁되었고 마침내 1976년에 두 규약은 발효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만이 유엔의 일반적 인권문서다. 이 인권문서들에 자유권규약(CCPR) 선택의정서 두 건(1966년과 1989년에 채택)을 더하여 일반적으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부른다.

“세계인권선언은 존엄성, 평등, 안전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인류의 강렬한 열망을 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강력한 문서라. 세계인권선언은 최전 기준을 제공하고, 도덕적 이슈들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기본틀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지도 비에이라 드 멜로(Sergio Vieira de Mello)의
2002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연설에서.*

➤ Box 13

세계인권선언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르네 카신(Rene Cassin), 찰스 맬리크(Charles Malik)와 같은 명망 있는 인사들의 지도력에 힘입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2년 만에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선언에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과 함께 “이 선언에 열거되어 있는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비록, 이 선언이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고, 또한 채택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기권하기는 하였지만, 인권에 대한 유엔의 이해를 표출하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권위 있는 규범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은 이제 헌장에 기반한 인권보호체제의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다(제8장 참조). 이 선언은 자유권규약(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ESC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두 건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을 구성한다.

◆ 주요 인권조약

국제인권장전은 다수의 더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지닌 문서들로 보완되어 왔다. 일부 조약은 감시기구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두 개의 국제규약과 함께 일반적으로 핵심인권조약(core human rights treaties, 제5장 참조)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문서를 구성한다. 이러한 추가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CERD, 1965년 채택, 1969년 발효)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금지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1984년 채택, 1987년 발효)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CMW, ‘이주노동자협약으로도 불림. 1990년 채택, 2003년 발효)

국제인권조약과 관련 문서의 문안 작성 및 채택

모든 인권조약과 주요 선언문들은 현재 191개국의 회원국 모두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1개국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다. 문안 작성 과정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의 채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언을 통해 일반적인 정의를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개발하는 더 어려운 작업이 이어진다.

인권문서의 문안은 일반적으로 먼저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작성되는데 대체로 이 위원회는 대개 산하의 상설 소위원회인 ‘인권 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제8장 참조)나 위원회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성한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에게 최초 초안 작업을 위임 한다(가령, 이 책을 쓸 당시 회기간 실무그룹이 강제 실종에 관한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위원회와 그 산하 기구의 문안 작성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수년이 걸리며 심지어 20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문안이 정해지면 문안작업의 속도는 빨라진다. 다음으로 문안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은 한 회기내에 이루어진다. 끝으로, 총회에서 특히, 총회의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에 관한 제3위원회(Third Committee on Social, Humanitarian and Cultural Affairs)’에서 초안을 논의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한다. 이전에는 제3위원회가 그 문안을 거의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요 정치적 결정은 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총회의 업무는 한두 회기 내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단 총회에서 대개 합의로 조약이 채택되면 회원국의 서명과 비준 단계로 이어진다. 조약은 정해진 수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효력을 지닌다.

◆기타 유엔 인권규범

유엔과 산하 전문기구들은 이밖에도 여성, 난민, 외국인, 무국적자, 소수민족 및 원주민, 수용자(prisoner),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관한 여러 인권규범들을 채택하였다. 더 보편적인 규범들은 노예제도, 고문, 강제실종, 집단살해, 강제노동, 종교적 불관용과 같은 주요 인권 침해를 다루거나, 교육, 고용, 발전, 법집행, 혼인, 집회와 정보의 자유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타 특정한 인권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권규범의 상세목록은 [부록 4]에 첨부되어 있다.

➤ Box 15

인권기준 정립 및 이행의 단계

선언: 구속력이 없는 기준 수립

세계인권선언 (1948년)

미주인권선언 (1948년)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 및 협약

유엔규약 (1966-1976)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1950-1953)

미주인권협약 (1969-1978)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1986)

이행: 인권조약감시기구 및 메커니즘

진정 절차

보고 절차

조사 절차

정기방문 제도

인권에 대한 판결

인권조약과 협약은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국제적 감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제 재판소와 전문가 기구*들의 판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기구들은 초기 기준들의 규정이 현 상황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그 기준들에 당초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역동적인 해석을 부여하여 왔다. 가령,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1950)’ 제3조에 의한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금지는 당초에는 (영국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형태의 체벌은 의도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협약이 살아있는 문서로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제3조에 의해 어떠한 형태의 체벌이라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엔 자유권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제5장 참조)는 자유권규약(CCPR) 제9조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함께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단지 공식적인 자유의 상실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정표적인 판결(*델가도 파에즈 v. 콜롬비아* 사건, 195/1985)에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비구금자의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고문과 노예제 금지와 같은 일부 인권은 *절대적이다*.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문에 해당하는 심문 방법 - 가령, 전기 충격과 심각한 신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방법 - 을 사용하는 것은 테러방지를 위해 피구금자로부터 곧 개시될 수 있는 테러 공격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에게는 대부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자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재량(*margin of appreciation*)이 주어진다. 이러한 의무의 대부분은 점진적 실현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한 국가가 자국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그 사회의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주로 인권의 핵심 내용에 적용되며 정부는 유보 조항(*reservations*), 면제(*derogation*) 및 제한 조항(*limitation clauses*)과 점진적 실현 원칙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인권을 이행할 수 있는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지닌다.

◆ 제한 조항

인권 보호 의무의 상당 부분은 소위 제한 조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따라서 국가 안보, 영토 보전 또는 공공 안전, 무질서 또는 범죄의 예방, 공공 보건 또는 윤

리의 보호,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형식, 조건, 제약 및 제재가 주어진다. 사람들이 자신의 언론의 자유와 시위 참가의 자유를 인종적, 종교적 증오와 전쟁 선동 또는 타인의 범죄 행위 교사를 위해 오용한다면, 정부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 개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개입, 제약 또는 제재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사회에서 각각의 목적과 국익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경우에 그러한 제한을 가하여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정당한 목적의 이행을 위해 그에 비례하는(*proportionate*) 조치들만을 취하여야 한다.

➤ Box 17

전시에도 훼손될 수 없는 권리, 자유 및 금지 조항

자유권규약(CCPR) 제4조

- 생명권
-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 금지
- 채무로 인한 구금 금지
- 소급형법으로부터의 자유
- 법 앞에서 개인으로 인정될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15조

- 생명권. 단, 합법적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제외
-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 소급형법으로부터의 자유

미주인권협약 제27조

- 법인으로서의 권리
- 생명권
- 인간적 처우에 대한 권리
- 노예제 금지
- 소급형법으로부터의 자유

- 양심과 종교의 자유
- 국적권
- 정부 참여권
- 사법적 구제에 관한 권리
- 이름에 대한 권리
- 가족의 권리
- 아동의 권리

➤ Box 18

정당한 제한

유보 조항

비상사태에서 의무 면제 조치

인권남용(human rights misuse) 금지

제한 조항은,

- 국내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비례적이어야 한다.

➤ Box 19

정당한 제약: 법원 판결의 예시

특정한 유형의 개입이 *정당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유효하고 예견 가능한 *국내법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비례적*인지를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구들의 임무다. 가령, 유럽인권법원은 관련 제한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정부에게 상당히 폭넓은 판단 재량권을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게 그러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절박한 사회적 요구*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법원은 아일랜드 형법에 의한 동성애의 일반적 금지 조항이 민주사회에서 공공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유럽 사회에 유사한 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생활 권리의 지나친 제약에 대한 *절박한 사회적 요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비상시 의무 면제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전시, 폭동, 자연재해 또는 기타 공공 비상시(테러 공격 등)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국의 인권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야 한다.
- 국제조약의 의무를 면제하는 특정 조치들을 관할 국제단체와 기타 당사국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상황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정도로만 면제가 허용된다.
- 상황이 허락하면 즉시 면제를 해지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이 되는 권리가 어떠한 면제도 허용되지 않는 권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Box 17] 참조).

◆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

일부 경우에 국가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용, 승인 또는 가입시에 성명을 발표한다. 이러한 성명은 “유보”, “선언”, “양해(understanding)”, “해석적 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적 성명(interpretative statement)”이라는 제목일 수 있다.

1969년의 ‘비엔나 조약법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19 조에는, 국가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용, 승인 또는 가입시에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적용을 유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해당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2.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해당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3. 위 두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유보가 해당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약이 유보에 대해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그 조약에 대한 유보 내용을 작성하여 회람시킨 경우, 관련 국가들은 통보 등록일 또는 해당 국가가 그 조약의 자국 적용에 동의한 날 중에서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유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969년 비엔나 협약 제20조 (5)항 참조).

국가는 해당 조약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라도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 테러방지 조치와 인권

2003년 9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발간한 “인권보호와 테러방지에 관한 유엔과 지역기구들의 법리 요약(*Digest of Jurisprudence of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Organization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le Countering Terrorism*)”은 유엔 및 지역별 기구(특히, 아프리카, 미주, 유럽의 단체)의 인권기구들의 판결 사례를 발췌하여 모아놓은 책자다.

이 책은 테러방지 활동 과정에서 일부 이슈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문제와 특히 관련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그 중의 하나는 ‘테러리즘(terrorism)’의 정의다. 이 용어에 대해 아직까지 권위적인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가들은 이 용어의 정의의 일부 필수 요소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있다. 1994년 12월 9일의 유엔 총회에서 ‘국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선언문(Declaration of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RES/49/60)’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에 의하면, 테러리즘에는 “일반 대중, 집단 또는 특정인들에 대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포 상황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 또는 계산에 의한 범죄 행위”가 포함되며, 그러한 행위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기된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기타 어떠한 성격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테러리즘과 인권의 이슈는 오랫동안 유엔 인권프로그램의 관심사였지만 2001년 9월 11일 사태와 전 세계적인 테러행위 급증으로 인해 이 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하게 되었다. 국제 및 지역별 단체의 대표가 참석한 2003년 3월 6일 안전

보장이사회 산하 테러방지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의 특별회의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테러행위를 저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통해, 테러분자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인권을 보전하여야 한다. 인권, 기본적 자유 및 법치에 대한 존중은 - 갈등의 시기에 희생되어야 할 특권이 아니라 -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 도구다.”

몇몇 유엔 인권기구들은 테러방지 대책이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여 왔다. 예를 들어, 유엔 특별보고관과 독립적 전문가들은 2003년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제10회 연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특별보고관과 독립전문가들이 모두 한결 같이 테러리즘을 강하게 비난하고는 있지만 점차 많은 국가에서 테러 근절을 명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 법률 및 관행의 확산에는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법률 및 관행이 사실상 모든 인권 즉,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안고 있는 위험과 이로 인한 새로운 부류의 차별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그들은 테러행위 근절을 구실로 인권 운동가들이 위협을 받고 취약집단 특히, 이주자, 난민, 망명신청자, 원주민, 자신의 토지권을 위해 또는 경제적 세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출신 및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주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테러행위가 비상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권리에 대해 CCPR 및 지역별 인권문서에 의거하여 적용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항에 의해 일부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Box 17] 참조).

자유권규약(CCPR)와 지역 인권조약에 의해 위에서 언급한 의무 면제가 절대 불가한 권리 외의 경우에도 의무 면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즉, 예외적인 상황으로 엄격한 시한을 두어야 하고, 상황의 긴박성에 의해 필요한 정도로만 허용되며, 정기적인 검토를 거치고, 국제법에 의한 다른 의무들에 부합하여야만 하며, 차별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 또는 관련 지역기구에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조항과 면제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법에 의한 국가들의 다른 의무들을 바탕으로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CCPR) 제4조에 명시된 권리들에 추가하여 의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요소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요소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하여야 하며, 인질, 납치 및 인정되지 않은 감금은 금지된다.
-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 주민들의 불법적 추방 또는 강제 이송은 금지된다.
- “비상사태 선포는 당사국이 선진 포고를 하기 위한, 또는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게 되는 국가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무력 분쟁 중 공정 재판에 대한 권리가 국제 인도주의법에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자유권위원회는 합법성 및 법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공정 재판 요건은 비상사태 중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의무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인정된 권리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때로는 사법적 보장을 포함한, 절차상 보장에 의해 보호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유권규약(CCPR)과 지역 인권규범에 의해 필연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은 비상 외의 다른 정당하고 분명한 목적으로 일부 권리를 제한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해진 조치들은 절적하여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는 최소한의 간섭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와 관

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당국에게 주어진 재량권은 무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 비차별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취약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취하여야 한다. 특정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방지 대책은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차별과 인종주의의 급증을 촉발할 수 있다.

7개의 유엔 핵심인권조약(제3장 참조)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 여부는 7개의 전문가 기구들에 의해 감시되며, 이 기구들을 가리켜 조약감시기구 또는 조약기구라고 한다.

- 자유권위원회 (CCPR)
- 사회권위원회 (CESCR)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 고문방지위원회 및 고문방지소위원회 (CAT)
- 아동권리위원회 (CRC)
-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MW)

1985년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설립된 CESCR 위원회를 제외하고, 위 조약 기구들은 각각의 해당 조약에 의해 설립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해당 조약이 발효된 직후에 설치되었다.

◆ 구성과 기능

자유권위원회(CCPR), 사회권위원회(CESCR),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아동권위원회(CRC)들은 각각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문방지위원회

(CAT)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CMW)는 10명,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해당 조약의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되며(단, 사회권위원회(CESCR)는 예외로서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선출된다), 지역적 분배의 형평성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회의 개최 횟수는 자유권위원회(CCRP)와 아동권위원회(CRC)가 1년에 3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CMW)가 1회, 그 밖의 위원회들은 2회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예외적으로 유엔의 뉴욕 본부에 있는 경제사회국(DESA) 산하 유엔여성발전과(UNDAW)에 의해 관리되며, 그 밖의 모든 조약기구들은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의해 관리된다.

◆ 보고 절차

당사국의 의무

국가 보고 의무는 유일하게 7개 인권조약 모두에 공통되는 강제 절차다. 정부는 각 조약기구에 최초보고서, 정기보고서, 해당 조약기구가 요청하는 비상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조약기구는 당사국의 보고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당사국이 채택한 모든 조치들
- 그 권리들의 향유에 있어 이루어진 진척
- 통계자료를 포함한 관련된 실증 정보
- 해당 조약의 국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점과 어려움

대체로 국가보고서는 각 정부에 의해 작성된다. 그러나 보고서의 완성도와 객관성을 위해 타 국가기관(특히 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옴부즈맨, 관련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단체(CSO)가 보고서 작성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보고서 심의

조약기구들은 국가보고서를 분석하고,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들은 각국 정부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국가대표들은 위원들로부터 매우 비판적인 질문과 의견을 접하기도 한다. 각 국가보고서의 검토를 끝내면서 조약기구는 최종견해 및 논평(concluding observations and comments)과 권고를 채택하여 회의 종료 시 발표하며 해당 조약기구의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차기 보고서에 권고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때때로, 위원회는 비상 상황 시 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세부적인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NGO와 기타 단체의 역할

국제 및 국내 NGO는 국가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이면보고서(shadow report)를 작성하기도 한다. 자유권(CCPR), 사회권(CESCR), 아동권위원회(CRC)는 NGO가 비교적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특별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유엔 전문기구들과 기타 유엔기구들에게는 조약 이행 감시를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유엔아동기금(UNICEF)은 광범위한 국가별 사무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아동권위원회가 192개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조약기구들은 각 해당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과 의무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과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를 채택하고 발표한다. 이 문서에는 조약기구가 보고절차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며, 인권조약을 해석하는 권위적 자료가 된다.

조약감시기구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모든 조약기구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또는 일반권고는 <http://www.ohchr.org/english/bodies/index.htm>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http://www.ohchr.org/english/contact>에서는 이와 관련된 안내도 제공된다.

OHCHR 연락처

주소: OHCHR - Palais des Nations

8-14 avenue de la Paix

CH - 1211 Geneva 10

Switzerland

전화: +41 (22) 917 9000

팩스: +41 (22) 917 9008

◆ 개별통보 절차

자유권규약(CCPR) 및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고문방지협약(CAT) 및 이주노동자협약의 선택조항들은 개별진정(“통보”라 불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초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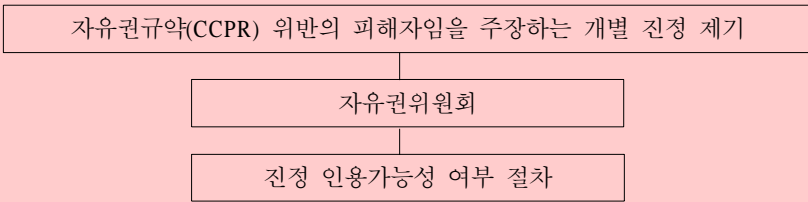
점점 더 많은 당사국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Box 22] 참조), 당사국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한 개인이 (a) 인권침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b)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국내의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였다면, 그 사람은 관할 조약감시기구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준사법적인 비공개 절차를 통해 개별 진정서를 검토하여, 구속력이 없는 최종 결정(“최종 견해, 제안 또는 권고(final views, suggestions, recommendations)”)로 불림)을 내린다. 최종 결정을 통해 해당 진정이 (공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채택 불가능한

지, 또는 채택 가능한지를 선언하고, 채택 가능한 경우에는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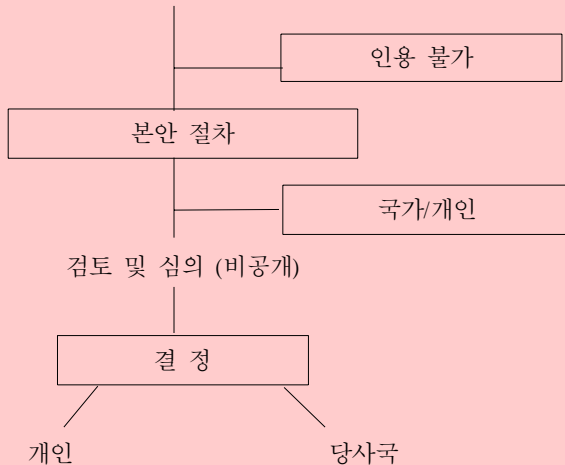
➤ Box 21

진정 절차

자유권규약(CCPR) 제1의정서 예시



- 당사국에 의한 위원회 권한 인정 (선택의정서 제1조)
- 모든 국내 구제 조치 소진 (선택의정서 제2조, 5조(2)항(b))
- 진정의 비익명성(non-anonymous)과 비남용성(non-abusive) (선택의정서 제3조)
- 자유권규약(CCPR) 조항과의 부합 (시효(ratione temporis), 관계인(personae), 장소(loci), 사항(materiae)) (선택의정서 제3조)
- 다른 국제적 절차에 의한 동시에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선택의정서 제5조(2)항)
- 주장 내용의 실증 (증거가 확실한 사건, 선택의정서 제2조)



◆ 국가통보 절차

자유권규약(CCPR),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고문방지협약(CAT),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가간 진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의해 당사국은 각 해당 위원회에 타 당사국이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국제법에 의해 모든 당사국은 다른 모든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 Box 22

개별 진정 절차에 대한 국가들의 인정과 이 절차의 실효성

자유권규약(CCPR) 제1선택의정서 비준 당사국 (2004년 11월 현재 104개국)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와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그루지야,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연합,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이셸 제도,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웨덴, 타지키스탄, 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잠비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 비준 당사국 (2004년 11월 현재 68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가봉,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리, 멕시코, 몽골,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합,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공화국, 동티모르,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고문방지협약(CAT) 22조에 의한 개별진정절차 인정 당사국 (2004년 11월 현재 56개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연합,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이셸 제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토고,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제14조에 의한 개별 진정 절차 인정 당사국 (2004년 11월 현재 45개국)

알제리,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연합,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구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공화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실효성(Effectiveness)

- 자유권규약(CCPR) 제1선택의정서에 의한 개별 진정 절차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자유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27년이 되는 2004년 11월 현재, 1,300건이 넘는 진정건이 자유권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 약 480건에 대해 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졌다.

- 1987년에 설립된 고문방지협약(CAT) 위원회에 2004년 4월까지 접수된 진정건수는 모두 242건으로 그 중 90건이 넘는 진정에 대해 판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접수된 진정건의 대부분은 당사국에서 고문이 이루어졌음을 직접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가장 흔한 경우는 유럽국가)에 의한 추방 또는 송환의 경우 자신들의 출신국 또는 도착국에서 고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외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또는 협약 제3조에 명시된 “송환금지(non-repatriation)”)의 위반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
- 2004년 3월 현재, 가장 먼저 설립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1970년에 설립)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단지 33건으로 그 중 15건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

자유권규약(CCPR) 당사국에 주어진 일반적인 법적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논평 31호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국가가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국들에게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협약 의무의 위반 가능성에 주목하고 당사국들에게 자국의 협약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동체 권익의 반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진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들간의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정위원회(ac hoc conciliation c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CERD)의 국가간 진정절차는 강제성을 띠지만(즉, 162개 당사국 모두 타 당사국에 의한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엔 조약감시기구에 국가간 진정이 제기된 예는 없다.

◆ 고문방지협약(CAT)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에 의한 조사 절차

고문방지협약(CAT)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는 각 조약기구에 의한 ‘직권조사 절차(procedure of *suo moto* inquiry)’를 명시하고 있다. 이 절차는 위원회가 고문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개시될 수 있다. 그러한 조사를 개시한 조약기구는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그 국가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비밀로 진행하되,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발표할 수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스리랑카, 터키와 관련하여) 6건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멕시코와 관련된 1건의 조사 절차만을 진행하였다.

➤ Box 23

조약별 절차 요약

조약	채택일/ 발효일	조약기구	위원 수	위원 선출권	국가보고	국가간 진정	개별 진정	직권조사 (Suo moto)
CAT	1984년 12월 12일/ 1987년 6월 26일	고문방지 위원회	10	전체 당사국	의무적 제19조	선택적 제21조	선택적 제22조	의무적 (선택적 거부 가능성) 제20조, 28조
CCPR	1966년 12월 16일/ 1976년 3월 23일	자유권 위원회	18	전체 당사국	의무적 제40조	선택적 제41조, 42조	제1선택 의정서	
CEDAW	1979년 12월 18일/ 1981년 9월 3일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23	전체 당사국	의무적 제18조		선택 의정서	선택의정서 제8조, 10조 (선택적 거부 가능성)
CERD	1965년 12월 21일/ 1969년 1월 4일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18	전체 당사국	의무적 제9조	의무적 제11조, 12조, 13조	선택적 제14조	
CESCR	1966년 12월 16일/ 1976년 1월 3일	사회권 위원회	18	경제사회 이사회 (1985)	의무적 제16조, 17조		선택의 정서 초안	
CMW	1989년 12월 18일/ 2003년 7월 1일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	10	전체 당사국	의무적 제73조	제76조 (미발효)	제77조 (미발효)	
CRC	1989년 11월 20일/ 1990년 9월 2일	아동권 위원회	18	전체 당사국	의무적 제44조			

◆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방문 제도

2002년 12월에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⁸⁾는 국제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 예방소위원회(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와 국가기구들에 의한 구금시설 정기 방문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제기구인 소위원회와 국가기구들은 권고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국가에 발송한다. 국가기구들의 권고는 연례보고서에 발표할 수 있는 반면, 국제기구인 소위원회의 권고와 견해는 당사국이 자국의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8) 2005년 8월 현재, 이 선택의정서의 비준국 수는 11개국이다. 이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2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엔의 정치적 기관이다. 점진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왔으며, 중요한 인권 현안을 다루고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NGO와 개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천 건의 청원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수립하여 왔다.

◆ 비공개 “1503절차”

이 비공개 절차(1970년 5월 27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결의(XLVIII)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형성함에 따라 “1503절차”라 불려짐)에 따라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의 특별 실무그룹은 매년 수천건의 개인청원을 조사하여 어떤 국가가 지속적인 형태로 중대하고 믿을 만한 인권침해를 보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국가상황(country situation)은 회기 전 실무그룹, 최종적으로는 유엔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meeting in plenary)에 회부된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들만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국에 대해 그 조사를 종료할 것인지, 감시하에 둘 것인지(대개 수년간), 특별보고관 또는 임시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전면적인 비공개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않거나 해

부기(附記) : 유엔은 지난 2006년 3월 15일 총회를 통해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기능과 역할을 계승하고, 그 위상을 격상시킨 유엔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설립 결의안(A/60/L.48)을 통과시키고, 새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엔 인권보호메커니즘을 정비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

당정부가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공개(to go public)”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개(going public)”는 아래 기술한 특별절차 중 하나로 그 국가상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Box 24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엔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여러 기능별 위원회 중 하나다. 유엔의 정치적 기구로서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그 수는 지난 몇 년간 증가하여 현재 53명에 이른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 다양한 정부간 기구들, 그리고 여러 NGO들이 옵서버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발언권을 지니고 서면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의 연례 회의는 3월과 4월에 제네바의 유엔 건물인 팔라이스테나치옹(Palais de Nations)에서 6주간 개최되는데 이 회의에는 여러 국가 및 정부의 수반, 장관, 인권운동가 및 언론인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이 참여하여 모든 중요한 인권 현안에 대한 공개 토의를 가진다. 1990년대 이후로 인권위원회는 구 유고, 르완다,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현황에 관한 비상회기를 열기도 하였다. 26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두뇌집단(Think tank) 기능을 맡은 ‘인권 증진 및 보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제6장 참조).

최근 몇 년간, 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비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개혁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⁹⁾에서, “국가들이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이 되려고 한 이유는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인권위원회를 적은 규모의 상설 인권이사회로 대체하여 위원들을 직접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사회는 상호심의(peer review)를 위한 장으로서 기능하며 모든 국가들의 자국 인권 의무 이행을 평가하는 권한을 지니게 될 것이다.

2005년 현재, 인권위원회의 위원국들은 다음과 같다.

-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부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과테말라, 기니,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케냐, 말레이시아, 모리타니아, 멕시코,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카타르, 대한민국, 루마니아, 러시아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란드, 토고,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짐바브웨

◆ 특별절차

1967년 6월 6일에 발표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235호 (XLII)에 의거하여,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주장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특별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절차는 (국가별 수입사항에 의한) 특정 국가 또는 자치령에서의 인권 상황이나 (주제별 수입사항에 의한) 전 세계적인 주요 인권침해 주장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공개 보고하는 단계들로 구성된다.

9) A/59/2005, page 45, paragraphs 182, 183

유엔 인권위원회의 주제별 감시 메커니즘
(2005년 4월 현재)

주제	개시년도	수임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1980	실무그룹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	1982	특별보고관
고문	1985	특별보고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1986	특별보고관
용병 사용	1987	특별보고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	1990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	1991	실무그룹
국내 유민	1992	사무총장 대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1993	특별보고관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	1993	특별보고관
구 유고 실종자	1994-1997	전문가
여성 폭력	1994	특별보고관
재판관과 변호사의 독립	1994	특별보고관
유독, 위험 물품 및 폐기물의 불법 이동 및 유기	1995	특별보고관
인권과 극빈곤	1998	독립 전문가
교육을 받을 권리	1998	특별보고관
이주자의 인권	1999	특별보고관
구조조정 정책	2000	독립 전문가
인권 옹호자	2000	사무총장 특별대표
주거권	2000	특별보고관
식량권	2000	특별보고관
원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2001	특별보고관
실종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2001	독립 전문가
건강권	2002	특별보고관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직면한 인종차별 문제	2002	실무그룹
CESCR 선택의정서 성안에 관한 선택사항	2003	공개적 실무그룹
불처벌	2004	독립 전문가
테러리즘	2004	독립 전문가
인신매매	2004	특별보고관
인권과 국제연대	2005	독립 전문가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	2005	특별보고관
인권을 침해하고 자결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수단으로서 용병의 사용	2005	실무그룹
이주자의 인권	2005	특별보고관

이 절차들은 특별보고관, 유엔 사무총장 대표, 독립 전문가 또는 실무그룹이 이행하는 위임(mandate)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별 절차 업무에는 긴급 호소(Urgent Appeals), 국가 방문, 기준 작성 등이 포함된다.

국가별 수임사항

특정 국가의 상황으로 볼 때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인권위원회는 해당 국가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거나 전문가에게 국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국가별 수임사항은 매년 인권 위원회가 심의한다.

주제별 수임사항

주제별 특별보고관, 사무총장 대표, 전문가 또는 실무그룹이 모든 국가에서 특정 인권침해 발생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승인을 얻어 현장 파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주제별 수임사항은 위원회가 3년마다 검토한다.

◆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준에 대한 초안 마련을 지원하며,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소위원회는 매년 8월 제네바에서 3주간 회기로 회의를 갖는데, 이 회의에는 국가,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NGO)가 옵서버로 참가한다. 소위원회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은 특정 이슈 또는 특정 실무그룹에 대한 보고관으로 지명된 개인전문가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소위원회에는 비공개 “1503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보(Communication)에 대한 실무그룹과 정부, 비정부기구(NGO), 피해자 및 해당그룹의 대표들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원주민(indigenous peoples) 및 소수자(minorities)에 대한 실무그룹 외에도, 다국적기업과 법집행에 대한 새로운 실무그룹들이 설립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는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마찬가지로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주요 NGO들과 일부 정부의 계속되는 요청에 힘입어 설립되었다.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년)에 참가한 171개국 대표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설립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20일에 유엔 총회는 결의 48/141을 채택하여 “유엔 인권활동의 최고 책임을 지닌 유엔 관료”로서 사무차장에 해당하는 인권최고대표직을 신설하였다.

이 총회 결의에는 최고대표의 구체적인 책무가 열거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보호한다.
- 인권분야에서 자문서비스,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에게 제공한다.
- 인권분야에서 유엔의 교육 및 대중홍보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한다.
-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 세계의 인권침해 지속을 방지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들과 대화한다.
-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유엔 체제 전반에 걸쳐 인권 증진 및 보호 활동을 통합, 조정한다.
- 인권분야 유엔 조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직을 합리화, 조정, 강화 및 체계화한다.

따라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사명은 모두를 위해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의 인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엔 조약감시기구들과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특별 메커니즘에 양질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 기준을 유엔 제도 전체의 업무에 통합시키기 위해 다른 유엔 기구들과 협력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갖추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권 현안에 대해 정부들과 대화하고 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인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 기관과 절차의 개발을 추구하도록 각국 정부에게 촉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법률상으로는나 관행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수많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가별 현장 참여 활동이 이루어져왔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인권 역량과 제도 확립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권조약감시기구들의 권고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메커니즘에 따른 사후 조치를 통해서, 그리고 인권문화 촉진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

현장 활동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로 정부, 국가인권기구(national institutions), NGO, 유엔 국가팀이 지역 또는 소지역 전략의 맥락에서 자발적인 권리 관련 행동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점차 강화되어야 한다.

인권의 실행: 현장속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주요 활동현장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캄보디아,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유엔평화사절단의 인권 관련 파견

아브하즈/그루지야,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와르, 콩고민주
공화국,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기니비사우, 이라크(예정), 라이베리아, 시에라리
온,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지역사무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태국 방콕, 레바논 베이루트, 남아
프리카 프리토리아, 칠레 산티아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예정), 카메룬 야운데

기술협력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몽골, 네
팔,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필리핀,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역대 유엔 인권최고대표들

에콰도르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호세 아야라-라쑈(José Ayala-Lasso)**는 1994년 최초의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1997년에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이 2대 인권최고대표에 올랐다. 그녀는 구조개혁이 한창이던 시점에 유엔의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하게 되었는데, 인권최고대표실의 전 인력과 인권센터(Centre for Human Rights)가 단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재임 기간 중,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기존의 인권 문제와 점점 불거지고 있는 인권 현안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보편적 문화에 대한 전 지구적 추구에 있어 새로운 주체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9월 12일에는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인도주의 및 평화유지 이슈들의 일부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씨지오 비데이라 드 멜로(Sergio Vieira de Mello)**가 3대 인권최고대표가 되었다. 2003년 5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인권최고대표직을 4개월간 임시 중단하고 사무총장 특별대표로서 이라크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2003년 8월 19일에 이라크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신임 최고대표가 임명되기 전까지 최고대표 직무인 가이아나의 **버트란드 램차란(Bertrand Ramcharan)**이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이끌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캐나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바 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구 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장을 지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수장을 맡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장으로 있던 당시, 그녀는 전 유고-세르비아 대통령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Slobodan Milosevic)를 전범 및 코소보에서 자행된 만행과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하였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의 기소는 현 국가 수반이 최초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유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유엔은 “인권 통합” 즉, 인권이 유엔 제도의 모든 기관에서 - 다방면 교차 주제 (cross-cutting theme)로서 - 고려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유엔의 주된 인권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외에도 인권 증진 및 보호 활동을 개발하는 유엔의 전문기구, 프로그램, 기금 및 기타 기구들의 수가 점증하고 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1993년)와 이후의 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서는 해당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유엔에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를 선거지원 제공, 훈련, 교육, 대중 참여 및 활발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인권의식의 고취를 지지할 수 있는 국내법 개혁과 함께 인권 옹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및 관련 기구의 설치 또는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7년에 시작된 유엔 사무총장의 개혁 프로그램에서는 인권을 유엔 제도 전체의 업무에 통합시키고, 비엔나 청사진을 이행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들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여러 유엔 기구 및 프로그램의 인권 정책 및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의 강화: 더 많은 변화를 위한 의제(Strengthening of the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further change)(A/57/387)”란 제목의 200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발간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였다. 이 두 번째 개혁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는 “유엔 헌장의 비전인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목표는 유엔의 인도주의 및 개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 및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 인권 증진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50항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유엔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제25항과 26항에서 회원국들은 소수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의 원칙과 관행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권의 지속적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는 일이다. 따라서, 각 국에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하여 국내 보호제도를 수립, 강화하는 것이 유엔의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분쟁에서 이제 막 벗어난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 유엔 총회와 그 상설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유엔의 최고 입법기구인 총회(General Assembly)는 수많은 인권 협약, 선언, 원칙, 규칙 및 기타 문서들이 채택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매 회기에서 특히,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제3위원회(Third Committee)에서 여러 국가의 인권 현황을 논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의를 채택한다.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유엔대학(UNU),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제7장 참조)와 같은 유엔 프로그램, 기금 및 기관의 상당수는 인권분야에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인권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고 미이행 회원국

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로서 최근 몇 년간 인권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 인권은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사업의 필수 요소이며 분쟁 이후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해당 국가들이 법치를 강화하고, 독립적 사법부를 구축하며, 법집행을 지원하고, 교정 행정을 조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기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인권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점점 더 많은 경우에 대해 중대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유엔 헌장 제7장에 의해 경제적 제재 및 기타 제재를 가하고, 군병력을 승인하며 특별 국제사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 왔다(제10장 참조).

◆ 인권과 “유엔 패밀리”(Family)

비공식적으로 “유엔 패밀리”이라고 불리는 유엔 시스템은 유엔과 전문기구들로 구성된다. 전문기구는 유엔 헌장 제63조에 의해 경제사회이사회에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유엔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로서 그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인권통합” 정책은 전문기구들에도 적용되며, 이 전문기구들의 상당수는 특정 인권과 관련하여 활동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유엔 기구들

전문기구

- 국제노동기구(ILO)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프로그램 및 기금

- 유엔 아동기금(UNICEF)
- 유엔 개발계획(UNDP)
- 유엔 여성개발기금(UNIFEM)
- 유엔 인간정주계획(UN-HABITAT)
-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 세계식량계획(WFP)

연구 및 훈련기관

- 유엔 훈련연구원(UNITAR)
- 유엔 국제여성향상진보연구훈련원(INSTRAW)
-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

안전보장이사회 설치 기구

-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기타 유엔 조직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 유엔대학(UNU)

국가와 의회에 대한 기술지원

인권분야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지원

‘유엔 인권분야 기술협력 프로그램(UN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는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국가가 인권 전반의 준수와 법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가 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요소들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과 정책에 통합시키고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수립하거나 강화하며,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문화를 증진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지원은 전문가 자문서비스, 훈련 과정, 워크숍/세미나, 공동 연구, 교부금, 정보 및 문서의 제공, 국내 인권수요의 평가 등의 형태를 띤다.

유엔은 기술협력이 인권 프로그램에 의한 감시와 조사를 보완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그러한 감시와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라고 본다. 사무총장의 관련 보고서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서 강조되었듯이 자문 및 기술지원의 제공이 한 국가의 정부가 자국 영토내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를 덜어 주지는 않으며, 적절한 유엔 절차에 의한 감시를 면제시켜주지도 않는다.

국제의회연맹(IPU)의 기술지원

국제의회연맹은 의회 활동의 전반 특히, 의회의 역할,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국제의회연맹의 지원 프로그램은 의회 직원들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자원 및 장비를 제공하며, 의원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특히 인권과 성별(gender)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의회연맹은 유엔개발계획(UNDP),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제의회연맹의 기술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제의회연맹 사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동등하고 공평한 처우, 건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와 같은 경제적 권리, 파업참가 및 단체교섭 실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노동조합권, 강제노동,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및 고용 및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와 같은 기타 관련된 규정들을 다루는 주요 기구다. 1919년에 창설되어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다소 동등한 입장에 있는 “3자 구성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ILO는 경제적 권리와 기타 인권의 보호를 위한 여러 기본적인 국제조약, 권고 및 절차를 개발하였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문화적 권리(특히 교육권) 분야의 주요 기구로서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문서와 절차를 개발하였다. 또한, 1995년~2004년의 유엔 인권교육10개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의 이행과 인권 및 평화의 보편적 문화 촉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주요 기구로서 특히, HIV/AIDS에 관한 성공적인 전 지구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가장 규모가 큰 유엔 전문기구로서 빈곤 퇴치를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식량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 중요한 활동 주체다. 이 대규모 개발 목표는 2000년 9월에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약 150명의 국가 및 행정 수반이 합의하였다.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유엔 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 제도와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유엔 조약에 근거한 제도 외에 아프리카, 미주,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인권 의무를 설정하여 국제 감시를 수용하여 왔다. 아직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이러한 지역 인권조약 및 감시 메커니즘이 채택되지 않았다.

◆ 아프리카

1981년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이후에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으로 바뀜)의 회원국들은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을 채택하였으며, 이 헌장은 1986년 10월에 발효되었다. 이 헌장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 아프리카연합(AU) 53개 회원국 모두에서 비준되었다. 그 명칭에 함축되어 있듯이 이 지역 조약은 여러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외에도 평등, 자결, 자국의 부와 천연자원에 대한 재량권, 발전, 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환경” 등에 대한 국민의 집단적 권리도 명시하고 있다. 소위 “제3세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대권(solidarity rights)이 상당한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구속력 있는 조약에서 이러한 권리의 법적 의미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제2장 참조). 아프리카인권헌장 외에 아프리카연합은 난민 보호와 아동권 분야에서 조약을 채택하였다.

아프리카인권헌장은 감비아 반줄(Banjul)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진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진정(complaint 또는 communication)은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국가는 국가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NGO, 가족, 일족, 공동체 또는 기타 집단과 같은 집합체도 가능하다)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단독 진정(isolated complaints)은 심리하지 않으며, 심각하거나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진정만을 심리한다. 이러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는 아프리카통일기구(AU)의 최고 정치기구인 ‘국가수반회의(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층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절차 외에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절차에 의해 국가보고서를 검토한다.

1998년에 채택된 아프리카헌장 부속의정서는 아프리카인권법원(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25일에 발효되었다.

➤ Box 30

지역 인권조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1950-1953)과 부속의정서
- 유럽사회헌장(1961-1965), 부속의정서, 개정 유럽사회헌장(1996-1999)
-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협약(1977-1983)
- 고문과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의 금지를 위한 유럽협약(1987-1989)
- 지역 또는 소수민족 언어를 위한 유럽헌장(1992-1998)
-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1995-1998)
- 아동권 행사에 관한 유럽협약(1996-2000)
-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1997-1999)
- 유럽국적협약(1997-2000)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인권협약(1969-1978)과 부속의정서

고문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협약(1985-1987)

여성폭력 방지,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협약(1994-1995)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1994-1996)

미성년자의 국제인신매매 관한 미주협약(1994-1997)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미주협약(1999-2001)

아프리카연합(구 아프리카통일기구)

아프리카인권헌장(1981-1986)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부분에 관한 협약(1969-1974)

아프리카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협약(1990-1999)

◆ 미주

인권 보호를 위한 미주시스템은 두 가지 독특한 절차로 구성되는 데 하나는 미주기구(OAS) 헌장을, 다른 하나는 산호세 협약(Pact of San José, Costa Rica)이라고도 불리는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바탕으로 한다. 헌장 기반 절차는 모든 미주기구(OAS)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반면, 미주인권협약은 당사국에 한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미주인권협약은 1969년에 채택되어 1978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다루고 있는 부속의정서(1988-1999)로 보완되고 있다. 더 나아가 미주기구(OAS)는 강제실종, 고문, 여성폭력, 미성년자 국제 매매, 장애인 차별에 관한 특별 조약을 채택하였다.

미주인권협약은 워싱턴에 위치한 준사법적 감시기구인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IACHR))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위치한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국가간 및 개별 진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OAS 회원국 35개국 중에서 25개국만이 미주인권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10개국에 대해서는 미주인권위원회의 상대적

으로 약한 헌장에 근거한 시스템만이 적용된다. 심지어 협약 당사국인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주법원의 관할권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이 시스템에 의해 제출되는 수천 건의 진정 대부분이 미주인권위원회에 의해서만 처리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진정건에 대해 채택 불가를 선언하거나, 타협에 의한 해결을 지원하거나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론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권고는 실제로 해당 정부에 의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진정인은 사건을 미주인권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고, 해당 국가와 미주인권위원회만이 그러한 권리가 있다. 위원회가 최근에 개정된 절차 규칙에 의거하여 점점 더 많은 수의 사건들을 법원에 상정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단지 50건의 개별 청원만이 미주인권법원의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로 이어졌다. 이 사건들은 일부 남미와 중미 국가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고문, 자의적 처형, 강제실종 포함)가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 외에 다양한 배상 조치를 부여하였다.

미주인권법원은 “쟁송 관할권(contentious jurisdiction)”(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 외에도 국제인권조약(특히, 미주인권협약)을 해석하고 국내법이 이 조약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아랍지역

1994년 9월 15일 아랍연맹(Arab League) 회원국들은 ‘아랍인권헌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을 채택하였지만, 회원국 22개국 중에서 이 헌장에 서명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2003년 3월 아랍연맹이사회(Arab League Council)는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맞추어 헌장을 재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랍연맹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4월에 아랍연맹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아랍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초안은 현장 재작업 과정에서 아랍연맹의 인권상임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이 초안은 2004년 5월에 아랍국가연맹 정상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채택되었다. 상당수의 아랍국가들에서 이 현장의 비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행 현장의 일부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항들은 비상사태, 공정한 재판의 보장, 노예제, 성폭력, 장애, 인신매매 등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이전의 조항들에 비해 훨씬 진전된 것이다. 또한, 이 현장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유사한 감시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 현장의 채택으로 인해 지역 인권 보호 및 증진 메커니즘이 또 하나 추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설된 제도는 개별 진정절차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52조에서 선택의정서 채택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인권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일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워크숍 특히, 1998년 테헤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협력의 기본틀이 마련되었으며, 정부간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지역적 장치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원칙들과 “단계별”, “벽돌쌓기(building-block)” 접근법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지역 장치는 지역의 정부들이 규명한 수요와 우선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역할, 기능, 업무, 예상 목표 및 성과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 유럽

유럽평의회는 일차적 목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있다. 1949년에 설립된 직후 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작성

하기 시작했으며, 이 협약은 1950년에 서명되어 1953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과 이 협약의 부속의정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중점을 둔 일반적 인권 조약에 해당한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는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1961-65)과 그 부속의정서 및 개정 조항(개정 유럽사회헌장, 1966-99)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유럽이사회는 정보(data)보호, 이주노동자, 소수집단, 고문방지, 생의학의 분야에서 특별 조약을 채택하였다.

오늘날 유럽협약은 초국적 차원에서 가장 진보된 인권 감시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협약 제34조에 의하면, 현재 유럽이사회의 46개 회원국에 속하는 국가가 저지른 동 협약 및 그 부속의정서에 의한 인권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NGO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일단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가능성을 시도한 후라면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피해당사자에게 배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은 당사국에 대해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당사국의 이행은 유럽이사회의 최고 정치 기구인 각료이사회(Committee of Ministers)에 의해 감시된다.

1998년 발효된 유럽사회헌장 의정서에 의하면, 일부 단체들은 유럽 사회권위원회(European Committee on Social Rights)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진정이 채택가능하다고 선언되면, 절차가 개시되며 본안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으로 이어진다. 이 판정은 당사자들과 각료위원회에 보고서로 전달되며, 이 내용은 4개월 내에 공개된다. 끝으로, 각료이사회는 결의를 채택하여, 상황이 헌장에 부합되도록 구체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10 장

제10장 : 불처벌(impunity) 저지 노력 - 국제형사재판소(ICC)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극악한 일련의 범죄들 - 전쟁 범죄, 집단살해, 체계적 고문 관행, 사법외적 처형, 강제실종을 포함하는 반인도적 범죄 등 - 이 20세기에 국제적 전쟁과 지역 분쟁에서 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가져다 준 범죄”¹⁰⁾ - 를 저지른 자들의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처벌을 끝내려는 최초의 노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연합국이 뉘른베르크(Nuremberg)와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하던 당시에 이루어졌다. 이 군사재판소는 주요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에서 설치되었으며, 따라서 국제인도주의법, 무력분쟁법의 적용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 이후로 초점이 점차 이동하여, 오늘날에는 국제형사법이 (무력분쟁중에만 자행되는) 전쟁범죄와 함께(전시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자행되는) 주요 “인권 범죄” 즉,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도 다루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제6조에 의해 일찍이 1948년에 구상된 바 있으나, 최초의 형사재판소는 1993년에 이르러서야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전적으로 구 유고슬라비아와 관련하여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비로소 설치되었다.

10)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의 전문

◆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7호(1993년)에 의하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의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무력분쟁 중에 저질러진 행위에 한정된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55호(1994년)에 의해 1년 후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가 설치되어 르완다 집단살해 및 그와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의 주요 가해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무력분쟁에 한정하는 제한은 두지 않았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권한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무력분쟁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1998년 7월 17일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에 의거하여 수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뿐만 아니라 집단살해와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를 무력분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다루고 있다. 로마규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그에 더하여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가 개별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불처벌(그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 저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차원의 인권 보호에 있어 가장 의미 있고 혁신적인 발전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19세기 넘은 기간 동안 여러 세대가 점진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법적, 도덕적 기준 체제를 공들여 쌓아 왔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인권과 국제인도주의법의 극악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 그들이 누구든 함께 -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상설 국제기구다. 우리는 마침내 정교한 문구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쾨지오 비에리라 드 멜로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2003년 3월 11일, ICC 출범사

> Box 3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1998년 7월 17일 찬성 120개국, 반대 7개국(중국,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카타르, 미국, 예멘), 기권 21개국의 투표결과로 채택
- 139개국 서명
- 99개국 비준 (2005년 6월 현재)

주요 일자

- 발효: 2002년 7월 1일
- 당사국 회의(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ICC 재판관 18명 선출: 2003년 2월
- 당사국 회의에서 ICC 검찰관(Prosecutor)에 루이 모레노 오캄포(Loui Moreno Ocampo) 선출: 2003년 4월 21일

> Box 32

국제형사재판소의 개념과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는 왜 설립되었는가?

- 불처벌을 종식하고,
- 분쟁 종식을 지원하며,
- 잠재적 가해자를 억제하고,

- 국내 형사사법기구가 행동을 취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임무를 대신 하고 (구 유고 및 르완다에 대해 설치된 재판소와 같은) 특별 재판소의 결함을 보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로마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 제5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이 되는 범죄는 집단살해,¹¹⁾ 반인도적 범죄¹²⁾와 전쟁범죄다.
- 제25조: 모든 사람(자연인)은 자신이 - 개인으로서,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하거나, 교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유도하거나, 지원하거나, 선동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내에 있는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1조: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 발효일(2002년 7월 1일) 이후로 당사국 영토내에서 또는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해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서만 관할권을 지닌다.

누가 사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 당사국 (제14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13조 (b)항)
- 국제형사재판소 검사(Prosecutor) - 국가, NGO, 피해자 또는 기타로부터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해

국제형사재판소와 기타 법원의 관계

- 국제형사재판소와 국내법원: 국내법원은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니며, “상보성(complementarity)” 원칙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국내법원이 기소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행동할 수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개인에 의한 범죄 행위는 다루지 않으며, 국가간 분쟁만을 다룬다.
- 국제형사재판소와 특별 국제재판소(ICTY, ICTR): 특별 재판소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반면(“선택적 정의, selective justice”),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상설 법원은 그러한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운용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합의

로마규정 제48조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자체의 목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특권과 면책권을 지닌다.” 로마규정의 채택과

동시에 체결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책권에 관한 합의에 따라, 특히 조사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국제형사재판소 직원, 변호인, 피해자, 증인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보증이 제공된다. 비준한 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직원들의 특권과 면책권, 국제형사재판소 문서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04년 10월 20일 현재, 이 합의에 비준한 국가의 수는 16개국에 불과하다.

➤ Box 33

국제형사재판소의 해결 과제

- 로마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당사국들과 상호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비준하지 않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영토에 기소된 범죄자들이 존재한다.
- 평화시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협의의 정의
-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상보성 원칙의 약점: 국내법원이 기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ICC 로마규정에 의한 국가의 의무

국가는 로마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의무의 이행에 있어 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¹³⁾

- 11) 집단살해는 “한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로 저질러진 행위”를 가리킨다(로마규정 제6조).
- 12) 반인도적 범죄란 “민간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자행된” 범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살해, 몰살(extermiation), 노예화, 추방, 인구의 강제이동, 감금, 고문, 강간, 성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입신, 강제피임, 기타 형태의 성폭력,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집단 또는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 강제실종, 인종격리(아파르트헤이트), 그 밖에 신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고통 또는 심각한 손상을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비인간적 행위가 포함된다(로마규정 제7조).

1. *국제형사재판소의 상보적 성격으로 인한 의무*: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행동을 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한 범죄의 책임이 있는 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일차적 의무는 국가가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범죄가 - 어디에서 발생하였으며 누가 누구에게 저질렀는가와 상관없이 - 국내법에 의해서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제정, 집행하여야 한다.
2. *적극 협력하여야 할 의무*: 로마규정 제86조에 따라, 당사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위해 ICC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과 변호인측이 관할권내에서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국내 법원과 기타 당국이 문서 확보, 조사 실시, 증인 확보 및 보호,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된 자의 체포와 인도에 있어 적극 협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형량 집행, 로마규정 이행에 관한 대국민 홍보 전략 및 담당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하여야 한다.
3. *국제형사재판소 특권 및 면책권에 관한 합의에 비준하여야 할 의무*: 이러한 비준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기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효과적인 시행 법규 제정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한 연구를 통해¹⁴⁾ 국제사면위원회는 국내법 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a. 범죄에 대한 협의의 정의
- b. 형사상 책임과 변호에 관한 불충분한 원칙
- c. 국제법이 허용하는 보편적 관할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지 않음
- d. 기소 절차 개시에 대한 정치적 통제
- e.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의 부재

13) Amnest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hecklis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I Index: IOR 40/011/2000)

14) AI Index: IOR 40/019/2004

- f.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 포함
- g. 국제형사재판소가 유죄를 확정된 자가 국내 교도소에서 형량을 마치도록 하는 규정 부재
- h. 로마규정의 효과적 이행에 관하여 국가 당국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부재

◆ 불처벌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원칙

1991년 이후로 유엔은 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를 통해 면책 저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에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마련되어 자유를 상징했던 사면법은 이후에 인권침해 가해자의 면책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는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을 통해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인 루이스 조이네트(Louis Joinet)에게 면책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원칙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루이스 조이네트는 1997년에 소위원회에 보고서와 함께 일련의 원칙을 제출하였다.¹⁵⁾ 이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알아야 할 권리(the right to know)**: 이는 단순히 개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할 권리 즉, 진실에 대한 권리만은 아니다. 위반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력을 알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하다. 이 권리의 결과로서, 국가는 “기억해야 할 의무(duty to remember)”가 있다(조이네트 보고서 제17항)
- **정의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justice)**: 이 권리는 모든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 권리에 의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피해자에게는 배상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15) E/CN.4/Sub.2/1997/20/Rev.1.

- **배상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reparation)**: 이 권리에는 개별적 조치와 일반적인 집단적 조치가 수반된다. 자세한 내용은 1996년에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이 소위원회 요청으로 작성하고, 2000년에 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M. 세리프 바씨오니(M. Cherif Bassiouni)가 보완한 문서인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법 침해 피해자의 배상권의 기본 원칙과 지침(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에 기술되어 있다.¹⁶⁾

➤ Box 34

국제형사재판소에 상정된 사건들: 예시

2003년 12월 우간다 정부는 우간다 북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단체인 ‘Lord’s Resistance Army’에 관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에 상정하였다. 2004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은 이 상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4년 3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에게 로마규정 발효일 이후로 자국에서 자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내 범죄를 상정하였다. 2004년 6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은 이러한 요청과 이전에 NGO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 살해, 약식 처형, 반복적 강간, 고문, 강제실종 및 아동군인의 불법 사용 등의 위반 행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05년 1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에게 로마규정 발효일 이후 자국의 영토 내에서 자행된 범죄 사건을 상정하였다.

2005년 3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에게 ‘국제다르푸르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Darfur)’의 보관된 문서들을 상정하였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은 여러 방면에 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수천건의 문서가 수집되었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검찰관은 조사 착수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6) E/CN.4/Sub.2/1996/17, E/CN.4/2000/62

앞서 기술한 일련의 원칙들이 아직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불처벌의 모든 측면을 제거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유엔 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관련 모범관행 및 권고를 담아 2004년에 작성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¹⁷⁾ 이 원칙들은 이미 불처벌 저지 노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 및 국제 감독기구들과 국가 당국에 의해 주요 참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E/CN.4/2004/88

◆ 기본 원칙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국회와 국회 구성원들은 중요한 주체가 된다. 국회 활동 전반 즉, 입법, 예산 채택, 행정부 감독 등의 활동은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전 영역을 포괄하며, 따라서 국민들의 인권 향유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을 대표하며 국민이 공무 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회는 명실상부한 인권 수호자라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평화, 사회적 화합, 지속적 발전은 인권이 모든 국회 활동에 어느 정도로 스며들어 있는가에 따라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는 이러한 역할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회가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안전장치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회의 대표성 확보

국회의 권위는 상당 부분 모든 사회 구성 요소들의 다양성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회 구성 요소들에는 특히 남녀, 다양한 정치적 견해, 민족 집단, 소수집단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구성원들은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자유권규약(CCPR) 제25조에 열거된 원칙

에 따라 보편, 평등 및 비밀 투표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선택하여야 한다.

국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통한 국회 주권 보장

국회는 그 구성원이 유권자를 대신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 국회 구성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고,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다. 즉, 국회의원으로서 특권 또는 면책권을 지닌다.

➤ Box 35

국회의원의 인권 보호: IPU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IPU 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 국회의원이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자신 스스로가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IPU는 1976년에 국회의원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채택하였다.
- IPU는 ‘국회의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가 회기 중 또는 휴회 중이거나 위험적 또는 예외적 조치로 인해 해산된 경우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런 적이 있는” 의원에 관한 진정을 검토하는 임무를 위임하였다. 이 절차는 모든 국가의 국회의원에게 적용된다.
- 위원회는 5명의 정위원과 5명의 대체위원으로 구성되며, 각자는 5년간 지정학적 지역을 대표하도록 개별적으로 선출된다. 연 4회의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 일단 진정이 채택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국가, 지역 및 국제 인권법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한다. 그 절차는 주로 해당 국가의 국회를 비롯한 관할기관과 진정인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정보를 비교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 제시된 모든 증거는 기밀이 유지된다.
- 또한, 위원회는 해당 국가가 승인하고 일정한 최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심리를 개최하며, 현장 파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개 보고서를 통해 모든 IPU 구성원이 사건에 주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관련 동료들을 위한 행동을 취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종료시키고, IPU 이사회가 해당 당국의 판결을 선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회 면책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자 또는 일반 시민들의 위협, 협박 또는 자의적 조치들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과 품위를 보장하여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 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보장한다. 면책권의 범위는 다양하다. 모든 국회에 적용되는 최저 보장 내용은 면책(non-accountability)이다. 이 특권에 의해 국회의원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선거구민이 반대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재를 받을 위협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선거구민이 원치 않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의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invulnerability)을 지닌다. 즉, 국회의 동의를 있어야만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거나 의원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은 면책권과 같지 않다. 이 특권은 단지 의원에게 제기된 소송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자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또한, 국회의 대표성은 그 국회 구성원의 권리가 존중되는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국제의원협의회(Inter-Parliamentary Council)가
1976년 4월 멕시코시티에서 채택한 ‘국회의원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의 조사와 처리절차를 수립하는 결의문’

법적 기본틀 특히, 국회 절차에 대한 이해

국회의원들이 헌법 및 자국의 인권 의무, 정부와 공공행정의 기능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국회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남아프리카 국회와 같은 일부 국회에는 조선 의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신의 업무 및 의회 절차의 법적 기본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적절한 자원을 제공 받아야 한다.

기술지원은 인권 분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식을 높여줄 수 있으며, 가용 자원의 부적합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제1편 Box 29 참조).

비상시 국회의 역할 결정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가장 첫 번째 희생자는 국회의원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국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거나, 심지어는 국회가 해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회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비상사태로 인해 자의적 조치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 국회는 특정 인권은 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국제인권 원칙에 의거하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해제할 책임이 있다.
- 비상시 국회의 해산 또는 정지는 법으로 금지된다.
- 비상시에 국회는 특별한 권한을 지닌 당국 특히, 법 집행기관들의 활동을 면밀하게 모니터한다.
- 비상사태의 정의는 헌법 또는 헌법적 지위를 지닌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기회주의적 개혁으로부터 보호한다.

◆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조치

인권조약 비준

인권조약의 비준은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에게 국가의 인권 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비준 - 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자국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성과에 대한 면밀한 국제적 조사를 허용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 - 은 비준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인권조약은 행정부의 대표 주로 국가나 정부의 원수 또는 외무부 장관이 서명하고 비준한다. 그러나 조약의 비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준을 승인하는 국회에 주어진다. 비준은 해당 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이 해당 비준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게 하며, 그 국가에게 국내법을 조약 규범에 맞추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국제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 Box 36

조약 협상 및 초안 작성 과정에 국회의 참여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또는 지역별 조약의 초안 작성 또는 관련된 정치적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단지, 1949년에 수립된 지역별 의회체인 유럽이사회의 유럽의회만이 인권 감시 및 신규 문서 작성 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법사·인권위원회는 신규 문서가 작성되거나 주요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료위원회(현재 46개국인 이사회 회원국의 외무부 장관들로 구성됨) 및 인권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가령, 각료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점차 많이 제출되고 있는 청원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의회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IPU는 국회는 궁극적으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그러한 법규의 이행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비준 단계에 훨씬 앞서 개입하여야 하며 정부 대표와 함께 국제심의 기구의 신규문서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이 국제인권문서 협상에 더욱 깊이 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 정부가 (최소한) 7개 인권핵심조약(제1편의 제3, 5장 참조)과 현존하는 지역별 인권조약을 비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위의 조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그러한 문서에 서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한 의향이 없다면, 그러한 부작위의 이유를 규명하고 정부에게 조인 및 비준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 절차를 이용한다.
- 서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부가 해당 조약에 대해 유보조항을 설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 그 유보조항이 필요하며 해당 조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제4장 참조). 유보조항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정부가 입장을 철회하도록 행동을 취한다.
- 국가가 해당 조약에 대해 설정하여 현재 효력을 지니고 있는 유보조항이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유보조항의 철회를 위한 행동을 취한다.
- 정부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선언을 하거나 관련된 선택의정서(제1편의 제5장 참조)를 비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a) (CCPR, CEDAW, CERD, CAT, 이주노동자협약에 의한) 조약기구의 개별 진정 접수 권한을 인정
 - (b) 조약감시기구(CAT, CEDAW)의 조사 절차 개시 권한을 인정
 - (c) CAT 선택의정서(구금시설에 대한 정기 방문 제도를 명시하고 있음) 비준
-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선언을 하거나 해당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 공직자, 국가 대리인 및 일반 국민이 비준한 인권조약과 그 조항들을 인지하도록 한다.
- 국가가 ICC 규정을 조인, 비준하지 않은 경우, 조인 및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국가가 ICC 규정의 효력을 절감시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를 저해하는 어떠한 협약도 체결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한다.

ICC 규정의 완전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 조치

미국 국민을 국제사법재판소(ICC)의 관할권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미국정부가 제안한 양자간 협약 체결에 대해 여러 국가(가령, 우루과이, 스위스)의 국회는 자국 정부에게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ICC 규정으로부터의 일탈(逸脫)을 함축하는 어떠한 협약도 체결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다른 국회들은 그러한 양자간 협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국제의원회의회는 “자국이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각적으로 비준 또는 가입이 이루어지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조항은 철회되도록 국내적 차원에서 행동을 취할 것을 모든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1997년 9월 카이로에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된 결의문 제3항 (i)

국가 이행의 보장

예산 편성

모두가 인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인권보호 특히,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들을 수립,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금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우선과제를 수립함에 있어 국회는 인권 이행에 충분한 자금이 편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정부 지출을 감시함에 있어, 의회는 필요하다면 인권 분야에서 미비한 성과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부 감독

국회와 국회의원은 감독 기능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및 행위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정부와 기타 관련 기구들에 의해 법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국회 절차에 의해 정부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다음에 포함된다.

- 각료, 공무원 및 기타 행정부 관료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질문
- 대정부 질문(interpellation)
- 진상조사,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
- 위와 같은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불신임 투표

권고 및 결정의 후속조치

유엔 조약감시기구 및 특별보고관과 기타 국제적 또는 지역별 감시기구(제1편의 제5, 6, 9장 참조)에 의해 작성된 권고는 행정부가 자국의 인권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0차 국제의회연맹 회의는 “국가 정부가 인권조약기구에 대한 보고 책무를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완수하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이 특별보고관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국회가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1998년 9월 모스크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21세기에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결의문 제4항 (ii)

지역 조약기구의 권고 이행: 예시

의회 특히, 산하 인권위원회는 국제 또는 지역 인권기구의 결정이나 권고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브라질 하원의 인권위원회는 브라질에 대해 제기된 사건(1985년 브라질 파라(Pará)주 리오 마리아의 노동조합위원장인 호아오 카누토(João Canuto)가 암살된 사건)에서 미주인권위원회가 내린 1차 결정의 이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8년 미주인권위원회는 브라질이 카누토 위원장이 자신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았고 그의 암살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사 및 사법적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주인권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미주인권위원회는 브라질에게 형사상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다. 1999년 브라질 하원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 내용과 그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당국의 인식 고취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미주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되었다.

국회 내 인권기구 설치

인권은 국회 활동에 전반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각 국회 위원회는 자체 역량 분야 내에서 일관되게 인권을 고려하고 법안과 기타 제안된 법규범이 국민의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인권이 국회 업무에서 적절하게 감안되도록 하기 위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회가 전문 인권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에 인권 현안을 고려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 또는 소수집단 권리와 같은 특정 인권 현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 국회도 많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들이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국회 내 인권기구들에게는 법안 또는 법률의 인권의무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무가 주어진다. 일부 경우에는 그러한 기구들에게 개별 청원을 받는 접수 받는 역할이 부여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국회는 정기적으로 조약감시기구의 업무를 따르고 이에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다음을 희망할 수 있다.

- 자국 정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국가, 유엔 조약기구 및 기타 국제 또는 지역 감시 메커니즘(제1편의 제5, 6, 9장 참조) 간에 협력 상황을 확인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가 조약기구 및 관련 메커니즘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국회 지원 서비스에 의해 관련 정보가 국회에 정기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 권고, 최종 견해, 그리고 자국에 관하여 조약기구가 작성한 기타 제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 유엔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권고 특히, 적용되는 경우 자국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권고를 연구한다.
- 이러한 권고의 이행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를 규명하고 추후 조치를 개시하기 위해 국회 절차를 이용한다.
-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특별보고관이 자국의 국회나 관련 국회 위원회를 방문하고 국회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국 방문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이 특별보고관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한다.
-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하여 학교, 병원, 교도소 및 기타 구금시설, 경찰서 및 사기업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자국이 인권조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이 보장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

- 자국의 보고 일정에 대해 문의하고 정부가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요구되는 국가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출되게 한다.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 국회의원은

해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국 정부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절차를 활용한다.

-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위해, 다음이 보장되도록 한다.

- 국회는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국가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고 정보 자료를 제공하며, 국회의 조치가 보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다.
- 보고서는 보고 절차 지침(제1편, 제5장 참조)에 부합하고, 이전 보고서에 대한 조약기구의 일반권고 및 최종견해를 감안하며, 관련 교훈이 언급되어 있다.
- 관련 조약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국의 유엔 상주대표부(해당 조약기구의 회의 개최지에 따라 뉴욕 또는 제네바에 위치)가 조약기구의 업무를 맡도록 권고하고, 그 보고서는 국회에 전송되도록 한다.

수권법률(enabling legislation)의 채택

국제법상 의무가 국내 차원에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각 조약은 사문화 되고 만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어느 분야(민사, 형사, 행정 또는 노동법, 교육, 의료 또는 사회보장법)에서든지 필요한 시행 법규를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조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헌법은 개인이 국내 법원에서 조약 조항을 직접 발동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접근 방식이 있다.

- (a) 자동 편입(automatic incorporation) 제도 :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과 동시에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의 일부가 되며, 따라서 개인이 그 조약의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조약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개인이

국내 법원에서 그 조항을 발동할 수 있으려면 해당 조약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내 시행법규를 채택하여야 한다.

- (b) 이원화 제도 : 실제 입법을 통해서만 조약이 국내 법제의 일부가 된다. 이 제도에서는 개인이 국내법에 포함되지 않은 조약 조항은 발동할 수 없다. 조약은 그에 상반되는 국내법에 대해 우위를 갖지 못한다.

민법 국가에서는 인권이 헌법에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헌법은 규범을 정하고 모든 기타 국내법규에 대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어 기타 국내법규가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Box 39

국회 인권위원회의 이상적 권한

국회 인권위원회가 충분히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이 충족되어야 한다.

- 입법 및 감독 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권 권한을 지닌다.
-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인권 현안을 처리할 수 있고 인권분야의 법률적 안전 및 기타 안전을 주창할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해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 문제 및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다른 국회기구들에게 인권 현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관련자 출석과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국회의원은,

- 국제인권 조항이 국내법에 편입되고, 가능하면 헌법적 지위가 주어져 그러한 조항이 국내법에 의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 국회와 소속 국회 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자국의 인권의무에 부합하도록 하며, 현행법이 그러한 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행법을 검토한다.
- 이를 위해, 조약기구의 업무, 조약기구 및 기타 국제 또는 지역 감시 메커니즘(제1편의 제5, 6, 9장 참조)이 작성하는 권고, 국내 또는 국제 인권 NGO와 국가인권기구들의 업무 내용을 숙지한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 또는 신설 법안이 제정되거나 자국의 헌법재판소 또는 유사 사법기구에 청원이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시정 조치를 취한다.
- 현행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 법령이 국내법의 정신과 그 법령이 명시하고자 하는 인권 보장 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 공직자, 특히 법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인권법에 의한 자신의 직무를 인식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한다.
-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권교육이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 헌법과 국제법에 의한 인권의무는 공개적, 건설적, 혁신적, 사전적 방식으로 이행되도록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사법심사가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회의 조치

상당수의 국가에서 개인은 법원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국회는 그러한 권리에 관한 개별 진정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의적 해고, 차별적 채용관행 또는 불안정한 노동조건 등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노동법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된 차이점은 사회권규약(CESCR) 제 6조와 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동권과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률이 매우 드물며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이행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재판관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는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하는 법률을 두고 있으므로, 자의적 또는 차별적 이유로 자녀의 학교 교육이 거부되고 있는 부모들은 국내 행정 및 사법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와 구제책을 교육에 대한 인권과 연관시킴으로써 이 권리의 사법심사가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제의원협의회는 “모든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수권법률이 제정되고 국내법규의 조항들이 그 조항들의 완전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국제) 조약에 포함된 규범과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국내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997년 9월 카이로에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된 결의 제3항(ii)

입법 과정과 국제인권기준: 예시

핀란드의 입법 과정 - 특히, 국회 내 헌법위원회의 업무 - 은 법안 작성 및 면밀한 검토에 있어 국제기준(조약기구가 작성한 내용 포함)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국제기준 사용을 위한 기반은 핀란드 헌법(2000년) 제22조와 7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22조는 “공공 당국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 및 (국제) 인권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으며, 제74조는 “국회의 헌법위원회는 법안과 국제인권조약의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법안의 합헌성과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헌법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은 제출된 법안이 헌법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와 기타 기관에 관련 견해를 제시하는 일이다. 위원회는 외부 학계 전문가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핀란드 입법과정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조약기구 작성 문서 - 특히, 인권위원회 작성 문서 - 의 유형으로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정과 일반논평이 주를 이루지만, 최종견해, 보고지침 및 기타 자료도 포함된다. 핀란드가 이용하는 국가별 자료에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일부 경우에는, 조약기구 문서에 대한 참조가 이행해야 할 국제적 또는 헌법상 법적 의무로부터 직접 유래한다. 이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권조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헌법상 요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¹⁸⁾

18)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Fin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n the impact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findings on the work of 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71st Biennial ILA Conference, berlin, August 2004, pp.36-38.

파리원칙

1993년 유엔 총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적용할 수 있는 일련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최저핵심기준을 수립하는 기준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국가인권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독립적 지위는 제정법 또는 헌법 조항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역할과 조직 구성원에 있어 다원적이어야 한다.
- 최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지녀야 한다.
- 적절한 조사 권한을 지녀야 한다.
- 정규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 적절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국가인권기구(NHRI)

지난 20년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이행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인 조치를 국내적 차원에서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국가인권기구(NHRI) 설립을 들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라는 용어는 법적 지위, 구성, 체계, 기능 및 권한이 다양한 여러 기구들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 사법기구와 마찬가지로 -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에 의해 설치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NHRI는 때로 인권위원회로 불리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역량 및 권한을 지녀야 한다.

- 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정부 또는 국회에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내법과 관행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촉진한다.
-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개별 또는 집단 진정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국제인권기준의 비준과 이행을 촉진하며, 국제인권조약에 의한 보고 절차에 기여한다.
-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고취하며, 인권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 유엔, 지역기구, 다른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 및 NGO와 협력한다.

➤ Box 43

국가인권기구(NHRI)가 설립 되어 있는 국가들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인증한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하는 국가들

- 아시아·태평양: 호주,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대한민국, 스리랑카, 태국
- 아프리카: 알제리, 카메룬, 가나, 말라위, 모리셔스, 모로코,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 토고, 우간다
- 미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 유럽: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기타

- 아시아·태평양: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아프리카: 베냉, 부르키나파소, 차드,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탄자니아연합공화국, 잠비아
- 미주: 안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연합,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NHRI와 국회의 관계는 국가 차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 이에 대한 논의는 2004년 3월 22일~25일에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개최된 ‘국가인권기구와 입법부: 효과적 관계 수립’이라는 제하의 국제 워크숍에서 진행된 바 있다.¹⁹⁾

‘아부자 가이드라인(Abuja Guidelines)’으로 알려져 있는 NHRI와 국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이 이 워크숍 기간 동안에 작성되었다.

➤ Box 44

‘아부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고

- 국회는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NHRI가 설립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회와 NHRI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업무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 국회는 NHRI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원과 시설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NHRI가 실제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NHRI 연례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는 국회에서 즉각 논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국회에 즉각 제출되어야 한다.
- 초당적인 국회 위원회를 구성하여 NHRI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맡을 수도 있다.
- NHRI의 구성원들을 정기적으로 적절한 국회 위원회에 초청하여 NHRI의 연례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19) 이 워크숍은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지리아 하원의 인권위원회, 나이지리아 법률자원컨소시엄, 영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영국 외무부(United Kingdom's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가 후원하였다.

- 국회의원은 NHRI 구성원들에게 요청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가져야 한다.
- 국회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NHRI의 업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자신의 선거구민들이 NHRI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NHRI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제안에 대해 NHRI 구성원들의 견해를 구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들은 NHRI의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옴부즈맨 사무소

옴부즈맨 사무소는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는 국가기관이다. 옴부즈맨 사무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옴부즈맨의 역할은 대체로 좀 더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에서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맨은 국회에 보고한다. 명확한 인권 임무를 가진 옴부즈맨만이 국가인권기구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s)

지구상에서 완벽한 인권 성적(record)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게다가 모든 국가는 자국 특유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법률적 상황에 비추어 인권정책을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접근법은 없다. 따라서 1993년에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국가들에게 자국의 상황에 맞는 인권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작성하도록 촉구하였다. 국가행동계획의 채택은 당파적인 정치적 고려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진정으로 범국가적인 노력이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의 성공여부는 국

민이 그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기능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인권 개선은 유형의 공공정책 목표로 표현되며, 이러한 목표는 세부적 프로그램의 실행, 정부와 사회의 모든 관련 부문의 참여, 충분한 자원의 배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국가행동계획은 한 국가의 인권 수요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은 정부 관료, NGO, 전문가 집단, 교육가와 옹호자,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인권 증진 및 보호 업무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취약 계층의 인권 상황에 중점을 두어 인권문서 기준을 촉진하고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국가인권행동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개발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OHCHR의 전문 훈련 시리즈 10권(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10)인 ‘국가인권행동계획 핸드북(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 책자는 OHCH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http://www.ohchr.org/english/about/publications/training.htm>).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는 상당한 조직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 계획의 실효성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
- 투명하고 참여적인 기획
- 인권 상황에 대한 총체적 평가
-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 우선순위 결정과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 접근법
- 감시 및 평가를 위한 명확한 성과 기준과 강력한 참여적 메커니즘
- 적절한 자원 확보

국가인권행동계획 수립: 예시

리투아니아에서는 국회, 국회 인권위원회,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국가인권행동계획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로 참여 과정을 통해 최우선 현안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이 리투아니아의 인권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초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전국 회의 및 지역 워크숍에서 입증하였다. 끝으로, 기초조사와 폭넓은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여러 국회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2년 11월 7일에 국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 과정에 대한 이후의 분석 결과 국회 인권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인권행동계획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인권증진과 보호 및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국회 내외 인권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국회 내에 인권 전문위원회의 수립을 추진한다.
-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자국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아부자 가이드라인(Box 42, Box 44 참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국가인권행동계획의 개발을 제안하고,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그 계획의 준비, 작성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한다.

여론 활성화(mobilizing)

국회는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여론을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 논의는 종종 다양한 집단에 대한 차별, 남녀평등, 소수집단의 권리 또는 사회적 이슈들과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인권 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대국민 성명이 해당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항상 민감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국에서 일반적인 인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NGO를 포함하여 인권 활동에 관여하는 기타 국내 주체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민간 협회, 인권 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는 여러 국가에서 인권 분야의 정부 정책과 관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에게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출처가 된다.”

1993년 5월 부라페스트에서 열린
IPU 심포지엄 “국회: 인권의 수호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인권 현안, 특히 공공 논의의 중심이 되는 인권 현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독려한다.
- 국회의원 자신의 소속 정당 내에서 인권 현안과 인권분야에서 자국이 지니는 국제적 의무에 대한 논의를 독려한다.
-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 또는 국가적 캠페인을 조직한다.
- TV나 라디오 또는 회의를 통한 논의에 참여하거나 인권 현안에 관한 인터뷰에 응한다.
- 신문, 잡지에 인권 현안에 관한 기사를 쓴다.
-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한 경우, 인권 현안에 관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NGO와 기타 국가인권주체 및 정당들과 연계한다.
- 자신의 선거구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회의 및 기타 행사를 조직하거나 그러한 행사에 기여한다.

□ 지역의 인권 캠페인을 지원한다.

□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통해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인다.

국제적 노력 참여

국회와 국회의원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권 존중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며, 국제법에 의해 인권조약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법적 이권을 지닌다. 일부 핵심인권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간 진정 절차에 따라(제5장 참조), 국가는 다른 국가의 조약 위반 행위에 이목을 집중하게 할 수 있다. 국회는 자체 인권기구를 통해 그러한 위반 가능성을 포함하는 인권 현안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권 규범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제인권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그러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나중에 비준하게 될 신규 국제인권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국가 정치에 큰 영향력을 지니며 국가의 의사 결정 범위를 제한한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적 결정이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인권의 행사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에 의해 자국의 국경 밖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이 인권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들을 “민주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회와 국회의원은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관의 심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무역협정, 인권, 그리고 국가의 의무

유엔 인권위원회의 요청으로 OHCHR은 인권과 무역 특히, TRIPS 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WTO 협정(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²⁰⁾, ‘WTO 농업협정(WTO Agreement on Agriculture)’²¹⁾, GATS로 알려져 있는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²²⁾의 인권적 의미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들은 모든 WTO 회원국이 최소한 1건의 인권 문서를 비준하였고, 대부분은 CESCER을 비준하였으며, 한 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CRC를 비준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WTO 회원국들은 무역 자유화에 관한 국제적 규칙이 그러한 조약에 따른 자국의 인권 의무에 배치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법과 정책은 “경제적 성장, 시장 또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보건제도, 교육, 수자원, 식량 안보, 노동, 정치적 프로세스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는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유발되는 자율성 상실로 인해 “국가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자국의 역량이 지나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법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무역 정책과 법이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잠정적, 실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인권 향유를 저해하는 퇴보적 조치의 시행을 막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²³⁾

이러한 맥락에서 IPU는 국회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구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과정에 착수하였다.

제17차 국제의원회의는 “국회에게 다자간 기구, 특히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과 그러한 기구들이 전개하는 활동을 감시하고, 무역 및 재정 관련 다자간 기구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다자간 기구들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적인

20) E/CN.4/Sub.2/2001/13.

21) E/CN.4/2002/54.

22) E/CN.4/Sub.2/2002/9.

23) E/CN.4/Sub.2/2002/9, paragraphs 7, 9 and 12.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3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화, 다자간 기구 및 국제무역협정의 시대에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결의, 제9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들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a) 경험, 성공 사례 및 교훈을 공유하고, (b) 특히, 국경간(cross-border)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다.
- 국회가 (해당 위원회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자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적절한 경우, 정부의 입장에 관하여 정부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 국회가 새로운 인권 조약에 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러한 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 국회가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다른 국가의 인권조약 위반 행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적절한 경우, 자국 정부에게 국가간 진정을 제기하도록 촉구한다(제1편, 제5장 참조).
- 선거 참관인 파견 및 기타 국제인권 파견 임무에 참여한다.
- 국가의 인권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국의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국회가 확보하도록 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에게 그러한 이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할 계획인지를 묻는다.

제 12 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 생명권

UDHR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CCPR 제6조 (1)항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전쟁 또는 비상시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문 또는 노예제의 금지와는 달리,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국제인도주의법이 의미하는 “합법적 전쟁 행위”로 인해 전투원이 사망한 경우는 생명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집행 요원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 자기 방어 또는 제3자 방어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력 사용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사람의 도주를 막거나 폭동 또는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취해진 행동의 결과로 사망하였다면, 그 행위는 생명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 유무는 각 사례별로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고려하여 관할 사법기구가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약기구가 판정한다. 또한, 생명권은 사형을 허용하는 법체제에서는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할 수 없다(후술 내용 참조)

생명권과 초국가적 법리

1995년, ‘맥켄 외 v. 영국’ 사건을 심리한 유럽인권법원은 세 명의 테러 용의자들 - 영국 군인들은 자신들이 이들을 체포하려 했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 충격으로 사망한 군사작전이 충분한 계획이 없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생명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사건을 통해, 유럽인권법원, 미주인권법원,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즉결 및 자의적 살상(summary and arbitrary killings)은 정의상으로 생명권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미주인권법원의 ‘1988년 벨라스케스 로드리게스 v. 온두라스’에 대해 내린 이정표적인 판결이후로는, 강제실종 관행도 생명권 위반 또는 적어도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생명권과 국가의 의무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은 정부에 의한 자의적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의적 살상, 강제실종, 준군사적 세력, 조직범죄 또는 기타 사적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유사한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와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법률을 시행하여야 한다.

‘오스만 v. 영국’ 사건(1998년)

유럽인권법원은 아메드 오스만(Ahmed Osman) - 아들의 학교 교사에게 총을 맞고 사망함 - 의 친척들이 오스만의 생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제기한 소송

사건을 심리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관련 당국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이 위협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a) 관련 당국이 제3자의 범죄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b) 당국은 권한 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러한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유럽인권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소자들(applicants)은 오스만 가족의 생명이 그 교사로 인해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처해 있음을 경찰이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점, 경찰이 조치를 취했다라면 그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다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어떤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살인적 공격은 국내 형사법에 의해 적절한 처벌을 수반하는 위반 행위다.
- 모든 폭력 범죄는 가해자를 찾아내어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한다.
-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 살상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강제실종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들이 생명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생명권을 보호하고 실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단순히 살인, 암살 및 살인적 공격을 유죄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6호에서 국가는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영양실조 및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 - 국가는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함 - “전쟁, 집단살해 행위 및 자의적 사망을 야기하는 기타 대규모 폭력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최고의 의무”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원들은 다음을 보장함으로써 생명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생명권의 보호에 기여하는 음식, 건강, 안전, 평화,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정부는 생명권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관, 교도관 등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특히, 영양실조와 전염병을 근절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수명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생명권과 관련된 쟁점들

사형제도

사형 문제는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의 법률적 역사는 노예제와 고문이라는 다른 두 가지 관행과 그에 관한 논쟁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노예제는 세계사 전반에 걸쳐 널리 행해지던 관행으로 19세기에 와서야 법으로 폐지되었으며, 고문은 계몽시대 이전까지 통상적인 형사상 절차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두 관행 모두 오늘날에는 관습적 국제법과 조약기반 국제법에 의해 절대 금하고 있지만, 사형 폐지는 그에 비해 느린 진척을 보이고 있다.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논쟁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지	반대 논지
억제효과	사형의 억제효과는 증거로 입증된 바 없다.
피해자를 위한 보복 및 정의	현대의 정의 기준은 가해자의 재화와 재통합을 지향한다.
항소 제한 및 인신보호영장 (habeas corpus) 개혁	이러한 조치로 사법적 오류와 무고한 사람들의 사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법에 의한 생명권의 명확한 예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 형태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보호 조항(때로 “경제사회이사회 보호 조항(ECOSOC Safeguards)”로 불림)을 채택하였고, 이 보호 조항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었다.²⁴⁾ 이 보호 조항은 - 주로 자유권규약(CCPR) 조항을 반영 - 최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특정 부류의 가해자들은 사형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되어야 한다.

- 미성년자: CCPR과 아동권규약(CRC)은 위법 행위를 행한 당시에 18세 미만인 자는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습적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
- 고령자: CCPR이나 위의 보호 조항에는 이러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988년에 유엔 범죄예방통제위원회(UN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는 회원국에게 선고 또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연령 상한선을 정

24)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9/118, 14 December 1984

하도록 권장할 것을 최고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하였다. 미주인권협약 (ACHR) 제4조 (5)항에 의하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70세가 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임신부: 보호 조항은 (CCPR 제6조에 따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사형을 금하고 있다.
- 정신질환자: 건전하지 못한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CCPR과 지역 인권조약에는 빠져 있는 원칙 - 이 사형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보호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법은 모든 사형건에 적용되는 절차상 요건 즉, 공정한 재판 보장, 상급법원 항소 가능성, 관용적 조치(clemency)를 명시하고 있다. CCPR 제6조 (4)항에 의해, 사형 선고의 사면 또는 전환은 항시라도 가능하다. 관용적 조치는 - 가령, 종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 사형 선고를 연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과오를 만회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거나 또는 관련 요소들의 참작을 허용하지 않는 형사법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용적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사형수의 권리는 국제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경우, 이 제도는 항상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예외적인 처벌 형태가 되어야 한다. CCPR 제6조에서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 보호조항에 의하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의 정의는 “치명적 또는 기타 지극히 중대한 결과를 낳은 의도적 범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약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1971년에 유엔 총회가 확인한 바와 같이 생명권은 “모든 국가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수가 점진적으로 제한될 때만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²⁵⁾

25)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857(XXVI), 20 December 1971

사형제도 폐지 운동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국제인권기준이 작성 중에 있을 때에도 사형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CHR) 제2조, CCPR 제6조, ACHR 제4조는 사형제도의 경우에는 생명권 원칙의 예외가 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형제도 폐지 및 금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주로 유럽과 남미에서 등장하였다.

유럽의 사형제도 폐지

1983년에 채택되어 유럽이사회 회원국 중 모나코와 러시아연합을 제외한 모두가 비준한 ‘ECHR 제6차 추가의정서’는 평화시 사형을 금하고 있으며, 2002년에 채택된 ‘유럽협약 제13차 추가의정서’는 유럽에서의 사형을 절대적으로 (즉, 전시의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유럽연합과 유럽이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신규 회원국의 가입 조건으로도) 채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은 사형 안전지대로 볼 수 있다.

미주지역과 전 세계의 사형 폐지 노력

미주지역과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1990년 미주기구(OAS)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나, 지금까지 이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8개국(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형제도의 보편적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CCPR 제2선택의정서(1989년)’도 지금까지 54개국 - 대부분이 유럽과 남미 국가들 - 만이 비준하였다. 그러나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여러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법에 의한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불인도(non-extradition)와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법리 동향

- 1989년 ‘소어링(Soering) v. 영국’ 사건을 심리한 유럽인권법원은 영국이 독일 국민을 미국에 인도하여 수 년 간 사형수로서 살아가게 한 행위는 ECHR 제3조에 의한 비인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1993년 미국이 관련된 또 다른 범인 인도 사건인 ‘느그(Ng) v. 캐나다’ 사건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스 질식에 의한 사형은 CCPR 제7조에 의한 비인간적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1995년의 기념비적인 판결에서,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그 집행 방법 또는 기타 정황과 상관없이, 비인간적이며, 남아프리카의 비인간적 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
- 2003년 ‘저지(Judge) v. 캐나다’ 사건을 심리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당사국으로서, 캐나다가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진정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 사형선고가 내려진 미국으로 추방함으로써 이 의정서 제6조 1항에 의한 생명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 ‘오칼란(Öcalan) v. 터키’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불공정한 재판 후에 내려진 사형 선고는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CHR)’ 제3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 2005년 3월 1일 미국 대법원은 미성년자였을 당시에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청소년 사형에 반대하는 저항할 수 없는 국제여론”을 이 판결이 “존중되고 인정될 수 있는” 이유로 들면서, “일정한 기본적 권리에 대해 다른 국가와 국민들이 분명하게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권리가 우리 자유 유산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헌법에 대한 충성심 또는 헌법의 기원에 대한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낙태

ACHR 제4조는 전반적으로 생명권을 수태 시점부터 보호하고 있는 반면, CCPR 제6조와 ECHR 제2조는 생명의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1973년 ‘로우(Roe) v. 웨이드(Wade)’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빌어 다른 국가의 국내법원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생명권의 법적 보호는 태아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해석에 의하면, 임신 첫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낙태를 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엄마 없이도 생존할 수 있게 된 후에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낙태의 형사상 의무를 면제하는 법은 부모 또는 의사의 개입으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나 첫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발생하며, 태아의 생명권은 다른 인권 특히, 엄마의 생명권과 엄마의 건강권 및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Box 51

사형제도에 관한 세계 현황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2004년에는 25개국에서 최소한 3,797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64개국의 최소한 7,395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수치에는 사면위원회에 알려진 경우만이 포함되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이다.²⁶⁾

사형폐지국가와 사형존속국가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85
- 전시 범죄와 같은 예외적인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11
-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24
- 법 또는 관행에 있어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총수: 120
- 사형존속국가 및 속지: 76

1.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 및 보호령(territories)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와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기니비사우, 아이티, 교황청(바티칸 시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리바시,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마셜군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연방),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동티모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2. 일반적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한 국가

군법 또는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만 법으로 사형을 허용하는 국가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쿡 제도(Cook Islands), 엘살바도르, 피지, 그리스,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페루, 터키

3.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살인과 같은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 또는 정착된 관행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실제로는 사형폐지국가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과,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언한 국가들

알제리, 베냉, 브루나이(다루살람), 버키나파소(Burkina Faso),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감비아, 그레나다, 케냐,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몰리, 모리셔스, 나우루,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연합, 스리랑카, 수리남, 토고, 통가, 튀니지

4. 사형제도 존속국

일반적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는 국가 및 보호령

아프가니스탄, 안티과 바부다, 바하마 제도,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리즈, 보츠와나, 부룬디, 카메룬, 차드, 중국, 코모로스, 쿠바,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이슬람공화국),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레바논, 리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사회주의인민아랍국), 말라위, 말레이시아, 몽골, 모로코,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카타르, 대한민국,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랜드, 시리아아랍공화국, 타지키스탄,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간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유전공학

유럽이사회는 윤리, 인권, 현대 생명공학의 발전의 경계에 위치한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각료위원회는 ‘생물학과 의학의 응용과 관련하여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 보호를 위한 협약(인권과 생의학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건강 분야의 모든 개입에 대한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제5조), 인간 계놈을 변형하기 위한 개입은 예방,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만 그리고 그 목적이 후손의 계놈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제13조), 인체와 그 기관들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1조). 1년 후에 채택된 이 협약의 제1부속의정서는 인간 복제 금지를 목표로 하며, 2002년에 채택된 제2부속의정서는 인체 장기 및 조직의 이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6) 자세한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웹사이트 <http://web.amnesty.org/pages/deathpenalty-fact-eng>에서 찾을 수 있다.

안락사

의문의 여지없이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는 특히 불치병 환자, 장애인, 안락사 조치에 특히 취약한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명확하고 진지하게 죽음을 희망하는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권 보호 의무는 그 환자에게 주어질 다른 인권, 특히 사생활과 존엄에 대한 권리를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관련된 권리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을 제한하고 잠정적 남용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을 취하고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국내법(가령, 네덜란드의 관련 법규)은 생명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상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리와 의학의 경계선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국가는 ‘프리티(Pretty) v. 영국’ 사건(2002년)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같이 안락사 금지를 선택할 지도 모른다(Box 52 참조).

> Box 52

‘프리티 v. 영국’ 사건 (2002년)

다이앤 프리티(Dianne Pretty)는 운동신경질환으로 목 아래 부분이 모두 마비된 말기 환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지적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손상되지 않았고 그녀는 자살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로는 혼자서 자살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그녀는 검찰청장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자살을 돕더라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요청은 자살을 돕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영국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거부되었고, 이 결정은 국내 최종심에서도 인정되었다. 그녀는 유럽법원에 영국 법원의 판결이 특히 그녀의 생명권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청원에 대해 유럽법원은 ECHR 제2조에 의한 생명권이 이분법적으로 상반되는 권리, 즉, 타인의 손에 의하든, 아니면 공공 당국의 지원을 받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로, 매우 엄격하게 정의된 조건과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환자조력사망법안(Patient Assisted Dying Bill)으로 알려져 있는) 평의원 발의 법안(private member bill)이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의 작성자들은 사람이 목숨을 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권리는 ECHR 제8조

(1)항,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권리는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상치되지 않는다.

◆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UDHR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CCPR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문은 인간의 인성과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다. 고문과 기타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금지 즉,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 인권*이며,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상급자의 명령을 고문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들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문 금지의 성문화

고문 금지는 세계인권선언(제5조), CCPR(제7조), CAT 그리고 ECHR(제3조), ‘고문과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 처우나 처벌의 금지를 위한 유럽협약’, ACHR(제5조), ‘고문방지와 처벌을 위한 미주협약’, 아프리카인권헌장(제5조)과 같은 지역별 조약,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덕적 권위를 지닌 문서들인 ‘수용자 처우를 위한 표준최저규정(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구금 또는 감금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들(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정(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효과적 조사 및 문서화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the Effective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에 성문화되어 있다. 또한, 고문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여러 조항에서 특히, 제3조에서 절대 금지되어 있다. 또한, ICC 로마규정은 고문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경우 “반인류적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문이란 무엇인가?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제1조에서는 고문을 - 공직자 또는 공직자를 대신하거나 공직자의 사주를 받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 행해지는 - 정보나 자백 강요, 차별 위협 또는 차별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 대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한다.

고문의 필수 요소들 - 공직자에 의해 또는 공직자의 동의를 얻어 행해진 행위, 고의적인 특정 목적, 심각한 수준의 고통 - 중에서 한 가지가 결여된 행위들은 그 유형, 목적 및 고통의 강도에 따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로 간주된다. 모든 처벌은 고통을 야기하고 모욕적 요소가 포함되므로 어떠한 처벌이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추

가로 한 가지 요소가 더 존재하여야 한다.

“고문을 인간에게 고통감을 느끼게 하고, 불쾌감과 모욕을 줄으로써 그를 ‘물건’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전 유럽고문방지위원회 이사회 의장 안토니오 카세스(Antonio Cassese)의
“Inhuman States: Imprisonment, Detention and Torture in Europe Today
(Cambridge Policy Press, 1996)” p.47에서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를 위
한 법적, 도덕적 근거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이해관계
(interests), 정책 및 관행에 양보하거나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

고문의 금지로부터 어떠한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가?

정부는 전시 및 비상시에도 신체 보전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의 훼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CAT 위원회는 심지어 용의자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곧 다가올 공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정부는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심문 방식 가령,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억류하거나, 눈을 가리거나, 시끄러운 음악에 계속 노출시키거나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몸을 심하게 흔들거나 찬 공기로 추위에 떨게 하는 등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고문과 부당 처우의 절대적 금지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으로 예외를 둔다면 고문은 암세포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고문 금지의 절대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 장기간 구금되지 않을 권리, 체포된 사람은 즉각적인 법원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유보된다면 고문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권리들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는 어떠한 고문 행위라도 예방하고, 조사하며, 기소하고, 처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 및 정신적 재활과 물질적, 도덕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배상을 제공하여야 한다(Box 55 참조).

> Box 54

경찰의 구류에 대한 절차상 보호조항

고문과 부당 처우가 주로 경찰에 의한 구류 중에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다음의 절차상 보호조항은 체포된 사람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한다.

- 구류 통보: 체포된 사람은 자신의 구금 사실을 자신이 선택한 제3자(가족, 친구 또는 영사)에게 통보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 피구금자의 변호사 접견권
- (경찰이 선택한 의사가 실시하는 의료 검사에 더하여) 피구금자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 의한 의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피구금자와 구금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 통합 명부 이용 가능
- 고문 또는 기타 유형의 강요를 통해 얻은 정보 배제
- 모든 경찰 심문의 녹음 또는 녹화

CAT에 의한 국가 의무

CAT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고문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당국이 고문이 자행된 장소와 고문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고문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관행을 예방한다. (보편적 관할권 원칙)
- 고문 금지에 관한 교육과 정보가 민간 또는 군 사법집행관, 의료진, 공직자, 체포, 구금 또는 감금된 개인의 구속, 심문 또는 처우에 관여할 수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의 훈련 내용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한다.
- 심문 규칙, 지시사항, 방법 및 관행과 어떠한 형태든 체포, 구금 또는 징역의 상황에 있는 사람의 구금 및 처우 방식이 독립적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검토되도록 한다.
- 고문 및 부당 처우를 주장하는 진정에 대해 관할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고문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며,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주어지고, 구금 중 고문과 부당 처우를 방지하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 고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추방하거나 강제송환(“refoulement”) 또는 인도하는 것을 삼간다(“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또는 non-repatriation)” 원칙).
- CAT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례보고서 또는 CAT 위원회가 요청하는 기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모든 구금 장소에 예방차원의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사법부, 사법집행관, 변호사, 의사, 독립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를 설치한다(2002년에 채택된 CAT 선택의정서).

구금과 사법집행 윤리에 관한 유엔 최저 기준

- 1948년의 ‘사형에 직면한 이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보호 조항(Safeguards Guarantee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
- 1979년의 ‘법집행공무원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 1982년의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수용자와 구금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특히, 의사를 포함한 보건 관계자의 역할과 관련된 의료윤리 원칙(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1985년의 ‘청소년 재판 운영을 위한 유엔 표준최저규정(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 1988년의 ‘구금 또는 감금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원칙들(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1990년의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 1990년의 ‘수용자 처우를 위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1990년의 ‘청소년 일탈 예방을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 1990년의 ‘불구속 조치를 위한 유엔 표준최저규정(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Non-Custodial Measures(“The Tokyo Rules”))’
- 1990년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유엔 규정(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모든 처벌에는 고통과 모욕이 수반되므로 처벌이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하나의 요소가 더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서의 최저기준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 오늘날 사형과 모든 형태의 체형은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벌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중신형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용자(prisoner) 체벌과 같은 체형을 CCPR 제7조에 의한 모욕적 처벌로 간주한다. 또한, 가스 질식과 같은 특정한 사형 방법이 비인간적 처벌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피구금자와 수용자의 권리

CCPR 제10조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내재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에 의하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신체의 자유의 박탈로 인한 고통 외의 어떠한 고충이나 제약도 가해서는” 안 된다.

여러 연성법(軟性法) 문서에 구금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기준들이 명시되어 있다.

➤ Box 57

인권과 교도소 민영화

민간부문의 교도소 사업 개입 - 교도소 건설, 수용자 이송, 물품 조달, 심지어 구금시설의 총체적 관리 포함 - 은 미국에서 (이미 반세기 전에 포기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1980년대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교도소 민영화로 인해 수용자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역량은 감소하였다. ‘인권 증진과 보호 소위원회’²⁷⁾가 실시한 한 연구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인 클레어 펠리

(Claire Palley)는 교도소 운영의 위탁에 반대하는 5가지 주요 정책적 논지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 a. 국가에만 재판을 실시하고 그 판결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국가에게 위임하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행정적 권한의 정당성은 국가에 의해 그 권한이 행사될 때 주어지기 때문이다.
- b. 재량적 권한과 기능은 국가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능은 남아 있는 자유의 축소 또는 억류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c. 수용자를 억류하는 힘은, 정당하게 재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행할 수 있는 유일한 개체인 국가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 d.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
- e. 국가는 형사재판체도의 책임성 및 공적 가시성(public visibility)과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와 보안업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교도소 위탁기관(trusts) 설립의 문제점과 그러한 위탁기관이 형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얻게 되는 이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수용자자의 민영화와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²⁸⁾

◆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UDHR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UDHR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27) E/CN.4/Sub.2/1993/21

28) 가령, CorpWatch, "Prison privatization: the bottom line", 21 August 1999 참조

CCPR 제9조 (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류로 정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자의적 또는 불법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본적 보장은 형사상 혐의로, 또는 정신 질환, 부랑자 또는 출입국 관리와 같은 이유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섬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유배, 통행시간 제한, 강제 출국 또는 출금 금지와 같은 기타 형태의 이동 제약은 이동과 주거의 자유 등과 같은 기타 인권의 위반은 될 수 있으나, 신체의 자유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UDHR 제14조).

➤ Box 58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5조: 체포와 구금이 허용되는 사유

- 형사상 범죄 확정 이후 교도소 감금
- 형사 용의자의 도주, 증거 조작 또는 재발을 막기 위한 용의자 경찰 구속 및 재판 전 구금
- 증인의 범원 출두 또는 친자확인검사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민사상 차원의 구금
- 이민, 망명, 추방 및 송환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구금
- 교육적 감독의 목적을 지닌 미성년자 구금
-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감금
- 전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환자의 격리
-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및 부랑자 구금

체포나 구금은 어느 경우에 합법적인가?

신체의 자유는 법적 근거와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박탈할 수 있

다. 이 절차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관련 국내법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부적절, 불공정, 예측불가능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법집행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며, 해당 사건의 모든 주변 정황에 비례하여야 한다.

➤ Box 59

재판 전 구금에 관한 자유권위원회의 법리

자유권위원회에 의하면 재판 전 구금은 특정 상황에서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다. 자유권위원회는 CCPR에 의하면 당국이 어떤 사람의 법정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인 조치로서 그 사람을 구금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필요성” 요건에 대해 협소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는 조사와 기소 이전의 구속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권위원회는 도주를 방지하고, 증인과 기타 증거에 대한 개입을 막고, 추가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체포와 구금 허용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ECHR 제5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유럽에서 합법적인 신체의 자유 박탈이 가능한 경우(Box 58 참조)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CCPR 제9조의 “신체의 자유의 자의적 박탈”이란 용어를 해석하는 준거의 역할을 한다. 채무 상황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CCPR 제11조, ACHR 제7조 (7)항, ECHR 제4부속의정서 제1조에서 명확하게 금하고 있다.

구속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 체포된 사람은 자신의 체포와 구속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즉각적으로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의 체포 또는 구속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소된 경우라면 변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통보 받아야 한다.

- 형사상 혐의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변호사를 구할 여력이 없다면, 자격을 갖춘 유효한 변호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변호인과 접견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변호인 접근성은 즉각적이어야 한다.
- 구속된 자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히, 가족, 변호사, 의사, 사법담당관, 그리고 피구금자가 외국인이라면, 영사관 담당자나 관할 국제단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외부 접근성은 “실종”,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인권 위반을 막기 위한 필수적 보호 장치이며, 공정한 재판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 형사상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a) 충분히 합법적인 체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b) 재판전 구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며, (c) 피구금자의 안녕을 보장하며, (d) 피구금자의 기본권 위반을 방지하여야 하는 판사나 기타 사법담당관에게 신속하게 보내져야 할 권리가 있다.
- 재판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합당한 시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상 혐의로 재판 대기 중인 자는 일반적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그 사유를 막론하고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abeas corpus*)가 있다. 즉, 자신의 구금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에 제소하여 이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지체 없이 통상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이내에 해당 구금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 구금이 불법적이라면 즉각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간을 명기하지 않은 구금(가령, 정신병원 구금) 명령이 내려지면, 피구금자는 통상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할 권리가 있다. 끝으로, 불법 체포나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강행할 수 있는 보상권을 지닌다.

◆ 법행정: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UDHR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UDHR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DHR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DHR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UDHR 제11조

- (1) 형사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장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어떠한 행위가 행해진 당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CCPR의 제14조, 15조, 16조에도 공정재판권이 명시되어 있다.

UDHR 제6조~11조는 사법행정이라는 공통의 제목으로 묶을 수 있다. CCPR과

지역별 인권조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공정재판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절차상 보장을 필요로 한다.

법 앞과 법정에서의 평등

공정재판 보장조항은 법 앞과 법정에서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한 권리는 법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며 판사와 담당관은 법을 차별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법정에서의 평등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은 법원 접근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법원에서 동등하게 처우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 재판권의 핵심 요소

형사상, 민사상 및 기타 소송에 있어서 공정 재판권의 기본적 요소는 당사자 간 “무기의 평등(equality of arms)” 원칙과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의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 요건이다.

- “무기의 평등”이란 양당사자 - 형사 소송에서는 검찰과 피의자,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 에게 그 소송의 여러 단계에 참석할 수 있고,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audiatur et altera pars*)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기의 평등” 원칙은 당사자주의 소송(*adversarial proceedings*)을 요한다.
- 법원 심리 및 판결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즉, 그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이에 참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공개 심리 원칙의 바탕이 되는 개념은 투명성과 대중에 의한 통제로서, 이는 민주사회에서 사법행정의 주요 필수조건이다. 즉, “정의는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it must be seen to be done*).” 따라서 일반적 원칙으로서, 재판은 카메라로 증계되고 완전히 서면으로 작성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두

심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항소 단계에서는 소송의 모든 과정이 공개 심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윤리, 공공질서, 국가안보, 개인적 이해,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법적 이권을 이유로 언론을 포함한 대중이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은 구두로 또는 서면 발표로 공개되어야 한다.

➤ Box 60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원: 사법부의 독립성

법원(tribunal 또는 court)은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판사의 임명, 판사직 임기,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보호 장치와 관련한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불편부당성은 법원에 제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 판사는 사적인 이해 또는 정치적 동기로 편견을 갖거나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은 이 분야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의 독립과 불편부당성을 보장하는 법 조항의 필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장 먼저,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 또는 국내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사법담당관의 선정 방법은 집행부와 불편부당한 기구 사이의 균형을 특징으로 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법률 학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 판사의 임기는 의무 정년 또는 임기 만료일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정직 또는 해임에 관한 결정은 독립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의 권리

“무기의 평등”과 공개 심리에 대한 권리에 더하여 국제인권법은 형사 범죄로 소추된 사람들이 누려야 할 다음과 같은 여러 특정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무죄로 추정될 권리: 검찰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유죄로 확정하지 않고 무죄로 하여야 한다.
- 유죄의 증명 또는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이 금지 조항은, 입증의 책임을 검찰에게 부과하는 무죄 추정 원칙과, 고문 및 부당 대우의 금지 조항과 일맥상통한다. 고문이나 부당 대우에 의해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 직접 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와, 무상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
- 부적절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원칙적으로 형사 소송은 특히,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소송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자신의 재판에 참석할 권리
- 증인을 요청하고 심문할 수 있는 권리
- 피의자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상으로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두 차례의 재판 및 선고를 받지 아니할 권리 (일사부재리 원칙(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또는 principle of *ne bis in idem*)
- 오심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
- 죄형법정주의 원칙(*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은 소급적 형법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행해진 후에 그러한 법이 제정되는 경우 이미 기소된 자는 더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원과 군사법원

특별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특별한 유형의 위법 행위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지

닌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법원은 일반 법원에 비해 공정재판 보장 장치가 적은 경우가 많고, 자유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법원의 설립 이유는 통상적인 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²⁹⁾

대부분의 국제기준은 특별법원 자체의 설립은 금지하지 않지만, 특별법원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불편부당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공정한 소송을 보장하는 사법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Box 61

군관계자의 일반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

군관계자가 저지른 일반 범죄와 인권침해행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함으로써 불처벌(impunity)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법외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치안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잘못된 단결심의 발로로 처벌을 면한 경우”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³⁰⁾ 미주인권위원회는 군 관계자에 의해 행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확대 적용된다면 ACHR 제8조 (1)항에 명시된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원이 보장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³¹⁾

비상사태 및 무력분쟁 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제1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보될 수 없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 - 가령, 고문과 소급적 형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는 공정재판을 보장하는 조항에 포함된다. 또한, 인신보호 영장 규정의 저하도 허용해서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점차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국가에게 “비상 사태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가 저하

29) HRC, general comment No.13, para.4.

30) UN Doc.A/51/457,para.125, October 1996.

31) IACHR, *Annual report*, 1993

되지 않을 개인적 권리로서, 인신보호 영장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³²⁾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바로 국가 비상사태이다. 국회는 자체 권한을 사용하여 인권의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정재판 보장제도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비상사태 시에도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국제 인도주의법은 무력분쟁 시 관행을 규정하고 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는 형사상 위반 행위로 기소된 사람들을 위한 공정재판 보장 요건들이 열거되어 있다.

◆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UDHR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공격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DHR 제16조

“(1)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과 이혼 시에 그 혼인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사회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CCPR 제17조

“(1)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32) Commission resolution 1994/32.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CCPR 제23조

“(1) 가정은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사회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 가능 연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인정된다.

(3) 어떠한 혼인도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과 이혼 시에 그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혼의 경우, 그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자유와 개인적 자율성 개념의 핵심이다. 동성애, 성전환, 성매매, 낙태, (조력) 자살, 의복 규범 및 유사한 행동규범, 사적 통신, 혼인과 이혼,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유전공학, 복제, 자녀와 부모의 강제 격리 등과 같이 사생활 침해 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쟁점의 상당수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에 따라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은 사적과 공적영역을 양분하는 이분법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사적 문제와 가정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페미니스트 이론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박되고 있으며, 가정 폭력과 여성 생식기 절단(FGM)을 포함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권

이 권리는 다음을 내용으로 한다.

- 인간의 개인적 존재 즉, 개인의 특성, 특질, 외모, 명예와 명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한다.

- 이 권리는 개인적 자율성을 보호하며,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희망과 기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켜 공적 생활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가정, 가족, 혼인과 통신 기밀의 보호와 같은 일부 제도적 보호 장치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이러한 측면을 지원한다.
- 이 권리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특정 사회 및 환경에서 인정되는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 당국과 국제인권기구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및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와 같은 정당한 공적 이해관계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까다롭고도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생활 권리의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관련 이슈들의 대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명확한 답변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답은 각 사례별로 해당 사회에서 지배적인 특정 상황을 감안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얻을 수 있다.

사생활 권리의 주요 특징

개인의 정체성과 친밀성의 유지

사생활 보호는 개인의 성명, 외모, 의복, 머리 모양, 성별, 감정, 생각, 종교적 및 기타 신념을 포함하는 특정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의무적 복장 및 두발 규정, 강제적인 개명, 개종이나 성전환 또는 개명, 개종 또는 성전환 불인정(가령, 성전환자의 출생 신고 변경을 국가가 불허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상 주입(“세뇌”), 강제적 성격 개조 등은 사생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의 친밀성(intimacy)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밀유지 의무(가령, 의사와 성직자의 기밀유지 의무)와 비밀 보장 규정(가령, 투표시)을 준수함으로써, 그리고 개인 자료의 제공, 수정 및 삭제에 대한 강행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적절한 자료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 보호

자율성 영역이 사생활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정도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큰 이슈다. 개인의 자율성 즉, 인간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생활 분야 - 는 자유주의적 사생활 개념의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자율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며, 이 권리는 자살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이 공동의 선과 공중도덕에 유해한 것으로 여겨왔으며, 때로는 그러한 행동의 표출(가령, 자살, 소극적 안락사, 마약,알코올,니코틴 섭취)을 금지하고 처벌하여 왔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니는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여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개인이 정서적 관계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권리도 의미한다. 성적 자율성 및 성적 관계에 대한 권리는 특히 중요하며 정부는 성적인 문제에 개입할 때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Box 62

“가족”은 국제인권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세계인권선언에 의한 지원 외에도, 가족이란 제도는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구성단위”로서 CCPR 제23조, CESCRCR 제10조, 유럽사회헌장 제16조, ECHR 제8조, ACHR 제17조,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8조에 의한 특별보호 대상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보호는 “가족”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핵가족 개념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사회 등에서의 확대가족과 같은 더 큰 단위를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연관계와 법적 관계(혼인, 입양, 동성애 동반자관계 등록 등) 외에도, 동거, 경제적 관계, 주어진 사회에서의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는 주어진 유형의 인간관계가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기준이 된다.

가족의 보호

가족의 보호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가족에 대한 제도적 보장(즉, 법률적 인정 그러한 지위로 인해 주어지는 특정한 혜택, 배우자, 동반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규제 등)은 해체 경향을 보이는 사회적 질서를 보호하고, 특정한 가족의 기능(가령, 재생산 또는 자녀 양육) -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능 - 이 다른 사회 제도나 국가에 이전되도록 묵과하지 않고 그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생식권을 포함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배우자의 평등에 대한 권리, 모성보호권, CRC에 명시된 아동의 특별한 권리 등은 가족의 제도적 보장과 직접 연결된다.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아동의 권리, 아동의 양육과 발달을 위한 양 부모의 일반적 책임, 가족 재결합, 위탁 보호 및 입양에 대한 권리는 특히 중요하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무엇보다도 국가 당국에 의한 그러한 간섭으로부터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형의 간섭으로 부모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시켜 국가의 보호아래 두는 것을 들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여러 관련 사건들을 심의한 후에, 해당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일정한 최저 보장조항을 마련하였는데 모든 행정 절차 참여, 사법적 검토, 위탁 가정 보호 기간 중 가정 재결합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 접촉 등이 그에 속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혼 후에도 양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접근권은 유지된다.

가정의 보호

가정(Home)의 보호는 사생활 보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가정은 친숙함, 쉼터, 안정을 제공하며, 따라서 공적 생활로부터 벗어나 방해받을 걱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가장 잘 형성할 수 있는 피난처를 상징한다. 실제로, “가정”은 실제 거주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적용되며, 그 법적 명의(소유, 임대, 임시 거주, 심지어 불법 이용) 또는 사용 성격(본 주 거주, 주말 별장 또는 업무용)과는 무관하다.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가정”이라는 용어로 칭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한 모든 침입은 간섭

(interference)에 해당한다. 고전적인 형태의 간섭은 누군가를 찾아 체포하거나 형사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찾으려는 경찰의 수색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형태의 간섭은 아니다. 군인(security force)의 폭력적인 집 훼손, 강제 퇴거, 은폐된 TV 카메라나 도청기 사용, 전자장치에 의한 감시 또는 극단적 형태의 환경오염(소음이나 유독 가스)은 가정의 보호권에 대한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한 간섭은 국내법에 부합되며 자의적이지 않은 경우 즉, 특정한 목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경찰 수색, 압류 및 감시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서면 영장을 근거로만 허용되며, 증거 수색과 같은 특정 목적 외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소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 Box 63

**이주, 추방, 송환 관련법과 정책과 관련하여 가족생활에
가해지는 국가 간섭의 제한**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는 없지만,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이민 유입 정책은 가족 보호 및 재결합에 대한 권리에 위배된다. 외국인이 타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특히, 그 곳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경우라면, 정부는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경우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논거를 갖추어야 한다. 가령, ‘베리합(Berrehab) v. 네덜란드’ 사건(1988년)에서 유럽인권법원은 단순히 네덜란드인 부인과 이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모로코인을 추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 반면에, 외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질서 유지, 범죄 예방과 같은 정당한 국가의 관심사에 견주어 보아야 한다면, 해당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그 사람이 오랜 기간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족을 해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단지 출신국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민 2세대나 중증의 장애나 질환이 있는 자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럽법원은 가족생활권이 위반되었다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당한 공공의 이익과, 가족생활 및 기타 사적 상황(가령, 거주하는 국가에서의 정규 직업, 재산 또는 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적 통신의 보호

“통신(correspondence)”이란 용어는 처음에 서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형태의 원거리 통신, 즉, 전화, 케이블, 텔렉스, 팩스, 전자메일 또는 기타 기계적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신을 의미한다. 통신의 보호는 그러한 통신의 비밀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사적 통신의 보류, 검열, 검사, 차단 또는 공개는 간섭에 해당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간섭으로는, 국가기관이 사법행정, 범죄 예방(피구금자의 통신을 검열함으로써), 테러 근절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행하는 감시 조치들(편지 개봉, 전화 내용 감시, 팩스와 전자메일 가로채기 등)을 들 수 있다. 가택 수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간섭은 국내법에 부합하여야 하며(즉, 일반적으로,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야 한다.

➤ Box 64

사생활 보호권과 테러 근절 조치

사생활 보호권은 특히 최근에 여러 국가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경찰력과 정보국 권한을 확대하고자 제정한 법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법원에 의한 사전 승인이 없이도 종종 이루어지는) 수색, 압수 및 감시와 같은 전통적인 경찰 기능을 확충하는 것 외에도, 전자장치를 동원하여 “잠재 조직(sleeper units)”과 기타 잠재적 테러분자들의 방대한 양의 개인 자료를 심사, 스캐닝, 프로세싱, 결합, 연결, 저장, 모니터링 함으로써 감시하고 있으며, 인종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통해 선정된 목표 집단의 지문, 혈액, DNA 샘플을 자동 채취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다른 인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다. 즉, 경찰과 정보국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음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1.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2.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존중하며,
3.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개인의 자유, 사생활 보호 및 법치주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이동의 자유

UDHR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과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CCPR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3) 위에 언급한 권리들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들과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CCPR 제13조

“현행 규약의 당사국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의해서만 그 나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출하고 자신의 사건을 관할 당국 또는 관할 당국이 특별히 지명한 사람 또는 사람들이 검토하게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관할 당국이나 지명자 앞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CCPR은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권리는 공적 간섭과 사적 간섭 모두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한 국가 내에서 외국인 이동의 자유

이 권리는 한 국가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 국가의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내법은 그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충족하고 있다면 입국 제한 조항을 둘 수도 있다.

불법적으로 입국하였지만 이후에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이라면 그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어떤 국가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제한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국인과는 다르게 처우되는 내용이 있다면 CCPR 제12조 (3)항에 의해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제한으로 위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1994년에 자유권위원회에 제소된 ‘셀레플리(Celepli) v. 스웨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쿠르드족 출신의 터키 국민으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셀레플리는 테러행위 연루 혐의를 이유로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집행되지 않았고, 그는 스웨덴에 계속 체재할 수 있었지만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경찰에 보고해야만 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러한 제약이 CCPR 제12조 (3)항의 규정에 부합하며, 따라서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출국할 자유

CCPR 제12조 (2)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시민, 외국인,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포함)은 한 국가의 영토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단기 및 장기 해외 방문과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이민에 적용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해외여행의 목적 또는 기간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이 권리로 인해 거주국과 국적국 모두에게 의무가 주어진다. 가령, 국적국은 자국의 영토 안팎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여행 서류나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

다. 국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자국 시민에게 출국을 위해서는 출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간섭에 해당한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출국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 남편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출국권을 제한하는 국내법을 비난하여 왔다.

➤ Box 65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장벽: 예시

이동의 자유는 종종 아래에 열거한 바와 같은 불필요한 장벽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은 국내외 이동을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한다. 국회의원은 그러한 조치에 반대할 수 있다.

국내 이동

- 국내 이동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
- 거주지 변경 허가서를 신청해야 할 의무
- 목적지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 서면 신청 절차의 행정적 지체

국외 이동

- 관할 당국 또는 요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결여
- 여권 발급을 위한 신청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양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건
- 고용주 또는 친척의 지원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 요건
- 정확한 이동 경로를 기술하여 제출해야 하는 요건
- 높은 여권 발급 수수료
- 여행 서류 발급 절차의 불합리한 지체
- 동반 가족에 대한 제한
- 귀국 보증 예치금을 납부하거나 귀국행 비행기표를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
- 종착국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요건
- 신청인을 괴롭히는 행위

이동의 자유 제한

이동의 자유는 법에 의해 명시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해서는 안 된다 (CCPR 제12조 (3)항).

자유권위원회에 의하면 이러한 요건들은 가령, “한 개인이 단지 ‘국가 기밀’ 소지자라는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었다거나, 특정한 허가서 없이 국내 이동이 금지되었다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동의나 수행 없이 여성이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CCPR 제12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한 편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지역 접근을 제한하거나 원주민 또는 소수민족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정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 가능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 Box 66

제한의 합법화와 그러한 법규 이행의 감독

법률 제정

CCPR 제12조 (3)항에 의한 제약을 명시하는 법률을 채택함에 있어, 국회는 항상 그러한 제약이 권리의 취지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법은 그러한 제약의 정확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이러한 조건은 객관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제약은 적절해야 하며,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보호되어야 하는 이권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행

국가가 제약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고 CCPR 제12조 (3)항에 부합하지도 않는 제약은 이동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러한 제약을 실제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제약은 CCPR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과 평등 및 비차별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자국에 입국할 권리

CCPR 제12조 (4)항에는 자국에 머무르고 출국한 후에는 귀국할 수 있는 권리가 함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라면) 최초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귀국할 권리는 특히 자발적 송환을 희망하는 난민에게 있어 중요하다.

“자국(one's own country)”이라는 표현은 주로 그 국가의 시민을 가리킨다. 예외적인 경우, 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외국인으로 거주하였거나 외국에서 이민 2세대로 태어난 사람도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자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UDHR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CCPR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채택할 자유를 훼손하는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로 정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녀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교육이 부모와, 해당되는 경우, 법적 후견인의 신념에 맞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비상 사태인 경우라 하더라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내심의 자유(*forum internum*)’으로도 알려져 있는, 자신의 사상, 견해, 양심, 확신 및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는 사상 주입(“세뇌”)과 같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 간섭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절대적 권리다. 그러나 종교 또는 신념의 공적 표명은 정당한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종교”와 “신념”이라는 용어는 일신론(一神論, *theistic*), 다신론(多神論, *non-theistic*) 또는 무신론(無神論)에 관계없이 전통적, 비전통적 신념과 종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채택할 수 있는 자유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나 자유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 무신론적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유지할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 또는 신념의 표명

“표명(*manifestation*)”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 예배(*worship*): 의례 및 의식 행위를 수행하고, 예배 장소를 만들고, 의례 방식 및 대상물을 사용하며, 상징을 전시하고, 휴일 또는 안식일을 준수한다.
- 의식(*observance*): 의식 행위를 수행하고, 섭식(攝食) 규율을 적용하며, 독특한 의복이나 두발 장식을 착용하고, 특정 언어를 사용한다.
- 행사(*practice*)와 선교(*teaching*): 종교적 지도자, 성직자 및 선교사를 선정하고, 신학대학이나 종교 학교를 설립하며 종교적 교재나 발간물을 제작, 배포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행위는 항상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부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CCPR 제18조 (3)항에 의해 특정한 규정을 두어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종교나 신념의 표명에 대한 제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기술된 조건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 공공안전, 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의 한 예로 그러한 표명이,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자극하는 전쟁 선동이나 국가주의 옹호 및 인종적, 종교적 증오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종교적 불관용이 민족 또는 종교적 집단 사이의 폭력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 Box 67

프랑스 학교에서의 명백한 종교 상징물 금지

2004년에 채택된 프랑스법에 대한 논쟁은 종교나 신념의 표명을 제한하는 문제가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한 법안은 프랑스 국립학교에서 명백하게 종교적인 상징물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의 금지 규정에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테두리가 없는 작은 모자(skullcap)와 커다란 기독교 십자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법은 이슬람교의 머리수건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

프랑스 국회와 정부는 세속성의 원칙(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과 이슬람교도 여학생들을 성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들어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금지가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으며 CCPR 제18조 (2)항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강압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여 왔다.

종교 및 도덕 교육

CCPR 제18조 (4)항에 의해 국가는 부모와 법적 후견인이 자녀를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양육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립학교에서의 의무적인 종교 또는 도덕 교육이라 하더라도 종교 수업이 객관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가령, 종교와 윤리학의 전반적 역사에 관한 과목의 일부로서), 그 교육은 위 규정에 상치하지 않는다. 공립학교에서 한 종교를 가르칠 때, 모든 학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렴하여 차별적 수업 면제나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

UDHR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CCPR 제19조

-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이나 인쇄물, 예술 양식, 또는 자신이 선택한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3) 위 (2)항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과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약이 주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제약은 법률에서 정하고 다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의 존중
- (b)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위에 인용한 조항들로부터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구분해 낼 수 있다.

- 의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수동적 성격을 띠며 절대적 자유에 해당한다. CCPR은 이 자유의 향유에 있어 어떠한 예외나 제약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성격은 의견의 소지자가 그 의견을 표명하는 즉시 사라지는 데, 이 측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뒤에서 기술하겠지만,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사회의 초석이다. 민주주의는 생각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함께 모여 생각, 비판 및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드러내며 자신의 이권을 변호하고 노동조합, 정당과 같은 이권 목적의 단체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권리를 “국제인권장전에 포함된 모든 인권의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필수적 권리로 묘사하였으며 이 권리의 존중은 그 나라의 공명정대, 정의 및 청렴의 기준을 반영한다.”고 보았다.³³⁾

모든 지역 및 국제적 감시기구들은 이 권리가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하여 왔다. 한 예로, 아프리카인권헌장은 2002년 10월에 ‘아프리카의 표현의 자유 원칙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frica)’을 채택하였다.

33)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E/CN.4/2002/75), January 2002.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자유에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공존한다. 즉, 개인에게 속하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정보를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표현한 생각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하다.

➤ Box 68

표현의 자유 - 광범위한 권리

‘핸디사이드(Handyside) v. 영국’ 사건(1976년)은, 한 출판사가 12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the Little Red Book”을 발매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북에는 성에 대한 내용과 성 문제에 관한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다. 관할 당국에 여러 이의가 제기되자, 출판사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책들은 압수되었으며, 이 사건의 진정한인 출판사 대표는 수익을 목적으로 발간하기 위한 음란 도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형과 비용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은 인정되었고, 압수된 책들은 폐기되었다. 이후에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유럽인권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국이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은 민주사회를 특징짓는 원칙들을 최대한 유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한 요소이며 민주사회의 진전과 모든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역설하였다. 정당한 제약이 주어지는 한, 표현의 자유는 “악의가 없는 것으로, 또는 중립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여겨지는 정보나 생각뿐만 아니라 국가나 특정 국민 계층에게 불쾌감 또는 충격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나 생각”에도 적용되었다.

‘펠덱(Feldek) v. 슬로바키아’ 사건(2001년)에서는 진정한이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파시스트 전력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유럽법원은 정치적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함을 재확인하였고, 정치적 언론에 대한 제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정한의 발언은 가치 판단적인 것으로 그 주장의 진위 여부는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치 판단의 진실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요건은 실행하기 불가능하고 의견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가치 판단

이 사실과 연계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서, 국내법원이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와 대중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를 증진함으로써 얻는 일반적 이익보다 목사의 사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더 큰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결론지었다.

1994년의 ‘저실드(Jersild) 사건’은 한 기자가 극렬한 인종주의적, 반외국적 발언을 한 극우주의자들(skinheads)과 인터뷰를 한 후에 차별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었다. 유럽인권법원은 그 방송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극우주의자들과 그들의 이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선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자에 대한 선고는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초석이다. 국민의 여론 형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유다. 또한, 정당, 노동조합, 과학문화학회,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 자유는 공동체가 여러 선택사항을 갖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보가 잘 소통되지 않는 사회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인권법원

자문적 의견(Advisory Opinion) 06-5185 제70항

정보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일부인 이 자유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핀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외국 국가원수의 인권 이력을 비난한 시위로 인한 ‘키벤마(Kivenmaa) v. 핀란드’ 사건(1994년)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개인이 인권의 문제에 관한 자신의 명백한 의견을 포함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규약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권리는 “악의가 없는 것으로, 또는 중립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여겨지는 ‘정보’나 ‘생각’뿐만 아니라 불쾌감 또는 충격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나 생각에도 적용가능”하다(Box 68 참조).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할 수 있는 자유

“공적기구들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정보를 소유하며,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정해진 명백한 규칙을 전제로 하여 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 원칙 선언’ 제4조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언론 매체, 국회의원, 그 밖의 사람들은 부패, 부실관리 또는 비효율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폭로하거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1995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람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없다면 자유는 모든 실효성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정보 접근성은 민주적인 생활 방식의 기본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⁴⁾

> Box 69

정보접근 관련법

상당수의 국가에서 정보접근 관련법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법은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불처벌을 근절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전문가(불처벌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원칙들을 수정, 보완하는 독립전문가)가 2004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불처벌에 대한 연구에는, 그러한 법률을 통해 인권 침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게 된 사례가 여럿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트워터스랜드 대학(Univ. of Witwatersrand)의 남아프리카 역사 기록보관소는 2000년에 채택된 남아프리카의 ‘정보 접근성 촉진법’을 이용하여 ‘실종된’ 기록을 찾고 일부 기록 파일이 국내의 진실위원회에 어느 정도로 은폐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전문가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민의 진실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법이 지니는 큰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이러한 법을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국민들이 정부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전문가는 이와 관련하

34) E/CN.4/1995/32, paragraph 35.

여, 2002년에 제정된 멕시코의 ‘연방정보접근법(Ley Federal de Acceso a la Información)’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이 법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의 공개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 매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출판과 기타 언론 매체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and other media)를 들 수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0호에서 “……. 현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매체에 대한 통제가 모든 사람이 지니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간섭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약

CCPR 제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이는 그 권리에 대한 일부 제약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정당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그 제약은 *법(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법원에 의한 판례법 또는 전문 규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법률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해당 개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그 제약이 개인에게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모호하거나 법 적용에 있어 지나친 재량권을 허용하는 법은 자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며 남용을 막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한다.

언론 매체의 자유 보호

국회는 아래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매체를 보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매체 관련법이 CCPR 제19조에 부합하도록 개정 및 수정한다.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바와 같이, 인종적 또는 차별적 논평이나 폭력 선동이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 위법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고, 비방,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에 대한 벌금이 피해자가 입은 손실에 비례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신문의 다원성과 독립성을 촉진한다.
- 방송사에 독립적인 이사회를 임명하고 편집 독립성을 존중함으로써 방송사를 정치적, 상업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한다.
- 독립적인 방송업 승인 기관이 설치되도록 한다.
- 정부 보조금이 당국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언론 매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 및 철회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한다.
- 매체 통제가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불편부당한 자원 배분과 매체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매체와 관련된 독점금지법을 채택한다.
-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증진한다.

- 제약이 다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야 한다.
 - 타인의 권리 또는 명성 존중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보호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제약이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의하며 추구하는 정당한 목표에 비례하는 경우,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손실이 이익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만 충족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제약

‘무콩(Mukong) v. 카메룬’ 사건(1994년)은 한 언론인이 자신의 표현과 의견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되고 자신이 쓴 책의 일부는 금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국가는 CCPR 제19조 (3)항에 의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근거로 들었다. 자유권위원회는, 정부가 취한 조치는 불필요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국가 결속력을 보호하고 강화한다는 정당한 목적은 다당제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념과 인권의 옹호에 대한 억압을 통해 달성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공중도덕을 이유로 하는 제약

‘Open Door Counselling, Dublin Woman Well Center 등 v. 아일랜드’ 사건(1992년)은 아일랜드의 임신한 여성들에게 영국 병원에서 낙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비지시적인 상담을 실시하던 두 법인이 제소한 사건이다. 낙태는 아일랜드 헌법에 의해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법원은 이 두 단체에게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공중도덕의 보호 분야에서 국가가 지니는 재량권이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국가 당국이 도덕 문제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유럽 당사국의 법적, 사회적 질서 속에서 도덕에 대한 통일된 유럽식 개념을 찾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은 이 사건에서 내려진 금지 명령은 너무나 확대되고 지나친 것이라고 보고, 그 명령이 정보를 유포하고 그러한 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 진정인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타인의 권리와 명성 존중을 이유로 하는 제약

‘Krone Verlag GmbH & Co. KG v. 오스트리아’ 사건(2002년)은 신문사가 한 정치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혐의와 함께 그 정치인의 사진을 신지 못하게 한 금지 조치와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당국에 의한 개입이 법

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당국은 그러한 개입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지만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이라는 기준은 충족하지 못
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문제의 이슈는 국민의 관심사이고 공인에 관한 것이며
사진의 게재 자체만으로는 그 정치인의 사생활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혀 공개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국가의 개입은 긴급한 사회
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 Box 71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간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비판에 대한 더 폭넓은 수용

표현의 자유는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 도구다. IPU의 국회의원 인권위원회는 국
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지니는 권한에 의거하여, 자신들을 선택하여 준 국
민들의 권리의 수호자로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중요한 ‘카스텔(Castells) v. 스페인’ 사건(1992년)은 한 국회의원이 정부가 몇 건
의 폭행 및 살인을 공모하였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이다. 이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
히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최대 관심사에 주목하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야당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섭은 ... 법원의 차원에서 가장 면밀한 조
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비판의 제한은 일반 국민 또는 심지
어 정치인에 대해서보다 정부와 관련하여 더 폭넓게 주어져 있다. 민주제도에서
정부의 행위 또는 부작위는 입법 및 사법기관들뿐만 아니라 언론과 대중여론으로
부터 면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특히, 정부가 반대측이나 매체에 의한 부당한 공격과 비판에 대
해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형사 소송 제기를 삼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여러 경우를 통해, 유럽인권법원은, 표
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공인으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치인
에 대해 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가령, ‘린젠스(Lingens)
v. 오스트리아’(1986년)과 ‘디찬트(Dichand) 외 v. 오스트리아’(2002년) 사건 참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무적 제약

CCPR 제20조는 차별, 적대행위(hostility) 및 폭력을 야기하는 전쟁 선동과 국가주의의 고취(advocacy of national) 및 인종적·종교적 증오와 관련하여 제19조에 의무적 제약을 열거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제20조가 완전히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거기서 기술되는 선동과 고취가 공공정책에 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를 제공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논평 NO.11)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정부들로 하여금 폭력이나 모욕적, 비인간적 처우의 대상으로 여성과 소녀들을 묘사하는 음란 및 포르노물의 출판과 배포를 제약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반논평 No. 28)

➤ Box 72

‘포리슨(Faurisson) v. 프랑스’ 사건 (자유권위원회, 1996년)

포리슨은 1973년까지 파리 소르본 대학의 문학교수를 역임하였고 이후에는 리옹 대학(Univ. of Lyons)의 교수로 있다가 1991년에 나치 수용소 살인 가스실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이보다 앞선 1990년에, 프랑스 입법부는 1881년에 제정된 출판의 자유 관련법을 개정한 ‘Gayssot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해, 1945년 8월 8일의 런던 헌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존재에 반박하는 것은 위법이다. 런던 헌장은 나치 지도자들의 1945-6년의 뉘른베르크 법정에 세워져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그 준거가 되었던 문서다. 1991년, 진정인은 내용이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반복함으로써 기소되었다.

진정인은 Gayssot Act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포리슨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반유대주의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기를 희망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약은 CCPR 제19조 (3)항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그 제약이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다.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UDHR 제20조

-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아서서는 안 된다.”

CCPR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CCPR 제22조 (1)항과 (2)항

-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핵심적 권리다.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 자유에도 일정한 제약이 주어진다.

집회의 자유

범위

결사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정보나 생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유포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집회는 “평화적”일 때만 보호를 받는다. 여기서 “평화적”이란 용어는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가령, 당사국은 평화적 집회가 군대 또는 반시위대나 선동가와 같은 민간조직에 의한 도발이나 무력 사용으로 인해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기관과 민간 당사자들의 간섭으로부터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집회와 시위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예정된 집회의 장소와 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사전 예고와 함께 제공받아야 하며,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주어지야 한다.

제한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제한이 주어지며, 그 제한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개입은 행정당국 특히, 경찰에 의해 일반적 법적 권한을 근거로 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그러한 제한은 비례적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다원주의, 관용, 포용성, 국민 주권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압적인 집회 해산은 다른 모든 온건한 수단으로도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집회가 일반인 또는 행인에게 구체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해산시킬 수 있다), 공공질서, 공중보건 및 공중도덕, 타인의 권리 및 자유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결사의 자유

범위

결사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연합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다른 정당의 설립과 운영을 금하는 엄격한 일당 체제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 연합체의 결성과 그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당, 종교 집단, 상업적 조직 또는 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국가나 민간당사자의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연합체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 권리를 민간당사자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사의 자유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노동조합 권리는 CESCR 제8조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Box 73

‘터키 사회당(STP) 외 v. 터키’ 사건 (유럽인권법원, 2003년)

터키 사회당(STP)은 1992년에 결성되었으나, 1993년 11월 30일 터키 헌법재판소는 이 당의 사업이 국가의 영토 보전과 국가의 결속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STP가 쿠르드족의 자결권을 추구하고 “독립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당의 관점을 테러 집단의 관점에 비유하였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무엇보다도 당 해산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ECHR 제11조에 의해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STP의 해산은 진정인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정치적 집단이 국민의 일부 계층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모든 관련 집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찾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고자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치적 집단을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STP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판결을 내렸으므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STP가 터키에서의 테러 행위로 인한 문제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유럽인권법원에 따르면 당 해산 명령은 민주사회에서 지나치고 불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한

결사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와 동일한 제약을 받는다. 즉,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 명시되어야 하고,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개입을 정당화하는 여러 목적들 즉,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타인의 이권과 자유 보호 중의 하나를 이유로 하여야 한다.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연합체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옹호를 금지하는 CCPR 제 20조 (2)항에 따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한다.

◆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UDHR 제21조

-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3) 국민의 의사는 정부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CCPR 제25조

- “모든 시민은 자신의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선거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참정권은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이에 따라 국회에도 중요한 권리다. 이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면 국회의 민주적 성격과 궁극적으로 정부와 그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이 권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 공무 참여에 대한 일반적 권리
- 투표 및 피선거권
- 공직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공무 참여에 대한 일반적 권리

공무 참여권은 (a)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공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b) 직접적인 공무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간접적 참여

사람들이 공무의 수행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며 정부에게 책임을 무는 것은 주로 선거와 대표 기구의 구성 - 특히, 국회 - 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유권위원회는 대표 기구의 권한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여야 하고 자문 기능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대표들은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일반 논평 25호).

국회가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진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길지 않은 주기로 실시되어야 한다. 1994년 IPU는 ‘자유공정선거 기준 선언(Declaration on Criteria for Free and Fair Elections)’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은 투표와 선거권의 기준들, 후보, 정당 및 유세의 권리와 책임, 국가의 권리와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유엔도 - 선거 지원 및 선거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 선거법과 절차의 공통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직접적 참여

직접적 참여란 선출된 대표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선출된 대표와의 공개적 논의 및 대화, 국민투표, 국민 발의를 통해, 또는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 자체 조직화를 통해, 공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샬(Marshall) v. 캐나다’ 사건(1991년)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직접적 참정권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Box 74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준에 관한 IPU 선언(1994)

의회의 권위는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의 다양성을 성실하게 반영하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여 선거가 조직되는 방식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IPU는 선거 기준의 형성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작업의 중요한 결과는 1994년에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준에 관한 선언”이다. 그것은 주로 선거에 관한 국제법과 국가관행의 내용과 규정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였다. 즉 선거법으로부터 투표, 여론조사, 투표 계산, 결과 공표, 진정 조사 및 논란 해결 등 전체 선거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은 투표 및 선거권; 후보, 당, 유세 및 책임; 국가의 권리와 책임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런 주제에 관한 세계적인 정치적 합의를 표현한 첫 문서인 이 선언은 많은 나라에서 선거의 지침(guideline)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주적 국가에서 공무의 수행은 이를 목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와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분명히 공무의 수행은 국민의 상당 부분 또는 심지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청회나 가장 관련된 집단과의 협의와 같은 사전 협의가 법에 명시되거나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공정책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규약 제25조 (a)의 규정을 그 규모에 관계 없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은 공무 수행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해석으로는 시민에 의한 직접 참여권이 제25조 (a)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게 된다.

투표 및 피선거권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적 제도로서의 국회,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주의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권리다. 이 권리의 적절한 이행과 실현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들을 인식하는 방식,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정당성, 국회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회의 본질과, 대표를 통한 국민의 지배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권리의 위반은 국회의 정당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 가장 심각한 경우에 - 법과 질서, 국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회의원은 투표 및 피선거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는 수호자다.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인 인권, 특히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독립적인 사법절차와 마련되고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의지가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투표 및 피선거권은 비차별과 선거 과정에 대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접근성 원칙을 기반으로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선거 참여는 국가의 시민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지만, 신체적 장애, 문맹, 교육 배경, 정당 가입 또는 재산 상태 등과 같은 불합리한 이유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협박이나 강요와 같이 등록과 투표를 조종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선거는 “1인 1표”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구 구획 결정과 투표 배분 방식에 있어 유권자의 분포도가 왜곡되거나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맹, 언어 장벽(소수민족의 언어로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 또는 이

동의 제약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강압이나 투표 의향이나 선호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비밀 투표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피선거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는 최저연령과 같은 일부 제약이 주어지지만, 그러한 제약은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체적 장애, 문맹, 교육 배경, 정당 가입, 재산 상태 등은 절대로 피선거권의 제한조건이 될 수 없다.

또한, 후보 추천기한, 수수료 또는 공탁금과 관련된 조건들도 합리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미국의 공직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할 금전적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부담이 피선거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투표 절차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자유롭게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기적인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며, 투표권이 실제로 모든 시민에 의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 중의 대표적인 예로,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관할 기관의 설치를 들 수 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함의 보안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투표가 종료되면, (국제) 참관인, 후보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공직과 관련하여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이 임명 기준 및 절차, 승진, 정직 및 해고에 두루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기준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감독 기능을 통해 접근 조건, 현행 제약, 임명, 승진, 정직, 해고 및 해임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사법적 검토 또는 기타 검토 기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 매체와 정당

끝으로, 시민, 후보 및 선출된 대표들은 정치적 문제에 관한 정보와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교류하며, 평화적 시위 및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적 자료를 발간하며 선거 유세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적인 출판과 자유로운 언론 - 위와 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 - 과 정당의 설립 및 그 가입 가능성을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존중은 민주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는 빈곤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빈곤의 해결은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을 증진, 보호하는 열쇠다. 그러므로 주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경제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사회·경제적 경향과 개발

급속한 세계화는 인권의 향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분야에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잘 알려져 있다.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는, 이동과 통신의 증대, 무역과 자본 이동의 확대, 세계화로 인한 기술적 진보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개발과 경험, 이상, 가치, 열정의 창의적 공유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는 또한 “빈곤, 실업 및 사회 분열(disintegration)의 심화를 동반”한 점이 강조되었다.³⁵⁾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탈규제, 자유화, 민영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정부의 기능들을 시장에 이전하는 유사한 경향들은 교육, 의료, 식수에 대한 권리와 노동권의 향유 - 특히, 취약집단의 경우 -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열거하고, 국가

35)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Copenhagen Declaration on Social Development*, paragraph 14.

의 의무와 그러한 권리들을 이행하려는 국가의 능력이나 의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인권침해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human rights abuses)”로 이어졌다. 많은 국가에서(소위 ‘실패한 국가들’만이 아니라) 정부간 단체, 초국적 기업, 민간보안 업체, 준군사적계열라 세력, 조직범죄 및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정부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교도소 민영화에 대해서는 Box 57 참조).

➤ Box 75

세계화와 인권

2000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두 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세계화와 그것이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게 하였다. 2001년에 제출된 경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화의 밝은 측면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고한 전 지구적 통신 및 기술 발전을 검토하는 데 있어, 그러한 현상은 ‘현격한 불균형의 바다’로 묘사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치명적 질환, 기아, 부적절한 의류, 부족한 주거, 노동의 혼란(labour dislocation)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광물과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과 착취가 심화되면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화가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불화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면서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에는 참여, 배제 및 차별 - 인권의 총체(總體, corpus)를 구성하는 많은 도구들의 핵심에 놓여 있는 인권 체제의 특질 - 에 관한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정치(학)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 경제와 거버넌스의 대안적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두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화는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산물이다.” “즉, 세계화는 특정한 이념, 이해관계(interests) 및 제도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가 가져다준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창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계화와 그것이 인권에 미치는 과급효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결정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와 포용의 원칙을 고수하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다.”³⁶⁾

부국(富國)과 빈국(貧國) 간 격차, 동일한 사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간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 주거지, 교육,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곳의 생활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부유한 사회와 빈곤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며 빈곤 퇴치를 위한 첨단 과학 및 기술의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구촌”에서 인류의 상당 부분이 궁핍한 생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빈곤 퇴치

“빈곤 퇴치는 새로운 천 년을 맞아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 감소와 극빈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 인권의 부정(denial)은 빈곤에 내재된 특성이다.”

전 유엔인권최고대표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가이드라인 초안: 빈곤감소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

(Draft Guidelines: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의 전문

(OHCHR, Geneva, September 2002)

36) J. Olaka-Onyango and Deepika Udagama,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ogress report on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Sub.2/2001/10, paragraphs 7, 10,11 and 12

앞서 살펴본 견지에서, 빈곤 퇴치는 지난 10년간 개발의 최대 목표로 등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빈곤의 정의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오랜 기간 빈곤층은 물질적 차원으로만 묘사되었지만(가령, “1일 생활비가 1달러 미만인 자”), 실제로 충격적인 부분은 빈곤의 비물질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빈곤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통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억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충분치 않으며,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고,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매일 34,000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기아와 예방가능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혀 새로운 게 없으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서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빈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9월 유엔 총회는 몇 개의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극빈층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동일한 기간 내에 보편적 초등교육, 5세 미만 유아사망률 2/3 감소, 모성 사망률 3/4 감소 그리고 기아와 안전한 식수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인구수 반감 등의 야심찬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빈곤 상황에서는 여러 인권의 부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빈곤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 2001년 7월에 사회권규약(CESCR)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였던 메리 로빈슨은 전문가 세 명의 도움을 받아 ‘가이드라인 초안: 빈곤감소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Draft Guidelines: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2002년 9월 발간)을 작성하였다. 빈곤의 정의에 있어, 최초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주창한 뒤 널리 인정되고 있는 관점, 즉 가난한 사람이란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며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박탈당한 개인이라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구성적(constitutive) 측면에서 빈곤과 관련이 있는 권리의 예로는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을 들 수 있다. 다른 인권들은 빈곤과 도구적(instrumental) 관련성을 지니는데, 즉 이러한 권리들의 향유가 구성적 관계의 인권 향유에 기여한다. 가령,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 식량권, 건강권 및 주거권과 같은 다른 인권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체의 안전

에 대한 권리, 재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및 기타 정치적 권리와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들도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도구적 의미를 지니는 권리다.

➤ Box 76

유엔 새천년발전목표

1. 극빈과 기아 퇴치

- 2015년 목표: 1일 생활비 1달러의 극빈층 인구나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2015년 목표: 모든 남녀 아동이 초등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

3.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증진

- 2005년, 2015년 목표: 2005년까지는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2015년까지는 모든 단계에서 남녀 격차 해소

4. 유아사망률 감소

- 2015년 목표: 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을 2/3 감소

5. 모성보건 향상

- 2015년 목표: 출산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을 3/4 감소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의 퇴치

- 2015년 목표: HIV/AIDS의 확산과 말라리아와 기타 주요 질병의 발병률을 감소로 전환

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국가정책 및 사업에 통합시키고, 환경 자원의 감소 방지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50% 감소,
-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자들의 생활을 대폭 개선

8. 원조, 무역, 채무면제를 목표로 한 개발의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국가적,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개발, 빈곤감소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는 개방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개발

- 가장 저개발된 국가의 특별한 수요와, 내륙 및 작은 도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를 해결하고자 노력
-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
-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 개발
- 제약업체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수 의약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 특히 정보통신기술 - 의 가용성 증대

국제금융기관과 빈곤퇴치 노력

1996년부터 국제금융기관들은 빈곤감소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Institutions)로 알려져 있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종합개발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빈곤감소를 채무면제와 개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높은 채무를 안고 있는 국가들과 기타 빈곤국들에게는 참여적 절차를 통해서, 식량 생산, 보건, 교육, 노동, 사법(justice), 바람직한 거버넌스, 민주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감소 및 퇴치를 목표로 명시한 ‘빈곤감소전략서(PRSPs)’를 수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계화와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로부터 거시경제적 질서(discipline)만을 고집하고, 지역 차원에서 소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요구는 효과적으로 부인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Box 75 참조).³⁷⁾ 유엔인구기금(UNFPA)의 의뢰로 2001년까지 44개 개발도상국에서 인권을 포함한 빈곤감소전략서가 인권을 포함한 7개의 인구관련 주제와 개발 문제를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 국제조약과 명확하게 연계된 인권 이슈들이 가장 낮게 다루어졌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권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³⁸⁾

37) Oloka-Onyango and Udagama, op.cit, paragraph 53.

38) Coverage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themes in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UNFPA, 11 March 2002.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의 부가가치

빈곤감소와 개발 전반에 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의 부가가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앞서 언급한 ‘가이드라인 초안(Draft Guidelines)’은 ‘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한다.

인권기반 접근법은 빈곤감소 전략의 수립을 위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규범적 기본틀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빈곤감소는 빈곤층에 대한 권한부여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의 규범과 가치들은 그러한 권한부여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단 그러한 접근법이 채택되면, 빈곤감소는 더 이상 단순히 빈곤층의 욕구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동반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빈곤감소는 더 이상 자선이나 도덕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부간 기구 및 국제적 행위자들을 포함한 그런 주체들이 책임져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된다.

법적 의무, 책임성, 권한부여 등의 개념 외에도, 인권기반 접근법의 다른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편성, 비차별과 평등, 참여,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정 원칙이 있다. 몇 개의 유엔 기구와 프로그램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법적인 강제적 자격의 측면에서 인간 개발과 개발의 목적을 정의하는데 인권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권리 소지자와 그들의 자격)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 소지자(와 그들의 의무)를 파악하고 보편적 기준을 평가측정을 위해 지역적으로 확정된 목표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책임감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인권이 아직까지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의 개발 및 이행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권통합에 관한 유엔의 전반적 정책으로 인해 유엔개발 계획(UNDP), 브레튼우드 체제 및 기타 다자간, 양자간 재정지원 기관의 활동에서 빈곤감소 전략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 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 주로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근거로 하

여 -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실질적 현안을 조명하고자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사회권규약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이상적으로 말해,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을 벌어들이고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개인의 능력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는 1952년의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제102호)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 의료보호
- 요양급부금
- 실업급부금
- 노령급부금
- 산재급부금
- 가족·출산급부금
- 질병급부금
- 유족급부금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고용소득의 단절과 관련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사업(social insurance programmes)’과 취약계층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부조사업(social assistance programmes)’으로 구분한다. 두 유형의 사업 모두 적정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고 빈곤과 물질적 불안정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발도상국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 전반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된 국가는 거의 없다.
-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집단(아동 또는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크다.
- 사회보장제도는 흔히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을 제공하는 긴급구제 사업이다.

개발도상국이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난관에는 빈곤, 행정적 무능력, 채무, 국제금융기관이 강제한 구조조정 정책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요인들

사회보장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에 있어, 국가와 특히, 국회는 다음의 권고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국가행동계획 - 목표, 측정가능한 성과 지표, 명확한 일정을 포함 - 을 작성하여야 하며, 권리 실현 진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 법제는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명시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집단(가령, 고령층, 빈곤 가정 아동, 병자와 장애인)에게 최저 수준의 사회보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 사회보장 조치의 채택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행적 조치(사회보장급부금이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
- 잠정적 수혜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보장급부금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부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

> Box 78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6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9조에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다루면서 함축적으로는 고령급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의 조항들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온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령자도 이 규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규약 제6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권규약 제7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 (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을 제공하는 보수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특히 여성에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을 보장
-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b)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노동권

노동권은 우선적으로 개인이 경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와 함께 실업자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한다.

사회권규약 제6조 (1)항에 명시된 자유로운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일자리와 자원 접근성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계비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인권의 맥락에서 볼 때, “노동”은 단순한 “임금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노동이 생활의 다른 활동과 측면에 통합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든(가령, 원주민들의 경우) 작든 간에(가령, 임금노동자의 경우) 노동은 항상 집단 또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 집단 또는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수행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인정받고 보수가 지급된다.

➤ Box 79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제1조에 의한 노동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

- 완전고용의 달성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가능한 안정적이고 높은 고용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국가의 우선 목표 및 책임으로 인정한다.
-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무상 고용서비스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 적절한 직업지도, 훈련 및 재활을 제공하거나 촉진한다.

정책 또는 사업을 통해 노동권과 그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노동 접근성과 관련하여 차별이 금지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법률

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특정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전반적으로 노동자가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통해 자신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고용정책의 주된 목표는 자국의 자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회적 급여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고용정책은 공공노동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국가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직업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무상 고용서비스가 실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권리

사회권규약 제7조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보수
 -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 노동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 근속연수(seniority) 및 능력을 근거로 하는 동등한 승진 기회
- 합리적인 노동시간, 휴식, 여가, 정기 유급 휴일 및 유급 공휴일

따라서 국회의원은 다음의 주요 요소들이 법에 명시되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동자와 그 가족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최저임금과 강제

노동의 금지

- 안전하고, 건강하며,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는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
-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 다음과 관련하여 직장내 차별 금지(특히, 여성, 소수집단, 장애인, 종교집단에 대한 차별)
 - 임금: 보수는 항상 동일노동에 대해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승진 기회: 이러한 기회는 동등하게 근속연수 및 성과를 기준으로 주어져야 한다.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5조

-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사회권규약 제11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사회권규약 제12조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발병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 어떻게 보면 - 포괄적인 혜택인 사회적 권리인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앞서 다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외에 이 권리는 다음의 권리들을 포함한다.

-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적절한 의복에 대한 권리
- 주택에 대한 권리
- 건강권

사회규약권 제11조는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핵심 부분(의·식·주)을 다루고 있으며, 생활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

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권규약 제11조에서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식수에 대한 권리도 이끌어내고 있다.

전 세계의 기아와 빈곤은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권리는 모든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의 기아 및 빈곤감소 계획과 전략에 기반을 두어 수립되어야만 한다.

식량권

국제사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중요성을 종종 재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이 분야에서 국제법 기준과 세계 여러 지역의 실제 상황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8억 4천만 명 이상이 만성적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 내전, 전쟁과 정치적 무기로써 식량 사용으로 기아에 고통당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영양실조, 영양결핍 그리고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및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되는 다른 문제점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일부 국가들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시하였다.³⁹⁾ 따라서 이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는 영양결핍 인구의 수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고, 첫 번째 새천년발전목표는 1일 생활비 1달러 미만인 인구의 비중과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이 점진적으로 기아를 줄이는 데 성공하여 왔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만성적 영양결핍 상태인 사람들의 비중이 1995-97년과 2000-2002년 사이에 지속적으

39) CESCR, general comment No.12 (1999).

로 느린 감소세를 보였지만, 영양결핍 인구의 수는 실제로 1천 8백만 명이 늘었다. 2000-200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5천 2백만 명이 영양결핍인 것으로 추산되었다(이중 9백만 명은 산업선진국, 2천 8백만 명은 전환기 국가, 8억 1천 5백만 명은 개발도상국).⁴⁰⁾

기아 감소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NP는 영양결핍이 증가한 국가들(연간 0.5%)에 비해 5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연간 2.6%).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은 농업 성장속도도 더 빨랐으며, 반면에 HIV/AIDS 감염률과 인구증가 속도는 더 낮았다.⁴¹⁾

식량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기아와 영양실조는 결코 운명이나 자연의 전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 것이다.”

*식량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장 지글러(Jean Ziegler).
식량권 보고서(E/CN.4/2001/53) 2001. paragraph 6*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본질적인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다른 인권의 향유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권리다.

식량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단독으로나 공동체로나 항상 적절한 식량 또는 그 조달을 위한 수단에 대해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실현된다. 이것은 정부가 모두에게 무상으로 식량을 분배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보호하고 실현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40)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4, Rome, 2004

41) Ibid.

식량에 관한 기본법

사회권규약에 의해 국가들은 식량권의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며 그러한 취지로 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기아로 고통 받는 시민들은 바로 이 규약을 들어 국내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경우(실제로 매우 드문 경우)나 또는, 이 규약이 국내법으로 통합된 경우에만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는 국가가 식량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가 식량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본법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해 왔다.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12호는, “기본법은 그 법의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대상 및 목표 그리고 그러한 목표치의 달성을 위해 정해진 일정,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수단으로 특히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국제사회와의 협력 계획, 그 과정에 대한 기관별 책임, 가능한 상환청구(recourse) 절차와 이행 감시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벤치마크와 기본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당사국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기본법 제정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와 활동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기본법은 식량 및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에 관한 국가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한 주요 도구로써 채택되어야 한다.

헌법과 국내법을 검토하고, 헌법과 국내법이 식량권에 관한 국제인권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데 있어, 식량이나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차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요구된다.

1. 빈곤층과 취약하거나 차별 받는 사회계층을 포함한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식량접근성을 보장한다.

어떠한 행위도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가령,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그들의 토지에서 퇴거시키는 행위, 고의적으로 또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유독물질을 먹이 사슬에 유입하는 행위, 생산적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 민간인에 대한 구호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 등).

기업이나 개인이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보호 의무에 따라, 가령 한 기업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거나 독점기업이 식량 시장 또는 종자 공급을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2. 특히,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토지와 기타 재산을 상속받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완전하고 동등한 경제적 자원과 대출금, 천연자원 및 적절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한다.

자원과 생계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그 이용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 사람들은 식량을 구입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임금 또는 토지접근성을 지닌다.
-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그들의 자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가령, 고용전망 개선, 토지 무소유층을 위한 농지개혁 사업, 또는 아동영양 개선을 위해 학교에 무료 우유 공급 등을 통해) 그들에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3.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품위 있는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자영업과 임금 노동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성별, 인종 또는 기타 차별적 기준에 의한 차별은 노동자의 자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므로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토지 등기 유지

정부는 원주민들이 조상의 토지에 대한 갖는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외진 지역(산간지대나 사막)의 소규모 생산자와 농업종사자를 지원 등을 통해 특히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는 적절한 농민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만 한다.

식량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연재해 및 기타 재해를 포함하여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이유로 자급할 수 없는 경우 언제라도 제공되어야 한다(지원 형태는 직접 식량배급, 현금 이전(cash transfer) 또는 노동을 연계한 식량배급 프로그램(food-for-work programmes) 등이 있다).

즉각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점진적 실현 대상으로, 이는 국가가 그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즉각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 자원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의 의무들은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식량과 그 조달을 위한 수단과 혜택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삼간다.
- 기본적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이로써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 역행하는 조치들을 삼간다.

의복권

적절한 의복에 대한 권리는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서 (사회보장권과 식량권 다음으로) 세 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정부는 국민들 특히, 소수집단

구성원들과 원주민 들이 옷을 입는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을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복장 규정, 괴롭힘, 그와 유사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빈곤층, 피구금자, 난민, 국내 유민을 포함하여 곤궁에 처한 이들에게 적절한 의복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복의 형태는 현지 조건(즉, 문화적, 사회적, 기후 조건)에 좌우된다. 적어도 빈곤층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의복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주택권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는 협소하게 자신의 머리 위에 지붕을 얹고 있어야 하는 권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무숙(無宿, Homelessness)은 주택권이 부정된 극단적인 형태로 빈곤의 한 구성요소다. 그러나 과밀, 하수처리시설 미비, 오염, 계절적 극한 상황, 식수와 기타 인프라 접근성 결여 등의 문제를 안고 빈민가나 외딴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불안한 상황도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부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새천년발전목표에는 이 분야에 대한 세부적 목표 즉, “2020년까지 최저 1억 명의 빈민가 거주자들의 삶을 대폭 개선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주택권 : 구성요소의 실현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4호는 이 권리에 아래와 같은 세부적 관심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a. 보유기간의 법적 보장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보유기간 보장 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보유기간의 법적 보장 증서를 소지하지 않는 가구에 그러한 보장을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둔 즉각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그 영향을 받는 개인, 집단과의 협의를 거쳐 취해져야만 한다.

b. 서비스, 물자 및 인프라의 가용성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의 모든 수혜자는 천연자원과 일반자원(깨끗한 식수, 조리에 필요한 에너지, 난방과 점등, 위생, 세면시설, 식품저장시설, 폐기물 처리, 현장 배수 및 긴급 서비스)에 대해 지속가능한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

c. 부담가능한 비용의 주거지

주거와 관련된 개인 또는 세대별 비용은 다른 기초적 수요의 만족도를 손상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주거 지원금은 부담가능한 비용의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수준의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행동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가령, 장애인, 고령자, 소수집단, 원주민, 난민, 국내유민 등)에 우선순위를 둔 저소득층 주택 마련을 위한 공공지출 프로그램과 주거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공하지 않은 물질을 주요 주택건설 자재로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자재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당국에 의해 취해져야만 한다.

d. 거주하기에 적당한 주거지

적절한 주거지가 되려면, 거주자에게 적당한 공간이 제공되고 추위, 습기, 열, 비, 바람 또는 기타 건강에 위대한 요소, 구조적 위험, 질병 매개 곤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거주자의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e. 접근가능한 주거지

적절한 주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곳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취약집단에게는 적절한 주거 자원에 대해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아동, 장애인, 말기 질환자, HIV 양성자, 지속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 피해자, 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은 주거와 관련하여 우선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주거 관련법과 정책은 이러한 사람들과 기타 취약집단의 특별한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f. 적절한 위치

또한, 고용, 보건의료 서비스, 학교, 육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오염된 장소나 오염원에 근접한 곳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g. 문화적으로 적절한 주거지

주택 건설, 사용되는 건축 자재 및 기본 정책 등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여야만 한다. 주거지의 문화적 측면이 주택 개발 또는 현대화 공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방대한 권리 목록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복잡다기한 측면의 일부를 잘 보여주며, 국가가 국민의 주택 수요를 충족해야 할 법적 의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분야를 보여준다. 이러한 요건의 수준에 미달되는 조건에서 생활하는 개인, 가족, 가계, 집단 또는 공동체는 자신들이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적절한 주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 이 권리가 다음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자의적 철거
 - 강제 또는 자의적 퇴거
 - 민족적,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격리 및 변동
 - 차별
 - 괴롭힘과 그와 유사한 간섭
- 무숙자의 수를 줄이고 그들에게 모진 날씨와 건강상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적절한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적, 준사법적, 행정적 또는 정치적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빌라 라 돌체(Villa la Dulce) 사건: 사회주택계획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사법적 조치로 구제⁴²⁾

2000년 10월, 이전에 불안한 주거 조건에서 생활하던 여러 가족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빌라 라 돌체라는 10년 이상 비어있었던 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1년 7월에 판사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180명의 사람들에게 즉각 퇴거를 명령하였다. 그들은 사법명령에 따라 퇴거하였지만 갈 곳이 없어서 그 건물 주위의 인도와 차로에 판잣집을 지었다. 몇몇 관리의 도움으로 지방 당국과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1년 11월에는 정부가 퇴거자들에게 60일 이내에 살 곳을 제공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합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지역 NGO의 도움을 받아 퇴거자들은 아르헨티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적절한 주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적 행동을 취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판사는 현장을 방문한 뒤에 적절한 주거 건설을 위한 시 예산 기금에서 미화 500,000 달러를 가압류하라는 잠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퇴거자들을 시내 호텔로 이동시킨다는 사법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문제로 퇴거자들과 재협상을 벌였고, 적정 주거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최종 합의가 2003년 12월에 체결되었다. 이 합의에는 91채의 주택 건설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시공 사업자 선정에 있어 무숙 노동자가 직원의 20% 이상인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며, 우선 구입선택권을 가지는 주택을 임대하고, 수혜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특별 재정 편의가 제공되었다.

이 사건은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권을 강행하기 위해 사법적 전략과 소송을 사용함으로써 주택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강권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기본틀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사회권

42) *Housing and ESC Rights Law Quarterly*, Vol.1-No.1, pages 1-4 참조

규약 제12조는 이러한 권리를 부연 설명하고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약속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단지 질병이나 연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⁴³⁾ 따라서 건강권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될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인권 및 다양한 인권 이슈와도 중첩되는 포괄적인 권리다. 1997년, 제4차 국제건강증진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에 참석한 국가와 NGO, 민간부문 대표들은 ‘21세기 건강증진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Jakarta Declaration on Leading Health Promotion into the 21st Century)’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건강권의 포괄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강권의 향유를 위한 정책의 요건들을 “평화, 주거지, 교육, 사회보장, 사회적 관계, 식량, 소득, 여성의 권한 강화, 안정된 생태계,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사회적 정의, 인권 존중과 평등으로 확정하고, 무엇보다도 빈곤은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권의 확대된 의미와 건강과 식량, 주택 및 생명에 대한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협의를 건강권

핵심적으로 접근하면, 건강권은 아래와 같은 네 개의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성, 아동 및 생식적 건강
2. 건강한 일터와 자연환경
3. 필수 의약품과 기초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4.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43)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inciples, 1946

건강과 빈곤

개발도상국들과 서방국가들에서 건강상 문제와 빈곤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덜 건강하고, 더 일찍 사망하며, 유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더 높다. 이와 동시에 질병은 소득 손실과 의료비용 지급을 통해 빈곤을 심화시키며, 빈곤주기는 하향 나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층의 건강 증진은 핵심적인 개발 목표다.

여덟 개의 새천년발전목표 중에서 세 개는 2015년까지 구체적인 건강 개선에 관한 것으로 유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감소, HIV/AIDS, 말라리아, 결핵의 확산 억제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건강은 첫 번째 새천년발전목표인 빈곤과 극심한 기아퇴치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요소다.

건강은 개발과 빈곤완화에 여러 면으로 기여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인적자본을 개선하며, 국가저축률을 높인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투자는 여러 긍정적인 외부적 이득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조치다.

건강권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는 자체 기능과 권한을 활용하여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권의 향유는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일차적 보건의료, 국가공중보건전략 및 행동계획, 국가보건지표, 벤치마크 및 모니터링 체제 수립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문제와 예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은 필수적이며, 국회는 그런 사업과 건강관련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 빈곤층, 여성, 아동, HIV/AIDS 감염자 등과 같은 특정 집단에 관한 건강 관련 이슈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집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 정책과 충분한 의료 예산이 필요하다.

빈곤층과 관련하여, 주요 건강관련 이슈에는 보건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 적절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 도입, 기초적 환경 대책(특히, 쓰레기 처리)의 이행이 포함된다. 국회 구성원들은 관련법 제정, 법 이행 보장, 빈곤층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있어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여성의 보건, 의료 및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은 여성성기절단(FGM)을 금지하고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⁴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는 사업을 시행하고,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점 및 위생과 환경적 청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아동에게는 교육, 훈련,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교육, 훈련,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및 여가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끝으로, HIV/AIDS 감염자 - 2004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에 육박하였다⁴⁵⁾ - 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의료검진 비

44) 2001년 9월, IPU는 여성성기절단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PU 웹사이트 <http://www.ipu.org/wmn-e/fgm.htm>에서 찾을 수 있다.

45) UNAIDS 집행국장 피터 피오트(Peter Piot)의 2004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연설에서 인용

용이 지급되어야 하며, 의약품이 정기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⁴⁶⁾

물에 대한 권리

의·식·주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5조와 사회권규약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외에,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는 다른 기초적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2002년 11월에 채택한 일반논평 15호에서 “물에 대한 인권”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보장 내용의 범주에 분명히 해당되며, 특히,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고 언급하면서 물에 대한 권리가 포괄적 권리인 적정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필수적 요소라고 확인하였다. 물에 대한 권리는 여성차별금지협약(CEDAW) 제14조 (2)항과 아동권리협약(CRC) 제14조 (2)항에도 언급되어 있다.

물에 대한 권리란 무엇인가?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개인적 또는 가사 용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며, 비용부담이 가능한 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과 같은 다른 여러 권리들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 물의 적절성(water adequacy)을 구성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다음의 요소들은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가용성(availability): 모든 사람에게 개인 또는 가사 용도로 충분한 양의 물이 정기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 물은 보통 식수, 개인위생, 세탁, 음식 조리, 하수 및 집 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일부 개인과 집단의 경우에는 특별한 건강, 기후 및 업무상 조건으로 인해 추가로 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질(quality): 개인 및 가사 용도로 제공되는 물은 안전하여야 한다. 즉, 건강

46) 이 주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andbook for Legislators on HIV/AIDS, La and Human Rights, UNAIDS/IPU, Geneva 1999 참조.

에 해로운 미생물, 화학물질 및 방사물이 없어야 한다. 색, 냄새, 맛은 다양한 개인 및 가사 용도에 적절하여야 한다.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한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물과 수도 설비 및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물리적 접근성: 모든 인구 집단에 대해, 물과 적절한 수도 시설 및 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가능한 물이 모든 가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사업장에 또는 근접한 곳에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모든 수도 시설과 서비스의 질은 충분히 양호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여야 하며, 성별, 인생 주기, 사적 필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수도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물리적 안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 물과 수도 시설 및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부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간접적 비용과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며,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권리들의 향유를 저해하거나 위협하여서는 안 된다.

비차별적 접근성: 법으로, 관행적으로 물과 수도 시설 및 서비스는 가장 취약하거나 주변적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정보 접근성: 접근가능성에는 물 관련 이슈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물과 생명권

- 매년 2백 2십만 명의 사람들이 설사로 사망한다.
-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 공급과 위생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설사병으로 인해 영양, 교육 및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 약 3백 4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 어느 시점에서든지 15억 명의 사람들이 - 전 세계적으로 4명 중 1명이 - 환경에 방치된 인간 배설물과 고체 폐기물을 통한 기생충에 감염된다.⁴⁷⁾

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 유형

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 위반

- 수도 서비스나 설비를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단절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 물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하는 경우
- 수자원을 오염이나 감소시켜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 위반

- 물의 오염과 불평등한 취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발효하지 않는 경우
- 민간 수도 서비스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수자원 분배 시스템(가령, 송수관과 우물)을 방해, 손상, 파괴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경우

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 위반

- 모두에게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수자원정책을 채택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7) Glob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Assessment 2000 Report, Summary of the Report.

- 지출이 충분치 못하거나 공공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취약 집단 또는 주변적 집단을 포함한 개인 또는 집단이 물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국가적 차원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 지표와 벤치마크를 활용하여 물에 대한 권리 실현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 수도 설비와 서비스의 불공평한 배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긴급 구호를 위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 모든 사람이 최저 필수 수준 이상으로 그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지 않은 경우
-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국제조직과 협약을 체결할 때,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자국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활동이 물에 대한 권리의 향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먼저, 정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물의 가용성, 적합한 수질 및 접근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앞서 열거한 모든 조치들의 점진적인 이행은 궁극적으로 물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부의 조치들을 모니터링하고 촉진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정부는 모든 주민에게 개인 및 가사 용도로 알맞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 공급 및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수자원전략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과 행동계획에는 성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들(가령, 물에 대한 권리 지표 및 벤치마크)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취약 또는 주변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정부는 초국적 기업을 포함한 제3자가 깨끗한 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불공평한 취수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부는 수인성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특히, 적절한 위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교육을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항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사회권규약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회권규약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위와 같이 교육권은 국제법과 핵심조약에 명시되어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29조, 그리고 교육권의 향유에 관한 중요한 기준과 목표를 수립한 새천년발전목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빈곤퇴치를 위해 중요하며,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제한된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권은 다른 여러 인권의 실현을 위한 열쇠가 된다.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다룬 문화 및 홍보 수단을 통해 민주적 분위기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배양되고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과 특히 시민교육과 책임감 있는 시민사회의 형성에 힘써야 한다.”

국제의회연맹의 세계민주주의선언(1997년 9월, 카이로) 제19항

위에서 인용한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 조항은 당사국이 교육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완수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당사국과 특히 국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교육권을 다음과 같은 두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교육 접근성의 강화
2. 교육의 유형과 내용을 선택할 자유

빈곤과 교육⁴⁸⁾

전 세계적으로 1억1천3백만 명의 아이들(그 중 2/3는 여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또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국제적 목표에 맞추어 기초교육을 확대하며, 접근성과 적용 범위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21세기 초에는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는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다. 부(富)에 따른 취학과 학력의 격차는 빈곤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이러한 목표 달성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취학률과 교육성과는 빈곤층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가?

공급

우선, 빈곤층 아이들은 학교에 접근하기가 더 힘들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도시나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기니(Guinea)에서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시골지역은 47분인 반면에 도시지역은 19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의 물리적 접근성은 주요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간 여러 국가에서 교육 지출이 증가하였지만, 빈곤층의 수요에 각별한 관심이 수반되지 않는 지출 증가는 부와 연관된 불균형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여러 개발도상국들에서 얻은 증거 자료에 따르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활동이 교육관련 공공지출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남미의 경우, 학업 성취의 불균형은 빈곤층의 자녀가 주를 이루는 공립학교의 비효과성에 그 원인이 있으며, 빈곤층에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학교교육단계인 초·중등교육은 전체 교육지출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적 역량이 미비한 경우도 있다.

교과과정, 교재, 교수방법, 교사훈련, 교사·학생수 비율, 부모의 참여도를 포함한 교육의 질은 유지율(retention rate), 학업성취도, 시험점수와 같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한다.

수요

교육 수요는 가족에게 인식하는 반대급부(returns)에 의해 좌우된다. 이 반대급부에는 주로 예상 소득이 포함되지만, 건강과 낮은 출산율도 포함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받은 노동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전제하에서 평균 소득은 학교교육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교육으로 인해 예상되는 반대급부가 특히, 교육비용, 공립학교 교육의 낮은 질, 노동시장에서의 인종이나 언어 및 여성에 대한 차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아동권협약 위원회와 사회권규약 위원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조사 등 최근의 여러 조사에 의하면, 기초교육(십지어는 의무적인 기초교육도) 항상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은 교육제도의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빈곤층을 불리하게 한다.

이 두 요소는 또 다시 네 개의 의무 영역 즉,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응성(adaptability)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로 구성된다.

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가용성

- 모두를 위한 의무 무상 초등교육(아이들을 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교사 훈련프로그램
- 노조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는 교사들의 적합한 노동조건

48) “*People, Poverty, Possibilities*”, State of the World Population 2002,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서 발췌한 자료

모두를 위한 교육 접근성

-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중등 및 고등교육
- 비차별적인 교육 접근성
- 취약집단을 위한 적절한 교육지원제도
- 시골지역의 교육을 위한 적합한 재정
- 교육부문의 정책, 기관, 프로그램, 지출 경향 및 다른 관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

형식과 내용의 수용성

-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의 질을 보장하는 법규
- 최저교육기준(입학, 교과과정, 증명서 인정 등)과 관련 모니터 메커니즘
- 사설기관 설립권의 보장

교과과정의 적응성

- 학생과 교사의 실제적 필요에 맞춘 교과과정 설계와 교육재정

행동계획

교육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또한 합당한 정도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국가의무의 긴급한 정도는 모든 분야(기초,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서 동일하지 않다. 즉, 정부는 의무 무상초등교육의 도입을 우선순위로 하고 기타 단계에서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이 된 당시에 의무 무상초등교육을 보장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사회권규약 제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교육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2년 내에 작성되어 채택하여야 하며, 모두를 위한 의무 무상 교육 원칙이 국가교육계획에서 정하는 합당한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년이란 기한을 두었다고 해서 그 기한 내에 국가가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 국가의 이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105차 국제외연맹 이사회(IPC)는 “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
한 환경을 확보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빈곤 퇴치, 인구증가 둔화, 양성평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문화는 발전 과정의 기본적 요소임
을 강력히 주장한다.”

“남녀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필수요소이자 인류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교육과 문화”에 관한 결의(2001년 4월, 하바나), 제1항

인권은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다. 이런 점진적 변화 과정에서 국회 구성원들과 국회기구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역할은 그 과정의 모든 단계, 즉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의 대화를 개시하고 촉진하며 기준을 정립하는 기구를 지원하며, 법률 문서의 작성에 참여하고, 국제조약의 채택과 비준을 보장하며, 그 국제조약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하며, 이행을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공정, 평등 그리고 인권에 입각하여 이 세계를 재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 약어 목록 ◆

ACHR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미주인권협약, ‘코스타리카 산호세협약(Pack of San Jose, Costa Rica)’으로도 불림)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DAW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유엔 여성향상국)
DES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 경제사회부)
ECHR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식량농업기구)
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여성성기절단)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약)
IACHR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주인권위원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STRAW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유엔 국제여성향상연구원)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HRI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국가인권기구)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P	Optional Protocol (선택의정서)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빈곤감소 전략서)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 인구기금)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유엔 인간정주계획)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최고대표)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유엔 여성발전기금)
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유엔 훈련조사연구소)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유엔 팔레스타인난민 구호사업기구)
UNU	United Nations University (유엔대학)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부록

부록 1.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209
부록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국/영문)	226
부록 3.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국/영문)	235
부록 4. 세계민주주의선언(국/영문)	244
부록 5. 국제인권장전(국/영문)	255
1) 세계인권선언(UDHR)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ICCPR)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ICCPR)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부록 1 :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I.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1. 설립 배경

-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쿠바 등 비동맹측으로부터는 국가별 결의안 제도 운용의 선별성,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문제로, 미국 등으로부터는 소위 인권불량 국가의 위원국 진출에 대해 강한 비판에 직면
- 당시 코피 아난(Kof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인권이사회 설립을 위해 유엔 회원국간 적극적 교섭을 진행
- 2006. 3. 15, 총회 본회의에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 설립 관련 결의안(A/60/L.48)이 통과
 - ※ 설립 결의안 투표는 찬성 170, 반대 4(미국, 이스라엘, 팔라우, 마샬아일랜드), 기권 3(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으로 통과되었으며, 북한 등 14개국은 불참

2. 설립의 의미

- 유엔 설립 3대 핵심축(안보, 개발, 인권)의 하나인 인권의 중요성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확립
- 유엔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인 인권이사회가 설립됨으로써 유엔 개혁이 한 단계 진전

3. 인권이사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총 47개 유엔 회원국
- 선출 :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절대 과반수로 선출
 - 지역그룹 의석수 : 아시아 및 아프리카(각각 13석), 동구(6석), 중남미(8석), 서구(7석)
 - ※ 기존 인권위원회와 비교하면 이사국 수는 적어졌으나, 아시아 그룹의 의석수는 1개 증가

- 법적 성격 : 총회 보조기관
 - 총회는 5년 후 인권이사회 지위 재검토
 - ※ 기존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보조기관 성격
- 임기 : 3년(2회 연임 후 1년 수임 불가)
- 자격 관련
 - 이사국 희망국은 인권보호·증진 기여에 대한 자발적 공약(voluntary pledges) 제출
 - 중대한 인권침해시 총회 2/3 다수결로 자격 정지 가능
- 회기 : 연중 최소한 3회/ 총 최소 10주간 개최 및 특별회기
 - 특별회기는 이사국 1/3 다수결로 개최

4. 기존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 차이점

구 분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지 위	ECOSOC 산하기관	총회 산하기관으로 격상
규 모	53개국 * 아시아그룹(12개국)	47개국 * 아시아그룹(13개국)
선출방법	ECOSOC(54개국)에서 지역그룹별 배정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선출 (그룹별 endorse 가능)	총회 회원국(191개국) 절대과반수
자 격	자격 제한 없음	인권 공약국 총회 2/3로 자격정지 가능
개최빈도	연 1회/6주 * 특별회기 가능	준상설화(연중 최소 3회/10주 이상, 이사국 1/3 요구로 특별회기)
임무/ 기능	① 특정국가(Country-specific)의 인권 침해 상황 혹은 특정분야(thematic)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및 공개(특별절차) ② 규범 제정 및 이행(standard-setting and implementation) ③ 정부에 대한 자문 및 기술협력	① 유엔 시스템내 효과적 조정 및 인권의 주류화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 주제별 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 - 인권교육 및 능력배양 등 증진 ②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제도 신설

※ 더 자세한 사항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A/60/L.48) 참조

인권이사회 결의안(60/251)

유엔 총회는,

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간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인도주의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려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을 재확인하고,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및 기타 인권규약들을 상기하며,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강화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시됨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대우받아야 함을 재확인하며,

국가적,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국가는 정치경제, 문화적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유엔 헌장에 따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또는 종교, 정치나 다른 의견, 국적 혹은 사회적 위치,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위치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이 유엔 시스템의 기본이고, 집단안보와 복지의 기초라는 것을 인정하며, 개발, 평화와 안보와 인권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상호강화적임을 인식하며,

모든 국가가 계속해서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명, 문화, 종교 간의 이해를 확장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지역단체, 비정부기구, 종교단체와 언론기관용,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유엔 인권위원회가 수행한 업적을 인정하고, 이 업적을 보존하고 토대로 하며, 결점을 극복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인권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보편성, 객관성, 비선별성(non-selectivity)의 중요성과 이중잣대와 정치성의 배제를 인식하며,

인권신장과 보호가 협력과 실질적인 대화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회원국들이 인권의무를 준수하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비정부기구들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발권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모든 인권,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효율적인 향유를 목적으로 인권 기구들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이를 위한 인권이사회 창설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1. 유엔 총회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유엔 총회의 부속기구로서 제네바에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총회는 향후 5년 내에 인권이사회의 지위를 검토한다.
2. 인권이사회는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3. 인권이사회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어야 하며, 그에 대한 권고를 행한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유엔체제 내에서 인권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주류화해야 한다.
4. 인권이사회의 업무는 개발권을 포함한 정치, 사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편성, 공정성, 비선별성(non-selectivity), 건설적인 국제대화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인권이사회는 특히,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a) 회원국의 동의와 협의로 인권교육과 학습, 권고서비스, 기술지원, 역량 구축 증진

- (b) 모든 인권의 주제별 이슈에 대하여 대화의 장 역할
 - (c) 인권분야에서 더 나은 국제법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에 권고
 - (d) 국가들이 이행하여야 할 인권 의무에 대한 완전한 이행 및 유엔회의와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된 목표와 책무에 대한 후속조치
 - (e)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는 각 회원국이 인권의무와 의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평등한 방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검토는 상호대화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메커니즘으로, 해당국가의 완전한 참여와 그 국가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조약기구들의 업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지, 중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인권이사회는 1차 회기를 마친 후 1년 내에 범세계적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에 대한 부속조항을 성안하고 실제적 수행을 위한 발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 (f)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인권침해 방지에 공헌하고 인권관련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 (g) 1993년 12월 20일 일반총회 결의안 48/141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맡는다.
 - (h) 각국 정부, 지역 단체,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와 인권분야에서 협력한다.
 - (i) 인권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권고한다.
 - (j) 연례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한다.
6. 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 전문가 조인, 진정절차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의 모든 수임사항(mandates), 메커니즘, 기능 및 책임을 맡고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시키고 합리화시킨다. 인권이사회는 1차 회기 개최 이후 1년 이내에 이 사항을 검토한다.
7.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비밀투표로 직접 그리고 개별적으로 선출된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공평한 지역배분을 바탕으로 회원이 결정되고 의석은 아프리카에 13석, 아시아에 13석, 동유럽에 6석, 남아메리카와 캐리비안 해의 8석, 서부유럽과 기타지역에 7석으로 분배된다.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은 3년 동안 유효하며 2회 연임은 가능하나,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8. 인권이사회의 회원 후보는 유엔 회원국 모두이다. 인권이사회의 회원 선출 시, 후보국가의 인권증진 및 보호에 대한 공헌과 그에 따른 자발적 다짐 및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엔 총회는 3분의 2의 과반수 출석과 투표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행한 회원국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9. 또한, 인권이사회에 선출된 회원들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최고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회원자격 기간 중에 보편적인 정기검토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다.
10. 인권이사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최소 총 10주 동안의 회의 기간과 주요 회의를 포함한 연간 3회 이상의 회의를 가진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 회원의 요청과 이에 따른 인권이사회의 3분의 1 회원국의 지지로 특별회기를 개최할 수 있다.
11.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유엔총회 위원회들을 위해 확립된 절차 규칙을 적용한다고 결정한다. 또한,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포함한 옵서버, 특별기구, 기타 정부간 단체,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들의 가장 효과적인 공헌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참여와 협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1996년 7월 25일자 결의안 1996/31과 인권위원회가 따르고 있는 관행을 포함한 합의(arrangements)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2. 또한, 인권이사회의 업무방식은 투명하고,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성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 지향적이고, 권고와 이행에 관한 후속 논의를 허가한다고 결정한다. 또한, 특별절차와 메커니즘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13. 인권위원회가 제62차 회기에 업무를 종료하고 2006년 6월 16일에 해체하도록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한다.
14. 인권이사회 신입회원국을 선출하기로 결정한다. 신입회원국의 임기는 회원국 별로 다르게 규정될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공평한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하여 1차 선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5. 인권이사회 초기 회원 선거는 2006년 5월 9일에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이사회 1차 회의는 2006년 6월 19일에 개최되어야 한다.

16. 인권이사회는 설립된 지 5년 후 업무와 기능을 검토하고 유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reference to a Main Committee (A/60/L.48)] 60/251. Human Rights Council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achie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Reaffirming als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¹ and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² and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³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³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Reaffirming further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related,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and that all human rights must be treated in a fair and equal manner, on the same footing and with the same emphasis,

Reaffirming that, while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and various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must be borne in mind, all States,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have the duty to promote and protect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all States, in conformity with the Charter, to resp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or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cknowledging that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re the

pillar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nd the foundations for collective security and well-being, and recognizing that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and human rights are interlinked and mutually reinforcing,

Affirming the need for all States to continue international efforts to enhance dialogue and broaden understanding among civilizations, cultures and religions, and emphasizing that States, reg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igious bodies and the media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tolerance, respect for and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Recognizing the work undertaken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need to preserve and build on its achievements and to redress its shortcomings,

Recognizing also the importance of ensuring universality, objectivity and non-selectivity in the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issues, and the elimination of double standards and politicization,

Recognizing further that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and genuine dialogue and aimed a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Member States to comply with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for the benefit of all human beings,

Acknowledging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affirming the commitment to strengthe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achinery, with the aim of ensuring effective enjoyment by all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o that end, the resolve to create a Human Rights Council,

1. Decides to establish the Human Rights Council, based in Geneva, in replacemen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s a subsidiary organ of the General Assembly; the Assembly shall review the status of the Council within five years;

2. Decides that the Council shall be responsible for promoting universal respect for the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and in a fair and equal manner;
3. Decides also that the Council should address situation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cluding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thereon. It should also promote the effective coordination and the mainstreaming of human rights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4. Decides further that the work of the Council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s of universality, impartiality, objectivity and non-selectivity, constructive international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5. Decides that the Council shall, inter alia:
 - (a)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and learning as well as advisory services,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to be provided in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consent of Member States concerned;
 - (b) Serve as a forum for dialogue on thematic issues on all human rights;
 - (c) Make recommendations to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 (d)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taken by States and follow-up to the goals and commitment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emanating from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summits;
 - (e) Undertake a universal periodic review, based on objective and reliable information, of the fulfillment by each State of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in a manner which ensures universality of coverage and equal treatment with respect to all States; the review shall be a cooperative mechanism, based on an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full involvement of the country concerned and with consideration given to its capacity-building needs; such a mechanism shall complement and not duplicate the work of treaty bodies; the Council shall develop the modalities and necessary time allocation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within one year after the holding of its first session;

- (f) Contribute,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owards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spond promptly to human rights emergencies;
 - (g) Assume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lating to the work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s decid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48/141 of 20 December 1993;
 - (h) Work in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ith Governments, regional organiza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 (i)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j) Submit an annual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6. Decides also that the Council shall assume, review and, where necessary, improve and rationalize all mandates, mechanism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order to maintain a system of special procedures, expert advice and a complaint procedure; the Council shall complete this review within one year after the holding of its first session;
7. Decides further that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forty-seven Member States, which shall be elected directly and individually by secret ballot by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hip shall be based on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seats shall be distributed as follows among regional groups: Group of African States, thirteen; Group of Asian States, thirteen; Group of Eastern European States, six; Group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eight; and Group of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seven;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serve for a period of three years and shall not be eligible for immediate re-election after two consecutive terms;
8. Decides that the membership in the Council shall be open to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when electing members of the Council, Member Stat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ontribution of candidates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ir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made thereto; the General Assembly,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may suspend the rights of membership in the Council of a member of the Council that commits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9. Decides also that members elected to the Council shall uphold the highest standard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all fully cooperate with the Council and be reviewed unde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chanism during their term of membership;
10. Decides further that the Council shall meet regularly throughout the year and schedule no fewer than three sessions per year, including a main session, for a total duration of no less than ten weeks, and shall be able to hold special sessions, when needed, at the request of a member of the Council with the support of one third of the membership of the Council;
11. Decides that the Council shall apply the rules of procedure established for committees of the General Assembly, as applicable, unless subsequently otherwise decid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and also decides that the participation of and consultation with observers, including States that are not members of the Council, the specialized agencies,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s well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all be based on arrangements, including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of 25 July 1996 and practices observ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while ensuring the most effective contribution of these entities;
12. Decides also that the methods of work of the Council shall be transparent, fair and impartial and shall enable genuine dialogue, be results-oriented, allow for subsequent follow-up discussions to recommendat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and also allow for substantive interaction with special procedures and mechanisms;
13. Recommends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ques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conclude its work at its sixty-second session, and that it abolish the Commission on 16 June 2006;

14. Decides to elect the new members of the Council; the terms of membership shall be staggered, and such decision shall be taken for the first election by the drawing of lots, taking into consideration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15. Decides also that elections of the first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take place on 9 May 2006, and that the first meeting of the Council shall be convened on 19 June 2006;
16. Decides further that the Council shall review its work and functioning five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and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72nd plenary meeting

II.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

1. 개요

- 인권이사회가 192개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등에 비추어 정례(4년 주기)검토하는 제도
 - 매년 2주 기간 검토회의를 3회 개최, 1년에 총 48개국씩 검토
 - 각국별 검토 순서는 현행 이사국 및 자발적 희망국 우선, 지역그룹별 안배, 이사국 및 옵서버 국가 안배, 알파벳 순 원칙 하에 추첨으로 결정
 - 인권이사회가 각 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인권 NGO 등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해당국이 보고서 작성 제출
- 시행 배경
 - 구 인권위원회가 특정 인권우려 국가를 지목·공개 비난함으로써 정치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06. 6. 출범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모든 국가(universal)의 인권상황을 정기적(periodic)으로 공동검토(Peer Review)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이 도입
 - 특정국을 비난하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능력배양 및 자문제공에 중점
 - ※ UPR은 인권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interactive dialogue 형식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인권협약기구가 해당 당사국을 상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검토하는 절차(보고서 제출, 심의 및 권고)와 유사하나, UPR은 국제인권협약 검토 절차와 비교시 아래 사항이 상이
 - 국제인권협약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전 유엔 회원국이 대상
 -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여성권리, 아동권리, 고문방지, 인종차별철폐 등 모든 인권분야를 망라하여 검토
 - 47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이 검토 주체
 - 국가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분량 제한(A4 용지 20쪽 이내)
 - 검토 소요시간 : 3시간

2. 검토 절차

- 해당 국가, 인권기구, 특별보고관, 국가인권기구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권고 및 보고서 채택(나라별 3~4시간 소요)
- 검토대상 문서(심의 6주전 준비)

- 검토대상국이 일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가보고서(20쪽 이내)
- 조약기구, 특별절차, 검토대상국 등의 보고서, 평가 등을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가 취합·요약한 문서(10쪽 이내)
- 여타 관련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OHCHR이 10쪽 이내 요약)
- 검토 기관 :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Working Group)(회의 주재는 이사회 의장)
 - 옵서버 국가도 검토에 참여 가능(interactive dialogue 포함)
 - 여타 이해당사자는 실무그룹회의 참석(attend) 가능
 - 추첨으로 선출된 서로 다른 지역 그룹 3개 이사국으로 보고관 그룹 3개국 구성, 실무그룹 보고서 준비 업무 담당
 - 검토대상국은 상기 3개국 중 1개국을 자국 소속 지역그룹내 국가가 수입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1회에 걸쳐 보고관 국가 교체 요구 가능
- 결과 채택방식 및 후속조치
 - 검토 최종결과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Plenary)에서 채택
 - 결과보고서 내용 : 검토회의 과정 요약, 권고, 결론, 자발적 공약 등
 - 차기 검토회의는 이전 검토회의 결과 이행에 초점 부여
 - 인권이사회는 국가가 UPR에 대해 계속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비협조 문제를 제기해야 함.

※ UPR 준비 일반 지침(국가보고서 포함 내용)

- 보고서 준비를 위한 방법론 설명 및 광범위한 협의 과정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규범·제도 체계
 - 헌법, 법률, 정책수단, 국가 관할권,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의무의 범위 등
- 실제 인권보호 및 증진 현황
 - 국제 인권의무의 이행, 국내 법률 및 자발적 약속, 국내 인권기관 활동, 인권에 대한 공공인식,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등
- 업적, 모범관행, 과제 및 문제점
- 과제 및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행하려는 우선순위, 이니셔티브, 공약
- 능력배양 및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
- 이전 UPR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III.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1. 개요

- 인권이사회 결의안 5/1에 의거, 18명의 독립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를 인권이사회 정책연구소로서의 기능을 위해 설립
- 자문위원회는 과거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소위원회를 대체
- ※ 기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1947년에 설립, 본래 ‘차별금지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였으며 1999년에 개명
 - 2006년에는 26명의 전문위원(아프리카 7명, 아시아 5명, 남아메리카 5명, 동유럽 3명, 서유럽 및 기타 국가 6명)이 활동
 - 소위원회의 주 역할은 인권 이슈에 관한 연구, 모든 종류의 차별 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권고
 - 연구는 주로 각종 방면에 있어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법 행정, 소수자 인권의 보호와 차별 철폐 투쟁, 원주민과 기타 취약집단들에 초점

2. 기능 및 운영 방식

- 조사와 연구에 기초한 자문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이사회에 의해 요구된 방법과 형식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제공
 - 이러한 자문은 오직 인권이사회의 요구와 인권이사회의 결의안과 지도 아래에서만 제공
- 자문의 범위는 인권이사회 수임사항에 관련된 주제, 즉 인권 보호와 증진과 같은 논점에 국한
- 자문위원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범위 내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차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 역시 가능함.
- 자문위원회는 정부, 국가인권기구, NGO, 기타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작용을 인권이사회의 방식에 맞추어 확립시키도록 요구받으며,
- 상임이사국과 NGO뿐만 아니라 인권이사회의 회원이 아닌 국가, 전문화된 기관, 기타 정부간 기구, 그리고 국가인권기구를 모두 포함한 옵서버들에게

- 가장 효과적인 기여를 확보하여야 하며,
-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안과 인권이사회에 의해 준수되는 관행들을 아우르는 자문위원회의 조정에 기초한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야함.
 - 자문위원회는 연간 최대 10일 동안 두 개의 회기를 소집

부록 2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권한과 책임

1.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a) 정부, 의회, 그리고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로서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특권뿐 아니라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 (i) 인권의 보호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법과 관련된 조항은 물론 법률 및 행정입법의 조항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는 법안과 입법예고는 물론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행정법령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령들이 인권에 관한 근본적 원칙과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새로운 입법, 현행 법률의 개정, 행정조치의 시행이나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 (ii) 국가인권기구가 다루기로 결정한 모든 인권침해 상황
 - (iii)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구체적인 국내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 (iv) 국내의 어떤 지역에서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의견표명.
 - (b) 국내의 법률, 행정 입법, 관행과 그 나라가 당사국이 된 국제인권규범들 사

1) 이 원칙은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48/134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파리원칙 Paris Principles"이라고도 한다.

이의 조화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c) 국제인권규범의 비준 또는 승인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d) 조약에 정한 의무에 따라 유엔의 기구 및 위원회와 지역 인권기구에 국가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 준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보고서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련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e) 유엔 및 유엔 관련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나라의 국가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 (f)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 (g)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 4.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단체
 - (b) 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 (c) 대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5. 국가인권기구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갱신될 수 있다.

활동 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그 운영원칙에서,

(a)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혹은 그 구성원이나 진정인의 제안에 따라 직권으로 채택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

(b) 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c) 특히, 자신의 의견과 권고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접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야 한다.

(d)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

(e) 구성원들 가운데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및 지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f) 사법기관 및 (특히 옴브즈만과 중재인 및 유사기관과 같이) 그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책임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g)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 경제 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어린이,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 및 정신 장애인) 또는 특정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국가인권기구는 개별 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사안은 개인, 그 대리인, 제3자, 민간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밖의 대표성있는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들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 (a) 조정 또는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방법으로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b) 자신의 권리에 관해 진정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알려주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한다.
- (c) 법률의 범위안에서 모든 고발과 진정을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d)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곤란을 준 법률, 행정 입법이나 관행의 개정 또는 개혁을 권한있는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Competence and responsibilities

1. A national institution shall be vested with competenc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2. A national institution shall be given as broad a mandate as possible, which shall be clearly set forth in a constitutional or legislative text, specifying its composition and its sphere of competence.
3. A national institution shall, inter alia, have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 (a) To submit to the Government, Parliament and any other competent body, on an advisory basis either at the request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or through the exercise of its power to hear a matter without higher referral, opinions, recommendations, proposals and reports on any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national institution may decide to publicize them; these opinions, recommendations, proposals and reports, as well as any prerogative of the national institution, shall relate to the following areas:
 - (i) Any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as well as provisions relating to judicial organizations, intended to preserve and exte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at connection, the national institution shall examine the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in force, as well as bills and proposals, and shall make such recommendations as it deems appropriate in order to ensure that these provisions conform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rights; it shall, if necessary, recommend the adoption of new legislation, the amendment of legislation in force and the adoption or amendment of administrative measures;
 - (ii) Any situation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which it decides to take up;
 - (iii) The preparation of reports on the national situation with regard to human rights in general, and on more specific matters;

- (iv)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to situations in any part of the country where human rights are violated and making proposals to it for initiatives to put an end to such situations and, where necessary, expressing an opinion on the positions and reactions of the Government;
- (b) To promote and ensure the harmoniz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regulations and practices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 (c) To encourage ratif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instruments or accession to those instruments, and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 (d) To contribute to the reports which States are required to submit to United Nations bodies and committees, and to regional institutions, pursuant to their treaty obligations and, where necessary, to express an opinion on the subject, with due respect for their independence;
- (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and any other organization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regional institutions and the national institutions of other countries that are competent in the areas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f) To assist in the formulation of programmes for the teaching of, and research into, human rights and to take part in their execution in schools, universities and professional circles;
- (g) To publicize human rights and efforts to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racial discrimination, by increasing public awareness, especially through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by making use of all press organs.

Composition and guarantees of independence and pluralism

1.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institution and the appointment of its members, whether by means of an election or otherwise,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which affords all necessary guarantees to ensure the pluralist

representation of the social forces (of civilian society) involved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by powers which will enable effective cooperation to be established with, or through the presence of, representatives of:

-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and effort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trade unions, concerned social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example, associations of lawyers, doctors, journalists and eminent scientists;
 - (b) Trends in philosophical or religious thought;
 - (c) Universities and qualified experts;
 - (d) Parliament;
 - (e) Government departments (if these are included,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s only in an advisory capacity).
2. The national institution shall have an infrastructure which is suited to the smooth conduct of its activities, in particular adequate funding. The purpose of this funding should be to enable it to have its own staff and premises, in order to b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nd not be subject to financial control which might affect its independence.
3. In order to ensure a stable mandate for the members of the national institution, without which there can be no real independence, their appointment shall be effected by an official act which shall establish the specific duration of the mandate. This mandate may be renewable, provided that the pluralism of the institution's membership is ensured.

Methods of 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ts operation, the national institution shall:

- (a) Freely consider any question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whether they are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r taken up by it without referral to a higher authority, on the proposal of its members or of any petitioner;

- (b) Hear any person and obtain any information and any documents necessary for assessing situations falling within its competence;
- (c) Address public opinion directly or through any press organ, particularly in order to publicize its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 (d) Meet on a regular basis and whenever necessary in the presence of all its members after they have been duly convened;
- (e) Establish working groups from among its members as necessary, and set up local or regional sections to assist it in discharging its functions;
- (f) Maintain consultation with the other bodies, whether jurisdictional or otherwise,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ombudsmen, mediators and similar institutions);
- (g) In view of the fundamental role played by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expanding the work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develop relations with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evoted to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o combating racism, to protecting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children, migrant workers, refugees, physically and mentally disabled persons) or to specialized areas.

Additional principles concerning the status of commissions with quasi-jurisdictional competence

A national institution may be authorized to hear and consider complaints and petitions concerning individual situations. Cases may be brought before it by individuals, their representatives, third par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sociations of trade unions or any othe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such circumstances,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s stated above concerning the other powers of the commissions, the functions entrusted to them may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a) Seeking an amicable settlement through conciliation or,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the law, through binding decisions or, where necessary, on the basis of confidentiality;
- (b) Informing the party who filed the petition of his rights, in particular the remedies available to him, and promoting his access to them;
- (c) Hearing any complaints or petitions or transmitting them to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within the limits prescribed by the law;
- (d)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especially by proposing amendments or reforms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especially if they have created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persons filing the petitions in order to assert their rights.

부록 3 :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

영연방국가들의 국회, 국회의원,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

2004년 3월 23-26일
나이지리아, 아부자

서론

- 영연방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와 국회 대표들은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모여 상호 간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가인권기구와 국회가 모두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귀중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다.
- 국회가 국가인권기구와 특별한 실무관계를 발전시켜야 함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국가인권기구가 국회와 국회의원의 업무 및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 또한 인정되었다.
- 양측 대표자들은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한 널리 공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 다음의 가이드라인(아부자 가이드라인)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회, 국회의원, 국가인권기구 간의 효과적인 관계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에 양측 대표자들 모두 동의하였다.

아부자 가이드라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국회는 파리원칙과 영연방 모범사례 원칙(Commonwealth Best Practice Principles)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 틀을 제정해야 한다.
2. 국회의원들은 국제인권, 국제인권조약,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들의 인권 의식과 국가인권기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4. 국회의원과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실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5. 각 국가는 인권위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국회의원의 적절한 역할을 개발해야 한다.
6.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안은 심사와 승인을 위해 국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한다.
7. 국회는 국가인권기구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과 시설이 국가인권기구에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또한 이러한 자원들이 국가인권기구에 의해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8. 국가인권기구의 연례보고서는 국회로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9. 국가인권기구의 연례보고서와 다른 보고서들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토의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 또한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10. 범정당 차원의 국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할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이 기능은 현존하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11. 인권위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연례보고서와 다른 보고서를 토의하기 위해 해당 국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12. 국회의원들은 인권위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13.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업무를 논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14.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이 국가인권기구의 활동과 업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15.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부 정책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16.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업무권한이 국내 인권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에 관해 국가인권기구가 국회에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7.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기구와 보다 효과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의 의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8.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기구의 권고가 이행되고 이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업무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 제약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인권문제와 국가인권기구의 특별

한 책임분야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설명회의 시기에 대해 국가인권기구와 논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인권문제와 조약 및 제도, 메커니즘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4.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의 업무와 국내인권상황에 관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녀야 한다.
5. 국가인권기구는 국회가 긴급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국내 인권침해에 관해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법적인 의무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6.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원칙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에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7.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법률안과 헌법개정안, 그리고 기존 법률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언해야 한다.
8.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국가인권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인권 조사 및 연구에 대해 알려야 한다.
9.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인권 세미나와 회의를 가져야 한다.
10.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가 지역적 또는 국제적 인권조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11.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가 지역적 또는 국제적 인권조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권고해야 한다.
12.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에 국회 내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그러한 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13. 적절한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인권기구가 주최하는 공적 행사에 국회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14. 적절한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이 국가인권기구의 발간물에 기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5. 국가인권기구는 국회의원과 상시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

THE ABUJA GUIDELIN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S, PARLIAMENTARIANS AND COMMONWEAL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23~26 March 2004

Abuja, Nigeria

Introduction

- Representatives of Commonweal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Commonwealth parliaments meeting in Abuja, Nigeria have discussed ways to develop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ir respective institutions.
- It was recognised that both NHRIs and parliaments can make an invaluable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It was agreed that parliaments should develop a special working relationship with NHRIs.
- It was recognised that parliaments and parliamentarians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support of the work of NHRIs.
- It was further recognised that NHRIs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support of the work of parliaments and parliamentarians.
- Representatives also noted the need to publicize the following Guidelines as widely as possible.
- It was agreed that the following Guidelines (the Abuja Guidelines) can form a suitable basis for developing an effectiv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s, parliamentarians and NHRI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ABUJA GUIDELINES

What Parliaments and Parliamentarians can do to support the work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1. Parliaments should produce an appropriate legislative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and the Commonwealth Best Practice Principles.
2. Parliamentarians should have a sound knowled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the work of NHRIs.
3. NHRIs should organise periodic meetings to create awareness amongst parliamentarians of both human rights and the work of NHRIs.
4. Parliaments and NHRIs should evolve an effective working relationship to better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5. Each jurisdiction should develop an appropriate role for parliamentarians i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human rights commissioners.
6. The proposed budget of a NHRI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parliament for vetting and approval.
7. Parliament should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nd facilities are provided to a NHRI to enable it to perform its functions effectively. Parliament should also ensure that resources are in fact made available to the NHRI.
8. The annual report of a NHRI should be sent to parliament promptly.
9. The annual report and other reports of NHRIs should be debated in parliament promptly.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eport should also be tabled in parliament promptly.
10. An all-party parliamentary committee should have specific responsibility for overseeing and supporting the work of a NHRI. In smaller states, this function might be undertaken by an existing 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11. Human rights commissioners should be invited to appear regularly before the appropriate parliamentary committees to discuss the annual report and its other reports.
12. Parliamentarians should invite human rights commissioners to meet with them regularly to discuss matters of mutual interest.

13. Parliamentarians should ensure that sufficient time is given to a consideration of the work of NHRIs.
14. Parliamentarians should ensure that their constituents are made aware of the work of NHRIs.
15. Parliamentarians should scrutinise carefully any government proposals that might adversely affect the work of a NHRI and seek the views of the commissioners thereon.
16. Parliamentarians should ensure that part of the mandate of a NHRI is to advise parliament on the conformity or otherwise of any legislation that may affect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17. Parliamentarians should consider revising their Standing Orders in order to enable them to develop a more effective relationship with a NHRI.
18. Parliamentarians should ensure that recommendations for action from NHRIs are followed-up and implemented.

What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n do to support the work of parliament and parliamentarians

1. Human Rights Commissioners should obtain a thorough knowledge of the role, functions and constraints of parliament and parliamentarians.
2. Human Rights Commissioners should brief parliamentarians on human rights issues regularly and on their own particular area(s) of responsibility. Parliaments should meet with the NHRI to discuss and agree on the timing of these briefings
3. Human Rights Commissioners should provide parliamentarians with regular expert, independent advice on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instruments and mechanisms.
4. A NHRI should be under a statutory obligation to submit annual reports both on its work and on the state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5. There should be a statutory obligation on a NHRI to submit a special report on any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that require urgent attention from parliament. Such reports must be tabled and debated in parliament and government should respond within a stipulated period.
6. A NHRI should provide on-going training for parliamentarians on human rights principles.

7. A NHRI should advise parliamentarians on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all proposed legislation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as well as existing laws.
8. Human Rights Commissioners should inform parliamentarians on the research into human rights issues being undertaken by NHRIs.
9. NHRIs should hold regular human rights seminars and conferences with parliamentarians.
10. Human Rights Commissioners should keep parliamentarians informed of the compliance or non-compliance of the State with i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eaty obligations.
11. A NHRI should make recommendations to parliament regarding efforts required to achieve State compliance wi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12. A NHRI should advise parliaments on the creation of human rights committees in parliament and co-operate with such committees.
13. Where appropriate, NHRIs can involve parliamentarians in public events organized by them.
14. Where appropriate, NHRIs can encourage parliamentarians to contribute articles in their publications.
15. NHRIs should establish mechanisms to liaise with parliamentarians.

부록 4 : 세계민주주의선언

세계민주주의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Democracy)

제161차 국제의회연맹 이사회(Inter-Parliamentary Council)에서 무투표 채택)
(1997년 9월 카이로)

국제의회연맹 이사회는,

평화와 발전에 대한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대의기관(의회, Representative institutions)의 강화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또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대의기관의 다원주의적 제도 설립에 대한 국제의회연맹의 소명과 임무를 재확인하며, 이 분야에서 국제의회연맹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모든 국가는 유엔 헌장에 철저히 입각하여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민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며,

또한, 1966년 12월 16일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R), 1965년 12월 21일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1979년 12월 18일 채택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DAW)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을 상기하며,

나아가 1994년 3월 채택되어 모든 국가에서 정부의 권력은 오로지 참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기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Criteria for Free and Fair Elections)*을 상기하며,

1996년 12월 20일 유엔 사무총장이 제51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민주화를 위한 의제(Agenda for Democratization)’*에 주목하며,

1) 선언 채택 이후, 중국 대표단은 이 조항에 대해 유보의사를 표명

다음 **세계민주주의선언**을 채택하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이 선언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제1편 – 민주주의의 원칙(Principle of Democracy)

1. 민주주의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국제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 가치에 입각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목표이자 이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투명성, 책임성 하에서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당연한 존중 속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2. 민주주의는 추구되어야 할 이상인 동시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규범 및 기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험의 다양성과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정부의 양식(mode)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요소들에 따라 진보가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완성되어지고, 항상 완성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조건이다.
3. 이상(理想)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존 및 증진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평온(tranquillity)을 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통치의 한 형태인 민주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또한 자기보정(self-correction)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제도이다.
4. 민주주의의 달성은 사회적 관심사를 실행함에 있어 남녀가 평등하게 자신들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일을 하는 남녀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다.
5. 민주주의는 권력을 승인, 행사 그리고 교체하는 과정에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을 허용하고, 그 과정이 법조문과 정신에 있어 법치에 부합하게 행해지는 국민에 의한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비차별적인 참여의 결과물임을 보장한다.
6. 민주주의는 상기한 서문에서 밝힌 국제적 규약에서 설명된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들은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의 정당한 행사는 개인 및 집단 책임과 부합하여야만 한다.

7. 민주주의는 법의 우위와 인권의 실행에 기초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으며,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8. 평화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은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따라서 평화, 발전 그리고 법치와 인권 준수에 대한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다.

제2부 - 민주 정부의 요소와 실행

9. 민주주의는 일단의 기준과 규칙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완전히 상응하는 전체로서의 사회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잘 짜여진 구조와 제대로 기능하는 제도의 존재에 기반을 둔다.
10. 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개인과 집단 사이의 대립되는 요구로 야기되는 긴장을 완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제도이다.
11.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무 수행에 참여하는 권리에 기반을 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모든 단계에서 대의기관(representative institutions)의 존재, 특히 사회의 모든 부문이 대표되고, 입법과 정부 활동 감시를 통해 국민의 뜻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권력이자 수단인 의회를 필요로 한다.
12. 민주주의의 실행에 있어 핵심 요소는 국민의 뜻 표출이 가능한 정기적인 주기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는 모든 투표자들이 정치적 경쟁을 유도하는 평등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보통, 평등, 비밀투표에 기반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특히 그 중에서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정당을 조직하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필수적인 것이다. 정당의 조직, 활동, 재정, 자금조달 및 윤리(ethics)는 본래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13. 시민들이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유롭게 선택되고 공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효과적이며 정직한 그리고 투명한 정부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4.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공공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은 선출직 또는 비선출직이든 상관없이 공적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과 예외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러한 책임성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권, 청원할 권리 및 공정한 행정 및 사법제도를 통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 등을 수반한다.
15. 전반적인 공적생활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과 절차가 수립되어야만 한다.
16. 모든 수준에서의 민주적 과정과 공적 생활에 대한 개인 참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규율되어야 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위협이라는 위협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피하여야 한다.
17. 사법제도와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감시 메커니즘은 민주주의가 기반을 두고 있는 법치를 보장한다. 이러한 제도와 메커니즘이 온전히 법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공 권력을 가진 대의 조직 및 사회 각 구성원들이 행정적·사법적 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정적, 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18. 활발한 시민사회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정부를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정한 참정권의 행사를 저지, 방해 또는 금지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이러한 참정권의 행사를 가져오는 조건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특히 평등, 투명성 그리고 교육 등에 대한 항구적 강화를 보장하고, 무지, 불관용, 혐오 및 참된 선택과 대안의 결여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및 인종적 특성 또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의 결여 등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따라서 지속적인 민주주의는 교육과 문화 및 정보의 다른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양되고 강제되는 민주적 풍토와 문화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민주적인 사회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보다 특정한다면 시민교육과 책임성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0. 민주적 절차는 좋은 경제적 환경에 의해 촉진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그 전반

적인 발전 노력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민주적 절차에 있어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여야 한다.

21. 민주주의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이 권리는 아무런 간섭 없이 의사를 형성할 자유와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아들이며, 전달할 자유를 내포한다.
22.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는 다양성과 다원성과 관용적 풍토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복합사회뿐 아니라 단일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수용하여야만 한다.
23. 또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는 기초 및 광역정부와 행정에 관한 이양을 촉진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대중의 참여 기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제3편 - 민주주의의 국제적 차원

24. 또한, 민주주의는 국제관계에 있어 국제기구와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원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 민주주의 원칙은 단지 국가의 평등 또는 공정한 대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로 확장된다.
25. 민주주의 원칙은 지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리와 특히, 인간 환경 속 인류의 공동유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26. 국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는 자신의 행동이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리력의 사용, 위협 그리고 국가의 주권, 정치적 또는 영토적 보전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하며,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민주주의는 국제관계에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삼가야 하며, 민주정부와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와의 연대를 표현하고, 비민주적 체제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연대하여야 한다. 국제 형사적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국제범죄 및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 불처벌(impunity)을 거부하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을 지지하여야 한다.

UNIVERSAL DECLARATION ON DEMOCRACY

*Declaration adopted without a vote** by the Inter-Parliamentary Council at its 161st session
(Cairo, 16 September 1997)

The Inter-Parliamentary Council,

Reaffirming the Inter-Parliamentary Union's commitment to peace and development and *convinc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and representative institutions will greatly contribute to attaining this goal,

Reaffirming also the calling and commitment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to promoting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pluralistic system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the world, and *wishing* to strengthen its sustained and multiform action in this field,

Recalling that each State has the sovereign right, freely to choose and develop,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its people, its own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without interference by other States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Recalling als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on 10 December 1948,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opted on 16 December 1966,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dopted on 21 December 1965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dopted on 18 December 1979,

Recalling further the *Declaration on Criteria for Free and Fair Elections* which it adopted in March 1994 and in which it confirmed that in any State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can derive only from the will of the people as expressed in genuine, free and fair elections,

Referring to the *Agenda for Democratization* presented on 20 December 1996 by the UN Secretary-General to the 5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s the following **Universal Declaration on Democracy** and *urges* Governments and Parliaments throughout the world to be guided by its content:

FIRST PART – THE PRINCIPLES OF DEMOCRACY

1. Democracy is a universally recognised ideal as well as a goal, which is based on common values shared by peoples throughout the world community irrespective of cultural,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s. It is thus a basic right of citizenship to be exercised under conditions of freedom, equality,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with due respect for the plurality of views, and in the interest of the polity.
2. Democracy is both an ideal to be pursued and a mode of government to be applied according to modalities which reflect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and cultural particularities without derogating from internationally recognised principles, norms and standards. It is thus a constantly perfected and always perfectible state or condition whose progress will depend upon a variety of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3. As an ideal, democracy aims essentially to preserve and promote the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individual, to achieve social justice, foste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strengthen the cohesion of society and enhance national tranquillity, as well as to create a climate that is favourable for international peace. As a form of government, democracy is the best way of achieving these objectives; it is also the only political system that has the capacity for self-correction.
4. The achievement of democracy presupposes a genuine partner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society in which they work in equality and complementarity, drawing mutual enrichment from their differences.
5. A state of democracy ensures that the processes by which power is acceded to, wielded and alternates allow for free political competition and are the product of open, free and non-discriminatory participation by the peopl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in both letter and spirit.

6. Democracy is inseparable from the rights set forth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recalled in the preamble. These rights must therefore be applied effectively and their proper exercise must be matched with 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ies.
7. Democracy is founded on the primacy of the law and the exercise of human rights. In a democratic State, no one is above the law and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8. Peace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re both conditions for and fruits of democracy. There is thus interdependence between peace, development,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SECOND PART – THE ELEMENTS AND EXERCISE OF DEMOCRATIC GOVERNMENT

9. Democracy is based on the existence of well-structured and well-functioning institutions, as well as on a body of standards and rules and on the will of society as a whole, fully conversant with i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10. It is for democratic institutions to mediate tensions and maintain equilibrium between the competing claims of diversity and uniformity,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in order to enhance social cohesion and solidarity.
11. Democracy is founded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the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it therefore requires the existence of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and, in particular, a Parliament in which all components of society are represented and which has the requisite powers and means to express the will of the people by legislating and overseeing government action.
12. The key element in the exercise of democracy is the holding of free and fair elections at regular intervals enabling the people's will to be expressed. These elections must be held on the basis of universal, equal and secret suffrage so that all voters can choose their representatives in conditions of equality, openness and transparency that stimulate political competition. To that end,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e essential, and more particularly among them, the rights to vote and to

be elected,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organize political parties and carry out political activities. Party organization, activities, finances, funding and ethics must be properly regulated in an impartial manner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democratic processes.

13. It is an essential function of the State to ensure the enjoyment of civi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to its citizens. Democracy thus goes hand in hand with an effective, honest and transparent government, freely chosen and accountable for its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14. Public accountability, which is essential to democracy, applies to all those who hold public authority, whether elected or non-elected, and to all bodies of public authority without exception. Accountability entails a public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the right to petition government and to seek redress through imparti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chanisms.
15. Public life as a whole must be stamped by a sense of ethics and by transparency, and appropriate norms and procedures must be established to uphold them.
16. Individual participation in democratic processes and public life at all levels must be regulated fairly and impartially and must avoid any discrimination, as well as the risk of intimidation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17. Judicial institutions and independent, impartial and effective oversight mechanisms are the guarantors for the rule of law on which democracy is founded. In order for these institutions and mechanisms fully to ensure respect for the rules, improve the fairness of the processes and redress injustices, there must be access by all to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medies on the basis of equality as well as respect for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ecisions both by the organs of the State and representatives of public authority and by each member of society.
18. While the existence of an active civil society i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the capacity and willingness of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democratic processes and make governance choices cannot be taken for grant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velop conditions conducive to the genuine exercise of

participatory rights, while also eliminating obstacles that prevent, hinder or inhibit this exercise. It is therefore indispensable to ensure the permanent enhancement of, *inter alia*, equality, transparency and education and to remove obstacles such as ignorance, intolerance, apathy, the lack of genuine choices and alternatives and the absence of measures designed to redress imbalances or discrimination of a social, cultural, religious and racial nature, or for reasons of gender.

19. A sustained state of democracy thus requires a democratic climate and culture constantly nurtured and reinforced by education and other vehicles of culture and information. Hence, a democratic society must be committed to education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term, and more particularly civic education and the shaping of a responsible citizenry.
20. Democratic processes are fostered by a favourable economic environment; therefore, in its overall effort for development, society must be committed to satisfying the basic economic needs of the most disadvantaged, thus ensuring their full integration in the democratic process.
21. The state of democracy presupposes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mpli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22. The institutions and processes of democracy must accommodate the participation of all people in homogeneous as well as heterogeneous societies in order to safeguard diversity, pluralism and the right to be different in a climate of tolerance.
23.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must also foster decentralized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which is a right and a necessity, and which makes it possible to broaden the base of public participation.

THIRD PART –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DEMOCRACY

24. Democracy must also be recognised as an international principl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States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democracy does not only mean equal or fair representation of States; it also extends to the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25. The principles of democracy must be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of issues of global interest and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in particular the human environment.
26. To preserve international democracy, States must ensure that their conduct conforms to international law, refrain from the use or threat of force and from any conduct that endangers or violates the sovereignty and political or territorial integrity of other States, and take steps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by peaceful means.
27. A democracy should support democratic principl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at respect, democracies must refrain from undemocratic conduct, express solidarity with democratic governments and non-State actors lik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work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extend solidarity to those who ar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hands of undemocratic régimes.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democracies must reject impunity for international crimes and serious viola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부록 5 : 국제인권장전

I.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 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급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유엔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

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 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 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 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 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

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 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Article 8: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s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Article 19: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29: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II.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유엔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유엔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

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 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 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부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 살해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직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직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직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직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직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 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

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 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 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 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 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이름을 가진다.
-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 되는 것
-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28조

-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 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 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 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유엔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 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 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이사회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결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결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결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엔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유엔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

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유엔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유엔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유엔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유엔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유엔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유엔본부나 제네바 소재 유엔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 (f) 이사회는 회부 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

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유엔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유엔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유엔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 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 책임의 침해를 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유엔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엔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유엔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유엔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유엔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48조

1. 이 규약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유엔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유엔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 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유엔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이 정본이며 유엔 문서 보존소에 기탁된다.
2. 유엔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civil and political freedom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PART I

Article 1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2.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ART II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2. Where not already provided for by existing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dopt such laws or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3.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 (a) To ensure that any person whose rights or freedoms as herein recognized are violated 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 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 (b) To ensure that any person claiming such a remedy shall have his right thereto determined by competent judicial,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authorities, or by any other competent
 - (c) authority provided for by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to develop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To ensure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force such remedies when granted.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civil and politic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

1. In time of public emergency which threatens the life of the nation and the existence of which is officially proclaimed,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o not involve discrimination solely on the ground of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or social origin.
2. No derogation from articles 6, 7, 8 (paragraphs I and 2), 11, 15, 16 and 18 may be made under this provision.
3.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vailing itself of the right of derogation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visions from which it has derogated and of the reasons by which it was actuated. A further communication shall be made, through the same intermediary, on the date on which it terminates such derogation.

Article 5

1.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2.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pursuant to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PART III

Article 6

1.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This right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life.
2. In countries which have not abolished the death penalty, sentence of death may be imposed on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nd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is penalty can only be carried out pursuant to a final judgment rendered by a competent court.
3. When deprivation of life constitutes the crime of genocide, it is understood that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derogate in any way from any obligation assum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4. Anyone sentenced to death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Amnesty, pardon or commutation of the sentence of death may be granted in all cases.
5. Sentence of death shall not be imposed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and shall not be carried out on pregnant women.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invoked to delay or to preven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7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particular, no one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Article 8

1.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slavery and the slave-trade in all their forms shall be prohibited.
2. No one shall be held in servitude.
3. (a) No on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r;
(b) Paragraph 3 (a) shall not be held to preclude, in countries where imprisonment with hard labor may be imposed as a punishment for a crime, the performance of hard labor in pursuance of a sentence to such punishment by a competent court;
(c)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r" shall not include:
 - i. Any work or service, not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normally required of a person who is under detention in consequence of a lawful order of a court, or of a person during conditional release from such detention;
 - ii. 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and, in countries where conscientious objection is recognized, any national service required by law of conscientious objectors;
 - iii. Any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or calamity threatening the life or well-being of the community;
 - iv.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normal civil obligation.

Article 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2. Anyone who is arrested shall be informed, at the time of arrest, of the reasons for his arrest and shall be promptly informed of any charges against him.
3. 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ment.
4. 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5. Anyone who has been the victim of unlawful arrest or detention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Article 10

1.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2. (a) Accused persons shall,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gregated from convicted persons and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tatus as unconvicted persons;
(b) Accused juvenile person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rought as speedily as possible for adjudication.
3. The penitentiary system shall comprise treatment of prisoners the essential aim of which shall be their reform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segregated from adults and be accorde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age and legal status.

Article 11

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

Article 12

1. Everyone lawfully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hall, within that territory, have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and freedom to choose his residence.
2. Everyone shall b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3. The above-mentioned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those which are provided by law, are necessar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4.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

Article 13

An alien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be expelled therefrom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law and shall,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be allowed to submit the reasons against his expulsion and to have his case reviewed by,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e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rticle 14

1. All persons shall be equal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or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in a suit at law,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The press and the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a trial for reasons of morals,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or when the interest of the private lives of the parties so requires,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but any judgment rendered in a criminal case or in a suit at law shall be made public except where the interest of juvenile persons otherwise requires or the proceedings concern matrimonial disputes or the guardianship of children.

2.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have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3. In the determination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minimum guarantees, in full equality:
 - (a) To be informed promptly and in detail in a language which he understands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charge against him;
 - (b) To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his defense and to communicate with counsel of his own choosing;
 - (c) To be tried without undue delay;
 - (d) To be tried in his presence, and to defend him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 own choosing; to be informed, if he does not have legal assistance, of this right; and to have legal assistance assigned to him, in any case where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and without payment by him in any such case if he does not have sufficient means to pay for it;
 - (e) To examine, or have examined, the witnesses against him and to obtain the attenda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behalf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witnesses against him;
 - (f)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 (g) Not to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or to confess guilt.
4. In the case of juvenile persons, the procedure shall be such as will take account of their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ir rehabilitation.

5. Everyone convicted of a crime shall have the right to his conviction and sentence being reviewed by a higher tribunal according to law.
6. When a person has by a final decision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ce and when subsequently his conviction has been reversed or he has been pardoned on the ground that a new or newly discovered fact shows conclusively that there has been a miscarriage of justice, the person who has suffered punishment as a result of such conviction shall be compensated according to law,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non-disclosure of the unknown fact in time is wholly or partly attributable to him.
7. No one shall be liable to be tried or punished agai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already been finally convicted or acquit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enal procedure of each country.

Article 15

1.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crimi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when the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If, subsequent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provision is made by law for the imposition of the lighter penalty, the offender shall benefit thereby.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judice the trial and punishment of any person for any act or omission which,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was criminal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the community of nations.

Article 16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17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honor and reputation.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8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and freedom,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observance, practice and teaching.
2. No one shall be subject to coercion which would impair his freedom to have or to adopt a religion or belief of his choice.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Article 19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20

1. Any propaganda for war shall be prohibited by law.
2. 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shall be prohibited by law.

Article 21

The right of peaceful assembly shall be recognized.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22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of the police in their exercise of this right.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to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to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Article 23

1.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2. The right of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shall be recognized.
3. No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without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4.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equality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spouse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In the case of dissolution, provision shall be made for the necessary protection of any children.

Article 24

1. Every child shall have, without any discrimination as to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or birth, the right to such measures of protection as are required by his status as a minor, on the part of his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2. Every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a name.
3.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rticle 25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opportunity, without any of the distinctions mentioned in article 2 and without unreasonable restrictions:

- (a)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 (b)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electors;
- (c) To have access, on general terms of equality,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Article 26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n this respect, the law shall prohibit any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rticle 27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exist, persons belonging to such minoritie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ir group,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ce their own religion, or to use their own language.

PART IV

Article 28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Human Rights Committee (hereafter referred to in the present Covenant as the Committee). It shall consist of eighteen members and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o shall be persons of high moral character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Article 29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8 and nominated for the purpose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2.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nominate not more than two persons. These persons shall be nationals of the nominating State.
3. A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re-nomination.

Article 30

1.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2.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o the Committee, other than an election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written invitation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submit their nominations for membership of the Committee within three month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the persons thus nominated, with an indication of the States
3.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no later than one month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4.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ven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At that meeting,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nominees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rticle 31

1. The Committee may not include more than one national of the same State.
2. In the election of the Committee,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embership and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Article 32

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However, the terms of nin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nin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article 30, paragraph 4.
2. Elections at the expiry of office shall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article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33

1. If,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other members, a member of the Committee has ceased to carry out his functions for any cause other than absence of a temporary character,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declare the seat of that member to be vacant.
2. In the event of the death or the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Committee, the

Chairman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declare the seat vacant from the date of death or the date on which the resignation takes effect.

Article 34

1. When a vacancy is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and i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to be replaced does not expire within six months of the declaration of the vacanc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notify each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within two months submit no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for the purpose of filling the vacancy.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persons thus nominated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he election to fill the vacancy shall then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3. A member of the Committee elected to fill a vacancy decla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of the member who vacated the seat on the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article.

Article 3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General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Article 36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37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2. After its initial meeting,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s shall be provided in its rules of procedure.
3.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Article 38

Every member of the Committee shall, before taking up his duties, make a solemn declaration in open committee that he will perform his functions impartially and conscientiously.

Article 39

1.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but these rules shall provide, *inter alia*, that:
 - (a) Twelve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 (b)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Article 40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 (a)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for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 (b) Thereaft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2.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them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Reports shall indicate th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copies of such parts of the reports as may fall within their field of competence.
 4. The Committee shall study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t shall transmit its reports, and 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may also transmit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se comments along with the copies of the reports it has received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5.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may submit to the Committee observations on any comments that may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of this article.

Article 41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 (a) I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it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Part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the State which sent the communication an explanation, or any other statement in writing clarifying the matter which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and pertinent, reference to domestic procedures and remedies taken, pending, or available in the matter;

- (b)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by notice given to the Committee and to the other State;
- (c)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only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matter,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 (d)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 (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 (f)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to supply any relevant information;
- (g)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when the matter is being considered in the Committee and to make submissions orally and/or in writing;
- (h) The Committee shall,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under subparagraph (b), submit a report:
 - 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 i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not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the written submissions and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In every matter, the repo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t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I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Article 42

1. (a) If a matter referred to the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is not resolv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Committee may,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ppoint an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The good offices of the Commission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present Covenant;
 - (b)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ive persons acceptable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fail to reach agreement within three months on all or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concerning whom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Committee from among its members.
2.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y

shall not be nationals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or of a State not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or of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41.

3. The Commission shall elect its own Chairman and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4. The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normally be held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or at the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However, they may be held at such other convenient places as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5. The secretariat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shall also service the commissions appointed under this article.
6.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collated by the Committee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o supply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7. When the Commission has fully considered the matter,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having been seized of the matter, it shall submit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 report for communication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 (a)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complete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within twelve months, it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status of its consideration of the matter;
 - (b) If an amicable solution to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 (c)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b) is not reached, the Commission's report shall embody its findings on all questions of fact relevant to the issue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its views on

the possibilities of an amicable solution of the matter. This report shall also contain the written submissions and a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 (d) If the Commission's report is submitted under subparagraph (c),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within three months of the receipt of the report, notify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whether or not they accept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41.

9.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share equally all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estimates to be provid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empowered to pay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if necessary, before reimbursement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this article.

Article 4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f the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s which may be appointed under article 42,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4

The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apply without prejudice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by or under the constituent instruments and the conven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shall not prevent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from having recourse to other procedures for settling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general or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m.

Article 4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PART V

Article 46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7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PART VI

Article 48

1.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2.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9

1.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50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51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2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48, paragraph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I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48;
-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49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51.

Article 53

1.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III.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 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에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 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1.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 (a)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b) 개인이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 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6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제7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엔 헌장과 유엔 및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유엔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9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유엔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 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유엔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c)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유엔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유엔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f 16 December 1966 entry into force 23 March 1976,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in order furth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venant) and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visions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able the Human Rights Committee set up in part IV of the Covena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as provided in the present Protocol,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claiming to be victims of violations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 State Party to the Covenant that becomes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at State Party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venant.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to the Covenant which is not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 individuals who claim that any of their rights enumerated in the Covenant have been violated and who have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may submit a written communication to the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rticle 3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inadmissible any communication under the present

Protocol which is anonymous, or which it considers to be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to be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rticle 4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s submitted to it under the present Protocol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alleged to be violating any provision of the Covenant.
2. Within six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Article 5

1.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the light of all written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the individual an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2. The Committee shall not consider any communication from an individual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 (a)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 (b) The individual has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3.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4. The Committee shall forward its view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o the individual.

Article 6

The Committee shall include in its annual report under article 45 of the Covenant

a summary of its activities under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7

Pending the achievement of the objectives of resolution 1514(XV)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4 December 1960 concerning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in no way limit the right of petition granted to these peoples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struments under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zed agencies.

Article 8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which has signed the Covenan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by any State which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venant.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which has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venant.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9

1. Subjec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venant,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10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11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12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Denunci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ny communic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2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denunciation.

Article 13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8, paragraph 5, of the present Protocol,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paragraph I, of the Covenant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8;
-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under article 9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11;
- (c) Denunciations under article 12.

Article 14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of the Covenant.

IV.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채택일 1989. 12. 15 / 발효일 1991. 7. 11 / 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폐지가 바람직스러움을 강력히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전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람직스러우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 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 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 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6조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2.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 제1조 1항에 보장된 권리는 규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어떠한 위반조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유엔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발효한다.

제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

유엔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 (a) 이 의정서 제2조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입장표명
-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한 의정서의 발효일

제11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보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유엔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유엔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128 of 15 December 1989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Believing that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ontributes to enhancement of human dignity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Recalling article 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on 10 December 1948, and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on 16 December 1966,

Noting that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fers to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terms that strongly suggest that abolition is desirable,

Convinced that all measures of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hould be considered as progress i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life,

Desirous to undertake hereby an international commitmen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No one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executed.
2.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within its jurisdiction.

Article 2

1. No reservation is admissible to the present Protocol, except for a reservation made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at provid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in time of war pursuant to a conviction for a most serious crime of a military nature committed during wartime.
2. The State Party making such a reservation shall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relevant provisions of its national legislation applicable during wartime.
3. The State Party having made such a reservation shall notif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any beginning or ending of a state of war applicable to its territory.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shall include in the reports they submit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of the Covenant,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hat they have adopted to give effect to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4

With respec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that have made a declaration under article 41, the compet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when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shall extend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statement to the contrary at the mo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

With respec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first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on 16 December 1966, the competence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shall extend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statement to the

contrary at the mo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6

1.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apply as additional provisions to the Covenant.
2.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ility of a reservation under article 2 of the present Protocol, the right guaranteed i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not be subject to any derogation under article 4 of the Covenant.

Article 7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has signed the Covenan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by any State that has ratified the Covenant or acceded to it.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that has ratified the Covenant or acceded to it.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8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9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10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Reservations, communications and notifications under article 2 of the present Protocol;
- (b) Statements made under articles 4 or 5 of the present Protocol;
- (c)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7 of the present Protocol;
- (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under article 8 thereof.

Article 11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48 of the Covenant.

V.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유엔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유엔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 부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 보장
 -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b)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 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2.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기간 중의 노동 임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야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 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

법을 개선할 것.

-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 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 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제 4 부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b) 유엔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유엔 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 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유엔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제1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유엔 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유엔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유엔의 타 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유엔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유엔 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5 부

제26조

1. 이 규약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유엔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유엔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 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유엔 사무총장은 동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이 정본이며, 유엔 문서 보존소에 기탁된다.
2. 유엔 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PART I

Article 1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2.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ART II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guarantee that the rights enunciated in the present Covenant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3. Developing countries, with due regard to human rights and their national economy, may determine to what extent they would guarantee the economic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to non-nationals.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provided by the State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venant, the State may subject such rights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only in so far as this may be 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se rights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Article 5

1.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or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2.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country in virtue of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shall be admitted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PART III

Article 6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to work, which includes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opportunity to gain his living by work which he freely chooses or accepts, and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his right.
2. The steps to be taken by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echnical and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programmes, policies and techniques to achieve stead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under conditions

safeguarding fundamental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to the individual.

Article 7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just and favorable conditions of work which ensure, in particular:

- (a) Remuneration which provides all workers, as a minimum, with:
 - (i) 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women being guaranteed conditions of work not inferior to those enjoyed by men, with equal pay for equal work;
 - (ii) A decent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 (b)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 (c) Equal opportunity for everyone to be promoted in his employment to an appropriate higher level, subject to no considerations other than those of seniority and competence;
- (d) Rest, leisure and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s well as remuneration for public holidays

Article 8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 (a) The right of everyone to form trade unions and join the trade union of his choice,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is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b)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establish national federations or confederations and the right of the latter to form or join international trade-union organizations;
- (c)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function freely subject to no limita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d) The right to strike, provided that it is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e particular country.

2.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r of the police or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would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Article 9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1.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nd assistance should be accorded to the family, which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particularly for its establishment and while it is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education of dependent children. Marriage must be entered into with the free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2. Special protection should be accorded to mothers during a reasonable period before and after childbirth. During such period working mothers should be accorded paid leave or leave with adequate social security benefits.

3. Special measures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should be taken on behalf of all children and young persons without any discrimination for reasons of parentage or other conditions. Children and young persons should be protected from economic and social exploitation. Their employment in work harmful to their morals or health or dangerous to life or likely to hamper their normal development should be punishable by law. States should also set age limits below which the paid employment of child labor should be prohibited and punishable by law.

Article 11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The States Parties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recognizing to this effect the essential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free consent.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ing the fundamental right of everyone to be free from hunger, shall take,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easures, including specific programmes, which are needed:
 - (a) To improve methods of production, conservation and distribution of food by making full use of techn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by disseminating knowledge of the principles of nutrition and by developing or reforming agrarian systems in such a way as to achieve the most effici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 (b) 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s of both food-importing and food-exporting countries, to ensur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world food supplies in relation to need.

Article 12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2.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 (a) The provision for the reduction of the stillbirth-rate and of infant mortality an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
 - (b) The improvement of all aspects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hygiene;
 - (c) The prevention, treatment and control of epidemic, endemic, occupational and other diseases;
 - (d) The creation of conditions which would assure to all medical service and medical attention in the event of sickness.

Article 13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education. They agree that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he sense of its dignity, and shall strengthe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y further agree that education shall enable all person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and all racial, ethnic or religious groups, and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 (a) Prim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Secondary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 (c)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 (d) Fundamental education shall be encouraged or intensified as far as possible

for those persons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

- (e)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an adequate fellowship system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choose for their children schools,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which conform to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State and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4. No part of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I of this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Article 14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at the time of becoming a Party, has not been able to secure in its metropolitan territory or other territories under its jurisdiction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free of charge, undertakes, within two years, to work out and adopt a detailed plan of action for the progressive implementation, within a reasonable number of years, to be fixed in the plan, of the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for all.

Article 15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 (a)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 (b)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 (c)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2.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respect the freedom indispensabl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e encourag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fields.

PART IV

Article 16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in conformity with this part of the Covenant reports on the measure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2. (a)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b)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lso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pies of the reports, or any relevant parts therefrom,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are also members of these specialized agencies in so far as these reports, or parts therefrom, relate to any matters which fall withi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ai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instruments.

Article 17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furnish their reports in stages,

in accordance with a programme to be establish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2. Reports may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3. Where relevant information has previously been furnished to the United Nations or to any specialized agency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it will not be necessary to reproduce that information, but a precise reference to the information so furnished will suffice.

Article 18

Pursuant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arrangements with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spect of their reporting to it on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These reports may include particulars of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n such implementation adopted by their competent organs.

Article 19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transmi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study and general recommendation or, as appropriate, for information the reports concerning human rights submitt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7, and those concerning human rights submitted by the specializ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Article 20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may submit comment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any general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19 or reference to such general recommendation in an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r any documentation referred to therein.

Article 2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submit from time to time to the General Assembly reports with recommendations of a general nature and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on the measures taken and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general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22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ir subsidiary organs and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with furnishing technical assistance any matters arising out of the reports referred to in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assist such bodies in deciding, each within its field of competence, on the advisability of international measure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2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gree that international ac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ncludes such methods as the conclusion of conventions, the adoption of recommendations, the furnishing of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holding of regional meetings and technic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consultation and study 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ments concerned.

Article 24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Article 25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PART V

Article 26

1.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2.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27

1.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Article 28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29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30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26, paragraph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I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26;
-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27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29.

Article 31

1.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26.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2008년 12월 인쇄
2008년 12월 발행

발행인 : 안 경 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 B/D 11층

전화 / 02) 2125-9742

FAX / 02) 2125-9738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 313-7593(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 978-89-6114-130-7 93330